



Indonesia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Indonesia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본 안내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세법 등을 2015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 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세법 및 조세 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국세청은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일본, 스페인에 대한 세무안내서와 이전가격 과세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무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무안내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세무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서진욱



I. 인도네시아 개황	1
1. 인도네시아 개관	2
2. 인도네시아 역사	5
3.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7
II. 인도네시아 조세 제도에 대한 이해	19
III. 세무조사와 세금추징	31
IV. 조세불복과 해결	41
V. 국제조세	49
VI. 국세기본법	75
1. 인도네시아 국세 기본법의 연혁과 개요	76
2. 신고 의무	80
3. 납부 의무	89
VII. 소득세법	93
1. 개요	94
2.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과세 대상 소득	99
3. 손금 산입과 손금 불산입	106



4. 원천징수	119
5.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131
6. 신고와 납부	136
7. 기타 중요한 주제	142
8. 개인 소득세	149
VIII. 부가가치세법	155
1. 개요	156
2. 과세 대상 거래와 면세 및 공급 시기	162
3. 과세 표준과 세율	174
4. 매입세액 공제	180
5.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	188
6. 신고와 납부 및 환급	197
7.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205
8.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212
IX. 기타세법	215

I

인도네시아 개황

1. 인도네시아 개관	2
2. 인도네시아 역사	5
3.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7





1 인도네시아 개관



가. 국가 일반사항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위 치	동남아시아
면 적	190만km ²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 도서 수 : 17,508개(무인도 7,133개)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 연평균 최고기온 : 25~28℃, 습도 : 73~87℃ * 우기(11~3월), 건기(4~10월)
수 도	자카르타(인구 약 1,200만명, 면적 661km ² /서울605km ²)
인 구	약 2억 4,000만명(세계 4위) □ '10년 기준, 이후 통계발표되지 않음
주요도시	자바(Java)섬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수마트라(Sumatera)섬 : 메단, 팔렘방, 빠당 칼리만탄(Kalimantan)섬 : 폰피아낙 술라웨시(Sulawesi)섬 : 마카사르 발리(Bali)섬 : 덴빠사르
민 족	자와족(3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언 어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 * 자바어, 순다어 등 지방어 및 지방사투리 포함 모두 583종
종 교	이슬람교(86%), 기독교(6%), 가톨릭(3%), 불교(2%), 힌두교(1.8%)
건 국 일	1945. 8. 17.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Presiden Joko Widodo(조코 위도도 대통령), '14.10~'19.10(임기 5년)
화폐단위	Rupiah(루피아)



□ 위치



□ 국기



-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홍백기)라고 불리며 붉은색은 용기(Berani)와 자유를 뜻하며 흰색은 고귀함(Suci)과 정의를 뜻함. 13세기 마자파히트 왕조가 두 가지 색을 왕조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
- 수마트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싱아망아라자(Sisingaman garaja) 왕조, 슬라웨시 지역의 부기스 보네(Bugis Bone)왕조에서도 상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근대에 들어서는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독립 투쟁의 상징적인 깃발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1927년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창당한 국민당의 표상으로 사용됨. 이후 1945년 8월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국기로 사용

□ 국장

- 인도네시아는 가루다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전설 속의 새를 국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새의 몸 속에 그려져 있는 다섯 개의 그림이 바로 Panca Sila(고대어 : five basic principle)라고 불리는 5개의 건국 이념을 나타냄



- 첫 번째, 중앙에 있는 별 : 신앙의 존엄성
- 두 번째, 오른쪽 아래의 체인 : 인간의 존엄성
- 세 번째, 오른쪽 위의 나무(브링인) : 통일 인도네시아
- 네 번째, 왼쪽 위의 물소(반) : 민주주의 대의정치
- 다섯 번째, 왼쪽 아래의 벼이삭 : 사회정의 구현

- 두 발에 쓰인 ‘BHINEKA TUNGGAL IKA’라는 뜻은 '다양성 속의 통합 (unity in diversity)' 이라는 뜻으로 광대한 국토에 다양한 민족의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몸의 금색 깃털에도 의미가 담겨있는데 날개부분에 17개, 꼬리에 8개, 목 부위에 45개의 깃털을 그려 넣어 인도네시아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1945년 8월 17일을 나타내고 있음

나. 경제 지표

G D P	9083억 달러 ('13년)
경제성장률	5.78 % ('13년)
1인당 GDP	3500 달러 ('13년)
실업률	6.25% ('13년)
물가상승률	7.57% ('13년)
화폐 단위	Rupiah (Rp)
환율	1달러 = Rp 12,150 ('14년 11월)
외환보유고	1,111억 달러 ('14년 9월)
산업 구조	광업(석탄, 석유, 가스), 농업(고무, 팜유), 제조업(섬유, 자동차, 철강)
교역 규모	3691억 달러(수출 1825억 달러, 수입 1866억 달러) ('13년)
주요교역품	수출 : 석탄, 원유, 가스, 고무, 금속광물, 섬유, 신발, 종이제품 수입 :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 제품, 유기 화학 제품

2 인도네시아 역사

- 기원 100만년전 인류 최초의 직립원인 자바 원인(Java Man) 발견
- 고대왕국시대
 - 7세기 : 스리위자야(Sriwijaya)왕국(불교왕조)
 - ▷ 말레이반도와 수마ತ್ರ라의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발흥
 - 13세기 : 마자파히트(이슬람왕조, 인도네시아 전역을 통일한 최초 왕조)
 - ▷ 불교, 힌두교, 애니미즘 등을 포용하고, 이슬람교와 문화를 전역에 확산
- 식민지시대
 - 1596년 ~ 1942년 : 네덜란드
 - 1942년 ~ 1945년 : 일본
-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
 - 1945.8 :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선언 및 헌법 채택, 수카르노 대통령 취임
 - 1966.3월 :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수하르토 장군에 실권 이양
 - 1966년~1998년 : 수하르토 체제(Orde Baru 신질서)

- 실용주의 정책, 시장경제도입, 외국인투자 유치 및 규제 완화
 - 군부의 이중기능(정치참여)
 - 자바섬 인맥 중심주의, 민족간 경제불균형 심화, 족벌체제, 부정부패
 - 화교의 정치활동 제한과 문화적 탄압
 - 정당정치 변화(Golkar당 주도)
 - 1998.5월 피플 파워에 의해 하야, 하비비 대통령 취임(과도정부)
 - 1999.10월 : 와히드 대통령, 메가와띠 부통령 취임
 - 2001. 7월 : 부패혐의로 와히드 대통령 탄핵, 메가와띠 부통령이 승계
 - 2004.10월 : 유도유노 대통령, 유습 깔라 부통령 취임

- 2009.10월 : 유도유노 대통령, 부디오노 부통령 취임

- 성장과 일자리 창출
- 관료주의 타파
- 투자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유치

○ 조코위 정권(2014~2019)

- 친서민, 개혁주의 성향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10월 20일 인도네시아의 제 7대 대통령으로 취임
- 이번 선거는 인도네시아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한 후 치러진 세 번째 대통령 선거이며 2004년 이후 10년만의 정권교체
-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러닝 메이트인 유습 칼라 부통령은 모두 사업가 출신으로 권력계층인 군부세력과 연관이 없어 인도네시아의 첫 문민정부
- 인도네시아 국민이 가난한 목수 아들이며 정계 신인인 조코위를 차기 지도자로 선출한 것은 기존 기득계층의 권력 구도에서 벗어나 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염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하면서 통상, 천연자원 등 일부 분야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일방적인 국수주의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 인프라 확충, 산업고도화 등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산업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임.

- 성 명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 직 위 : 인도네시아의 제 7대 대통령
- 임 기 : 2014. 10. 20 ~ 2019. 10월(임기 5년)
- 출생일 : 1961년 6월 21일(53세)
- 출생지 : 인도네시아 수라카르카
- 정 당 : 민주향쟁당
- 학 력 : 가자 마다 대학교
- 종 교 : 이슬람교
- 배우자 : 이리아나 위도도

3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가. 생활 일반

□ 주거

- 지역별 인프라 및 문화생활의 격차가 심한 편이며, 외국인들은 편리한 생활여건 및 인프라가 있는 자카르타 및 인근 위성도시에 거주
 - 전세 개념이 없고, 1년 혹은 2년 단위 임대계약을 하며, 원룸 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는 600달러 정도이고, 쓰리룸 대형 아파트는 2,000달러 정도임

□ 생필품 구입

-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카르타 및 인근 위성도시, 발리, 수라바야 등에는 한국식품점이 있으며, 까르푸, 헤로, 하이퍼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한국 음식을 구입할 수 있음

□ 교통

- 지하철이 없고, 자카르타의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착 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며,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이고, 간선 버스인 프란스 자카르타, 중소형 버스인 꼬빠자, 메트로 미니 등이 있음
 - 택시는 최대 택시 회사인 Blue Bird와 Express, Gamy 등등이 있으며 Blue Bird사에서 운영하는 고급택시인 Silver Bird가 있음

□ 통신

- 집전화는 국영기업인 Telkom 사의 유선전화를 사용하며, 공중전화 (Telepon Umum)는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인터넷은 한국식 PC방인 Warnet에서 주로 이용함

- 휴대전화 보급률이 90%에 달하며, 통신사간의 요금 차이로 인하여 1인당 2-3대씩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대부분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여 이용함. 외국인도 단기 체류 및 출장시에 선불 통화 바우처를 구입하여 편리하게 이용가능

□ 의료

- 의료체계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로 구분되며,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함. 국가 의료체계로 지역단위의 보건소인 PusKesMas와 지역 관할 병인인 RS Umum, 국가 지정 최상급 병원인 RS Cipto가 있으며, 조산소 및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준 의료인으로 Bidan이 있으며, 개인의원에 해당하는 Klinik 및 다양한 영리 종합병원이 있음.

□ 교육

- 외국인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까지 국제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있고, 입학과정, 입학시기, 수업내용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나. 인니 수출입 동향

□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흑자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16억 3,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 2013년에 들어서도 세계경기 회복 저조로 인해 3분기까지는 수출부진과 내수경기 호황으로 인한 수입상승으로 적자 추세를 이어갔으나, 연말에는 흑자로 돌아서면서 안정화 되는 추세
- 2014년에 들어서서는 1월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적자(4.4억) 기록 이후 2월(8.4억), 3월(6.7억)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4월 적자폭이 20억 달러까지 확대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Q-2Q)
수출	114.10	137.02	116.51	157.78	203.5	190.04	183	87.86
수입	74.47	129.2	96.83	135.66	177.44	191.67	189	92.15
수지	39.63	7.82	19.68	22.16	26.06	-1.63	-40.8	-4.29

□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수출 현황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 위	국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Q-3Q)
1	일 본	18,575	25,782	33,715	30,135	27,086	17,341
2	중 국	11,499	15,693	22,941	21,659	22,601	13,240
3	싱가포르	10,263	13,723	18,444	17,135	16,686	12,835
4	한 국	8,145	12,575	16,389	15,049	11,422	8,293
5	미 국	10,850	14,267	16,459	14,874	15,692	12,312
6	인 도	7,433	9,915	13,336	12,496	13,031	9,052
7	말레이시아	6,812	9,362	10,996	11,280	10,667	7,379
8	태 국	3,234	4,567	5,897	6,635	6,062	4,485
9	대 만	3,382	4,838	6,585	6,242	5,862	4,975
10	호 주	3,264	4,244	5,583	4,905	4,370	3,894

<자료 : World Trade Atlas>

□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수입 현황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국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Q-3Q)
1	중 국	14,002	20,424	26,212	29,387	29,849	22,504
2	싱가포르	15,550	20,241	25,965	26,087	25,582	18,961
3	일 본	9,844	16,966	19,437	22,767	19,285	13,044
4	한 국	4,742	7,703	13,000	12,243	11,593	8,610
5	미 국	7,084	9,399	10,813	11,970	9,066	6,243
6	태 국	4,613	7,471	10,405	11,602	10,703	7,489
6	말레이시아	5,688	8,649	10,405	11,437	13,323	8,046
8	호 주	3,436	4,099	5,177	5,297	5,038	4,213
9	인 도	2,209	3,295	4,322	5,199	3,964	3,151
10	타 이 완	2,008	2,957	4,260	4,692	4,480	2,822

<자료 : World Trade Atlas>

□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 백만 달러)

구분(HS CODE)	2010	2011	2012	2013	2014 (1Q-3Q)
총 수출	157,779	203,497	190,031	182,552	59,480
석탄(2701)	18,169.7	25,523.2	24,293	22,773	14,204
석유가스화 기타가스(2711)	13,669.5	22,871.5	20,520	18,129	13,412
팜오일/부산물(1511)	13,469.0	17,261.3	17,602	15,839	12,756
원유(2709)	10,402.9	13,829	12,293	10,205	7,189
천연고무, 발라타(4001)	7,329.1	11,766	7,864	6,911	3,809
동광과 그정광(2603)	6,882.2	4,700	2,594	3,007	914
야자유, 팜유(1513)	2,293.7	3,052	2,458	1,829	1,854
석유코크스, 유아스팔트(2713)	1,765	1,858	2,379	2,674	1,790
사람수송 목적차량(8703)	1,026	1,337	2,264	2,085	1,946
신발류(6403)	1,685	2,198	2,195	2,272	1,606

<자료 : World Trade Atlas>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 백만 달러)

구분(HS CODE)	2010	2011	2012	2013	2014 (1Q-3Q)
총 수입	135,663	177,436	191,691	186,629	43,472
석유와 역청유(2710)	17,654	27,722	28,038	27,851	19,930
크루드오일(2709)	8,531	11,154	10,803	13,586	10,316
전화기, 통신기기(8517)	3,789	4,569	5,113	5,291	3,813
항공기(8802)	3,140	2,880	3,960	590	192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2711)	863	1,412	3,081	3,113	2,352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8708)	1,963	2,276	2,982	3,218	2,179
사람수송 목적차량(8703)	1,406	1,763	2,728	2,231	1,216
화물운송 목적차량(8704)	1,389	2,326	2,640	2,231	576
자동차료 처리기기(8471)	1,744	2,193	2,299	2,444	1,553
철, 비합금강(7207)	1,339	1,457	2,292	2,048	1,345

<자료 : World Trade Atlas>

다.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개요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규모는 2004년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3년에는 248억 달러를 달성
 - 2013년 기준 한국은 인니 수입시장 점유율 6.21% 차지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제 5위 수출국이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2위 교역 파트너임(수출 8위, 수입 11위)
- 한국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경유, 휘발유, 편직물, 열연/냉연강판 및 합성고무 등으로 해당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42% 차지하고 있음 2013년부터 이어지는 저조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으로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0.3%에 불과함

- 한편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중유, 천연고무 등이며 해당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2014년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약 6% 감소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금액	증가율	수입 금액	증가율
2001	3,280	-6.4	4,474	-15.4
2002	3,145	-4.1	4,723	5.6
2003	3,378	7.4	5,212	10.4
2004	3,678	8.9	6,368	22.2
2005	5,046	37.2	8,184	28.5
2006	4,874	-3.4	8,848	8.1
2007	5,771	18.4	9,114	3.0
2008	7,934	37.5	11,320	24.2
2009	6,000	-24.4	9,264	-18.2
2010	8,897	48.3	13,986	51.0
2011	13,564	52.5	17,216	23.1
2012	13,955	2.9%	15,676	-8.9%
2013	11,574	-17.1%	13,188	-15.9%
2014(11월)	10,638	0.3%	11,316	-5.8%

<자료 : 무역협회>

□ 주요 수출입 동향

- 한국은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경유, 휘발유,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 및 냉연 강판을 수출해 왔다. 2013년의 경우, 인도네시아 석탄 광구에서 사용하는 경유 소비량이 전 세계 석탄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줄어들어 한국으로부터의 경유 수입량이 크게 감소함. 또한 최근 연료보조금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한국산 휘발유의 수입이 감소
- 인도네시아 봉제업의 경우 주요거래처인 유럽과 미국의 경기침체로 섬유 완제품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편직물 수출이 줄어듦



-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열연강판 반덤핑 조치로 한국산 열연강판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 들었으며 전 세계 타이어 경기불황으로 한국산 합성고무 수입 역시 크게 줄어듬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10대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 목	2012년		2013년		2014년(11월)	
1	1332	경 유	3827	-19.4	2117	-44.7	2451	22.3
2	1331	휘 발 유	1624	-2.8	1103	-32	1162	11.4
3	2140	합성수지	603	4.7	639	5.9	538	-9.1
4	4360	편 직 물	667	-6.5	628	-5.8	584	0.8
5	6132	열연강판	516	13.9	420	-18.6	358	-9.2
6	7471	항 공 기	28	251.2	343	1114.9	48	-75.3
7	2150	합성고무	358	-11.5	280	-21.7	223	-12.6
8	6133	냉연강판	270	40.4	271	0.6	285	15.9
9	7411	승 용 차	164	35.8	157	-4.6	85	-42.3
10	6134	아연도강판	139	6.8	145	3.9	106	-20.7

<자료 : 무역협회>

- 최근 유럽경기 침체, 인도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국제 발전용 석탄 가격이 하락하여 국제적 표준으로 거래되는 호주산 고칼로리 석탄을 중심으로 바이어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저품질탄으로 분류되는 인니탄은 가격이 대폭 하락함.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로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수입량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10대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 목	2012년		2013년		2014년(11월)	
1	1340	천연가스	5342	0.8	4008	-25	3551	-1.0
2	1322	유 연 탄	3143	-9.4	2571	-18.2	2032	-14.6
3	1310	원 유	1779	-23.2	1218	-31.5	702	-35.4
4	1335	중 유	373	241.6	451	20.7	294	-24.8
5	0332	천연고무	481	-21.3	402	-16.4	295	-20.4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순위	품목코드	품 목	2012년		2013년		2014년(11월)	
			수입액	변동률	수입액	변동률	수입액	변동률
6	2511	펄 프	312	-8.1	363	16.5	272	-17.3
7	1130	동 광	399	-55.8	354	-11.1	205	-37.5
8	4412	직물제의류	191	38.5	247	29.5	276	21.2
9	4411	편직제의류	138	47.2	170	23.1	180	13.8
10	0135	박 류	158	26.1	168	6.6	147	-4.5

<자료 : 무역협회>

라. 수입규제제도

□ 관세장벽

-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
 -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부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을 비롯하여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가기기, 일부 섬유류,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
-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 실효특혜관세(CEPT) 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CEPT를 적용하고 있음 관세인하 대상은 농업, 서비스를 제외하고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가공 농산품, 기타 비농산물 등이며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 국산자재 및 부품 사용비율이 40% 이상일 것이 요구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상품협정이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식으로 서명되었으며(태국 제외), 2007년 4월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6월 1일부로 정식 발효 됨.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 발효 후에도 재무부의 실행안이 미비 함은 이유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7월 1일부로 적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아세안FTA 협정내용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23일부로 ‘2009년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를 재무부장관령 No.236/ MK.011/ 2008)으로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 일반 품목군의 관세를 면제
-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3년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세수 확대를 위해 핸드폰, 원예작물, 밀가루 등에 수입규제 강화 시키기로 함. 인니통상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항목 수입라이선스 발급 강화, 해당 품목군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으로 정의내리며, 상기 97개 항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함.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 가능함

□ 비관세장벽

1) 2012년 이전 비관세 장벽

-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중-아세안FTA, 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주변국과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취약한 제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음
- 우선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다음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 허가(NPIK)를 취득해야 함. 관리 대상 품목은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 관련 제품,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임
-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선적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음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a) 화학제품을 수입할 경우 MSDS를 반드시 첨부

- b) 중고 기계 수입은 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 필요
 - c) 텍스타일을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일반 소재 제품(예 :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은 수입 시 선적 전 검사(SGS 검사) 필요.
 - d)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 전 검사(SGS)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e)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가능(전화,모뎀 등등)
 - f)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 이 밖에도 수입 시 규제하는 사항이 적지 않음. 예를 들면 무역 업체는 TEXTILE 원단 수입이 불가능함. 실수요자로서 원단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 부직포의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나 인도네시아세관 당국에서 순수하게 부직포로 인정을 하는 경우는 완전 부직포 상태의 부직포만 인정됨
 - 아울러 인도네시아 세관은 FTA체결 이후에 세관의 대대적인 변혁을 통해 수입통관 제도를 강화하면서 검사대상 통관제품의 전수검사, 시중가격과 차액이 큰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도/자기류 제품에 대한 종량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상들의 사업 여건을 악화시키는 유/무형의 비관세장벽을 강화
 - 국내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달,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수입업자(IT : Listed/Registered Importers)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되며(2009년 1월부터 시행)



- 허가 받은 선적 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2009년 2월부터 시행). 아울러 위 5개 품목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 공항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음

▷ Tanjung Priok항구(자카르타), Tanjung Perak항구(수라바야), Belawan항구(메단), Soekarno-Hatta항구(마카사르), Dumai 항구.

-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 SNI)을 강화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대상 품목을 확대

- 2012년 기준 75개 품목이 SNI 적용 대상 품목이며, 해당품목은 SNI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통관이 제한 됨. SN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표준관리기관의 검사관을 자사 부담으로 초청해 실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수출업체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함. SNI 인증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기관(LS Pro)에 규격인증신청서 제출,
-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인증비용 납부,
- 인증비용 납부 후 인증기관 현장실사 실시(인증실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실사를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은 의뢰사에서 지불),
- 인도네시아 샘플분석기관에 의뢰 인증기관 내부협의 후 인증서(SPPT-SNI) 발급,
- 인증서와 추가자료 제출 후 산업부에서 최종인증서 발행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제품라벨 강제규정’과 관련된 법령(62/M-DAG/PER/12/2009)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된 라벨(Label)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 제품을 다음의 4개 군으로 규정

- 분류 1 :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 46개 대분류)
- 분류 2 : 건설 자재(총 9개 대분류)
- 분류 3 : 자동차 부품 등(총 24개 대분류)
- 분류 4 : 기타 제품(총 24개 대분류)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Direktorat General Perdag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함.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면허(SIUP)가 취소됨.

1) 2013년 비관세 장벽

a) 전자제품

- 정부는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 규제를 강화함.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 전 수입 품목을 산업부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

- 공항 :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 항구 :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b) 원예작물

- 2013년 6월까지 15개 농산품(감자, 양파, 브로콜리, 바나나, 망고 등) 수입 전면 금지함.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냉동감자, 오렌지, 사과 등이며 동 품목은 수입쿼터 축소대상

c) 수입라이선스 강화

-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함.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 식품의 총 97개임.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

- 8개 항구 지정 :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II

인도네시아 조세 제도에 대한 이해



가. 개관

- 인도네시아에서 조세실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임. 또한 규정을 찾더라도 해당 내용을 찾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용의치 않음. 이는 세법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한국의 그것과 상이하기 때문임.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세법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나. 조세법률주의

- 한국의 헌법 제 38조 와 제 59조 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헌법 역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함. 인도네시아헌법(Undang-Undang Dasar 1945, 'UUD 1945') 제 23A조는 “국가에 필요에 의한 조세(Pajak)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함” 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Undang-Undang Ketentuan Umum Perpajakan, 'UU KUP') 은 제1조 제1항 에서 “조세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직접적인 보상없이 국민의 최대한의 번영을 위하여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국가에 대한 의무임” 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해 조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금의 부과는 법률에 따라 명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인도네시아 세법은 한국의 세법에 비해 광범위 하고 모호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과세당국의 재량권이 상당히 폭 넓게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다. 세법 체계와 규정

- 한국의 세법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수권을 받은 ‘법률’ 이 가장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
 - ‘법률’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제정됨.
 - 따라서 하나의 법률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통령령이 존재함(예를들어, 법인세법의 하위로 법인세법시행령이 있음)
 - 또한 대통령령에서 ‘부령’ 으로 정하도록 수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부처 장관령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예를들어, 법인세법시행령의 하위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있음)
 - 그 외에도 예규·훈령·통칙 등 법률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존재함.
- 인도네시아의 세법체계도 이와 유사하게 법률·정부령·부처 장관령·국세청규정 이상 위 법규의 수권에 따라 제정되고 효력을 갖는다.

라. 최근 개정사항

□ 인도네시아 과다납부세액 환급절차 개선

1) 개요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또는 저소득자 등 특정 납세자가 과다 납부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세무조사 전에 우선 환급(일종의 조기환급 제도)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우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최근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였음.

<적용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4억 루피아 이하이며 과다납부액이 28백만 이하	과다납부액 1억 루피아 이하
소득세	과다납부 금액이 1백만 루피아 또는 매출의 0.5% 이하	과다납부금액 1천만 루피아 이하
법인세	매출 50억 루피아 이하이며 과다 납부액이 1천만 루피아 미만	과다납부액 1억 루피아 이하

2) 세무조사 전 환급 제도

- 인도네시아 조세기본절차법(KUP)은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환급신청의 적부를 판단한 후 환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로 환급의 적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법은 세무조사 전 환급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납세자를 규정

- ① 성실납세자(Golden taxpayer), ② 저위험 부가가치세 납세자,
 - ③ 영세납세자
-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환급의 경우,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한 후 1년 이내에 과세관청이 환급시행 여부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어서 환급에 1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전 환급제도의 구체적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개정된 재무부령 No 198/PMK.03/2013 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개선됨.



3) 납세자 유의사항

- 동 제도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환급 이후 세무조사가 수반됨.
- 세무조사 결과 과소납부액이 있는 경우 부족납부액의 100%가 penalty로 부과됨.
-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동 제도에 따라 자동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사 수감과 과소납부액 관련 penalty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인도네시아의 매입 부가가치세 규정 변경 사항

1) 플란테이션 사업자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 확대

- 2014. 2. 4 인니 재무부 규정 No. 21/PMK.011/2014이 발표됨
- 동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면세대상 재화를 모두 공급 하는 사업자가 통합된 사업형태(integrated business activity)를 유지할 경우 면세 대상 사업관련 매입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 동 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면세사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를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게 되었다는 점으로써 팜, 고무 등 플란테이션 산업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예시>

- 팜열매 등 면세재화를 생산하여 팜오일 등 과세재화 생산에 전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거 팜열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공제가 가능하게 됨
- 열매류(면세재화)를 생산하는 플란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설비, 장치의 매입시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공제가 가능해짐
- 팜열매(면세재화)를 팜오일(과세재화)로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설비, 장치, 도구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가 가능해짐

- 동 규정은 재화 뿐 아니라 서비스, 무형재산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동 규정은 2014.1.1.부터 적용됨

2) 신규 생산 사업자의 매입부가세 공제 확대

- 신규사업자의 경우, 상업생산 전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최초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신청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실패(have failed to produce)로 간주하여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월 2%(최대 24개월)의 과태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2014. 2. 10 인니 재무부 규정 No. 31/PMK.03/2014이 발표됨
- 동 규정으로 3년이 지난 시점 이후 추가 2년간의 자본재 구입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신청이 가능해 짐
- 그러나 총 5년이 경과하여도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환급세액을 반납하고 월 2%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취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 면허가 자동 취소되게 됨



□ 2014년 3분기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 개정 내용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전략적 재화의 예시 개정

- DGT Circular Letter No. SE-24/PJ/2014
- 기존 대통령령(GR-31)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전략적 재화 중 일부 재화에 대해 위헌결정(Supreme Court Decision No. 70 /P/HUM/2013(PUT-70))
- 재무부령 PMK135를 발표하여 2014년 1월에 발표한 Palm Plantation관련 PMK21을 취소함
 - GR-31의 예시 재화 중 농장 제품(plantation product), 관상용 식물(ornamental plant), 약용 식물(herbal plant), 식품용 작물(food crop), 임
- 2014년 7월 22일부터 적용

2) 부가세법 '자가사용'에 대한 정의 변경

- Supreme Court Decision No. 64 /P/HUM/2013(PUT-64)
- 대통령령(GR-1)의 과세대상 '자가사용' 재화에 관한 정의 조항(Article 5(2), 5(3), 5(4) 및 19(2))을 취소함

- 생산적인 목적의 자가 사용인 경우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
- 따라서 기존의 부가가치세법 해설 Article 1A(1)(d)의 규정만을 '자가사용'의 정의로 인정함
- '자가 사용'이란, 부가가치세 대상 재화의 자가 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를 회사, 경영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함

3) 원천징수 면제 신청 기준 변경

- PER-21/PJ/2014(PER-21)
- PPh 21, 22 및 23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신청 기준 변경
-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세무상 손실
- 세무상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기납부한 원천세가 연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 기존 규정(PER-1)에 따르면, 기납부한 원천세와 향후 납부 예상되는 원천세의 합계가 연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면제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동 규정으로 인해 기납부 원천세와 연간 납부 예상 세액만 비교함

4) 부동산 양도 소득세 과세 강화

- DGT Circular letter No. SE-30/PJ/2014
- 등기부상 명의변경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5%의 final tax가 아닌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
- 판매·구매 증서(Akta Jual Beli/AJB) 없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후, 시세차익만 얻고 다시 재매각하는 경우 적용함

5) 모범납세자(Golden taxpayers) 부가세 환급 신청 서류

4) PER-25/PJ/2014(PER-25)

- 조세기본법(UU 28) 17C 항에 따른 ‘모범납세자’에 해당



- 모범납세자가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Export declarations(tangible/intangible goods, services) as reported in Form 1111 A1;
- Output VAT invoices and/or cancellation/return notes as reported in Form 1111 A2;
- Import declarations and/or tax payment slips on the use of offshore services/intangible goods as reported in Form 1111 B1;
- Input VAT invoices and/or cancellation/return notes as reported in Form 1111 B2 or B3

- E-invoice(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업체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14년 9월 부가세(10월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발적 수정 세금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제도 시행

- 인니 정부는 정부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2015년을 “납세자 관리의 원년”(2015, Tahun Pembinaan wajib pajak)로 정하고, 2015년에 한해 자발적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 제도를 시행함.

1)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36조 : 이자, 과태료, 벌과금의 감면 및 면제
- 재무부령 No.91/PMK.03/2015(PMK 91)(2015.5.6. 공포 및 시행)

2) 가산세 면제제도

- 납세자의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적제재(이자, 과태료, 벌과금 등, 이하 가산세 등)에 대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와 신청에 따라 감면하거나 면제
 - 다만, 2015년에 한해 자진 수정 신고한 것에 대하여만 허용

3) 면제 대상 행위

- 2014년 및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와 2014년 12월 및 그 이전 월별 신고서의 지연 제출
- 2014년 및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에 근거한 납부할 세액의 과소 납부에 대한 지연납부
- 2014년 12월 및 그 이전의 월별 신고서와 기간별 과세기간의 신고서에 포함된 납부할 세액의 지연 납부
- 2014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와 2014년 12월 및 그 이전 월별신고서에 대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자진납부 세액
- 2015년도에 법인세 및 월별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의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며, 전 과세기간이 아니라, 특정 일부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됨

4) 면제 범위

- 면제되는 행정적 제재는 국세기본법 제7조, 제8조 2항, 제8조 2a항, 제9조 2a항, 제9조 2b항, 제14조 4항의 이자, 벌과금 등

행 위	면 제 대 상
2014년 및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와 2014년 12월 및 그 이전 월별신고서(VAT 등)의 지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소득세 신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벌금 Rp 1,000,000 -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벌금 Rp 500,000 - 개인소득세 및 월별 신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벌금 Rp 100,000



행 위	면 제 대 상
2014년 및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에 근거한 납부할 세액의 과소 납부에 대한 지연납부	- 매월 2% 이자
2014년 12월 및 그 이전의 월별 신고서와 기간별 과세기간의 신고서에 포함된 납부할 세액의 지연 납부	- 매월 2% 이자
2014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와 2014년 12월 및 그 이전 월별 신고서에 대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	- 매월 2% 이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 X 2% 벌금

5) 신청 절차

- 납세자는 2015년도에 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 및 월별신고서(수정신고서 포함)를 제출
- 관할 세무서는 해당 신고서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한 STP(벌과금 고지서)를 발행
-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확인서(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 라는 확인),(수정)신고서와 접수증, 납부서, 해당 벌과금 고지서를 첨부하여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
 - 1개의 벌과금고지서당 1개의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
- 국세청장은 신청서 형식요건과 납부상태에 대한 서면 검토 후, 미납된 가산세에 대하여 면제(또는 감면) 결정문 발급

- 벌과금 등이 전액 미납된 경우 면제 결정문, 일부 납부된 경우 감면 결정문 발급
- 기 납부된 벌과금 등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않음
- 국세청장이 6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
- 신청 후 결정 통지 기간까지 체납처분은 연기
- 기각 결정되면 가산세 면제 신청은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

III

세무조사와 세금추징



가. 세무조사

- 인도네시아는 납세자가 현행 세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 및 신고 하여야 하는 자진 신고납부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국세청은 이러한 자진신고납부가 납세의무를 다한 것인지 세무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또는 검증의 결과로 세금추징 결정을 할 수 있음.

□ 개요

-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정과세기간(1개월) 또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특정 세목에 대하여 또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세무조사는 회사에서 또는 과세관청에서, 혹은 둘 모두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세무조사 실시 요건

- 환급신청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수반함.
- 국세청은 환급신청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하므로, 세무조사는 대개 환급신청일로부터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시작됨
- 법인세환급 신청시, 과거 모든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2013년 국세청은 조사분야 업무량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Single Tax 조사지침을 발표하였고, 환급신청 세목에 대하여만 조사를 집행함.
 - 다만, 조사시 다른세목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2)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1억 루피아 이상의 결손금을 이월시키는 경우



- 3) 납세자가 회계기간이나 장부기장 방법을 변경하거나 유형자산 재평가를 수행한 경우
- 4) 기한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경고서한에 기재된 기한이후 신고한 경우로, 위험분석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5) 비정기 세무조사(별도 개별분석에 의한 조사의뢰 등)

□ One-month rule

-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9조 3a항에 의거 조사관이 요청한 문서와 정보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만일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 10억 루피아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문서를 포함함.
- 세무조사 착수 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2주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서면 주의서를 발부하고, 3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 서면 주의서를 발부하게 되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관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을 판단하여, 직권으로 관련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 최종 협의

- 세무조사 종료시점에, 조사관은 조사 적출사항을 기록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함.
 - 해당 조사 적출사항에 대하여, 최종 협의(Closing Conference)에 참석하기에 앞서, 반론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문서로 조사결과에 대한 7일 이내에 반론을 제출할 수 있음
- 최종 협의시, 납세자가 조사 적출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할 경우, 반론을 제기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함.

- 조사 적출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최종협의의 회의록에 서명하기전에 지방국세청의 조사 상담팀(Quality Assurance Team)의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조사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답변과 최종 협의에서의 토론 및 조사 상담팀의 다른 결론이 있는 경우, 최초 조사결과를 수정할 수 있음.
 - 최종토론결과는 종료회의록에 기록되며 조사건별로 납세자의 ‘동의 (Agree)’ 또는 ‘미동의(Disagree)’ 입장을 언급해야함. 회의록에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항목 중 조사관이 인정하는 항목 및 특정조사결과에 대한 취소 또는 감액 등이 명기되어야함.
 - 최종회의시 조사관과 납세자는 회의록 말미에 서명을 하며, 서명은 납세자에게 조사결과가 통보된 이후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함.
- 종료회의는 최초시작으로부터 최장 3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종료회의 시 납세자가 동의한 수정 항목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문서로 발행되는 추정세액 중 최소한으로 납부해야함.

□ 세무조사 후 고지

- 법적으로 규정된 세무조사결과물은 위에서 언급된 세액확정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SKP)와 벌금 등 고지서(Surat Tagihan Pajak /STP)로 구성되며, 이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최종협의 회의록에 근거하여 발행되어 짐.
- 벌금 등 고지서(STP)는 세무조사 후 관할 세무서에 의하여 발행된 세액 확정통지서(SKP)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가산세와 벌금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용됨.



나. 세금 추징

- 세액확정 통지서(SKP)는 특정과세기간 또는 연간의 개별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기타 서면 분석 등에 의하여 경정결의 시 발행함.

□ 세액확정 통지서의 종류와 가산세

- 세액 확정통지서의 종류는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의 가감결과에 따라 다르며, 모두 5가지의 세액 확정 통지서가 있음

- 1) 과다납부세액 환급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Lebih Bayar/SKPLB),
- 기 납부 세액이 총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2) 과소납부세액 확정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3) 세액변동없음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Nihil/SKPN),
- 당초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추가 경정결의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SKPKBT)
- 경정 결의 후 추가 경정결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5) 벌금 등 고지서(Surat Tagihan Pajak)
- 세액확정 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벌금,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
- 6) 과소납부세액 확정 통지서(SKPKB) 가 발행된 경우, 다음의 행정벌 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월 2%의 지연이자, 최대24개월까지
- 소득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과금
- 원천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벌과금
- VAT 및 LST의 100%에 해당하는 벌과금.

- 납세자가 어떠한 부정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적용하는 벌과금이 달라짐. 벌과금 금액은 과소납부금액에 관련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세무조사 또는 서면 분석에 근거한 세액의 고지와 별도로, 국세청은 특정기한까지 신고의무를 독촉한 경고서한을 이행하지 않거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세액 확정 통지서를 발행하여 관련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 세금 추징액의 납부

- 과소 납부세액 확정 통지서(SKPKB)에 관련된 추가 납부세액은 통지서의 발행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 자진 납부하여야 함.
 -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미납세액은 체납으로 분류되어, 월 2%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됨.

□ 소멸시효

- 현행 조세행정법에 따라, 국세청은 2008년을 포함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과세기간(월) 또는 과세연도의 말로부터 5년 이내에만 과소납부세액 확정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를 발행할 수 있음.
 - 다만 조세범칙에 해당하는 사실이 다른 기관으로 부터 통보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할 수 있음.
- 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은 신고납세제도(Self-Assement)에 따라 특정시효 내에 세액에 대한 경정이 없으면 확정된 금액이지만, 시효가 종료한 이후라도 법원 판단에 의해 조세범칙 사실이 확정되면, 시효가 종료한 이후라도 추가적인 세액의 추징이 가능함.
 - 이러한 경우 납부추징액에 과소납부세액의 48%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도 부과됨.



□ 압류영장을 통한 징수

-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독촉의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집행함.
- 세액 확정 통지서등을 수령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한 납세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받은 과소납부세금을 납부하여야함.
 - 지연 납부 시 1개월 당 2%씩의 증가산금이 추가됨.
- 현행 국기법상, 납세자가 세액확정 통지서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종협약에서 납세자가 동의한 금액에 대하여만 최소한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종료회의 시 동의하지 아니한 추징세액 부분은, 이후 국세청에서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조세법원소송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함.
- 고지된 과소납부금액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a. 경고서한(Surat Teguran) 발행 : 납부기한 종료후 7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b. 압류영장(Distress Warrant, Surat Paksa) 발행 : 경고서한 발행 이후 21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c. 재산몰수명령서(Confiscation Order, Surat Sita) 발행 : 압류영장발행이후 48시간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d. 몰수재산에 대한 경매공고 : 재산몰수명령서발행이후 14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e. 경매실행 : 경매공고이후 14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다.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의 주요쟁점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는 주로 환급 신청을 통해 이루어짐. 따라서 중점 조사 사항은 대부분 매출세액보다는 매입세액 공제액의 정당성 검토에 모아짐. 이를 위해 과세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사 절차를 주로 수행함.

□ 세금 계산서의 타당성 검토

-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지 여부와, 관련 계약서 또는 거래 증빙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검토함.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세자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계약서에는 A 물품 공급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세금 계산서 품목에는 B 물품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급하는 자의 관할 세무서에 조회 확인

- 세무 조사원은 공급하는 자의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세금 계산서가 적절히 신고되고 세액이 납부되었는지 조회 확인을 실시함. 그러나 실무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따라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주요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신고서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함. 조회 확인을 통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을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관행임.

□ 다른 자료와의 대사 확인

- 한국의 매출-부가세 대사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기본적인 대사 확인은 반드시 수행함. 주요한 대사 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수출 신고서(PEB)와 수출 매출액 대사
- 수입 신고서(PIB)와 수입 매입세액 대사
- 추가 기재 필요(세무조사 지침 활용)



-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 당국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최대한 과세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세무조사 이전에 기본적인 과세 자료는 반드시 갖추고 차이가 소명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그러나, 2014년 조세법원은 KEP-754/PJ/2001(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불부합 대사 지침)에 의거 조사자가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와 다르다고 확정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한 사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러한 확인절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조사 시 매입, 매출 세액에 반드시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것이 거래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여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하였고,
- 결국 매입세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한바 있음 즉,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에서 엄격히 집행하던 연대납세의무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금씩 완화됨

IV

조세불복과 해결



- 납세자와 국세청간의 조세불복은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결과 또는 기타 서면분석에 의하여 발행된 세액확정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원천징수되거나, 거래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음.

가. 이의신청

- 세액확정통지서(SKP)에 동의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또는 거래징수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 또는 원천징수나 거래징수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Objection, Keberatan)을 제출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에는 납세자가 조사 또는 서면분석 결과에 의하여 추정된 세액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 등 불복이유를 기재하고,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심리하게 됨.
 -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계산 내역, 세액 계산내역, 원천징수 내역 등에 대하여 서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세무서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지방 국세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Keputusan Keberatan)을 내려야 함. 만약 12개월 이내에 지방 국세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자동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됨.
 -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리시, 해당 고지와 관련된 조사나 소명요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빙이나 자료는 심리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당초 조사자의 착오 등으로 과소고지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정문에 당초 고지에 추가 고지세액을 더하여 납부토록 하는 결정문을 발행하여 과세할 수 있음.



- 국세청에 의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과소납부금액의 50%가 벌과금으로 부과됨.
- 그러나 납세자가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소납부금액과 벌과금은 법원의 결정일 까지 납부의무가 유예됨.

<예시>

10억 루피아의 추가 납부세액 조사결과통지(SPHP)를 통지받고 최종협의(Closing Conference)에서 2억 루피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만 동의한 납세자가 총 10억 루피아의 추가납부세액 확정통지서(SKPKB)를 발부받은 뒤, 동의한 2억 루피아만을 납부하고 8억 루피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5천만 루피아만 일부 용인되고 7억5천만 루피아의 납부세액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납세자는 7억 5천만 루피어를 납부하고, 과세관청은(Rp750,000,000 - Rp200,000,000) × 50% = Rp275,000,000의 벌금 고지서를 추가 발행한다.

나. 조세행정소송 (Banding)

- 국세청의 이의신청에 대한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법원에 일종의 행정소송인 **Banding**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조세법원은 한국의 국세심판원과 주심 1명 부심 2명의 조세전담 판사가 국세와 관세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하여 양측을 출석시켜 실제 공판을 진행하며, 수차례 실제 공판을 통하여 입증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판결
- 이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법적 행위를 위임받은 별도의 기구를 행정부 내에 두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점에서 한국과 매우 다른 제도
 - 조세법원은 직제 상 재정부 사무처 직속기구로 “조세법원장”은 “국세청장”과 동일한 직급(Eslon 1)의 세무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법원의 판사는 관세나 내국세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판사로 재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일반 법원의 판사가 법복 내에 자주색 상의를 착용하는 반면 조세법원의 판사는 법복 내에 푸른색 상의를 착용하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음.
- 조세법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조세분야에서 최종심으로 성격을 가지고, 비록 판결에 불복해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접수한다 하더라도, 조세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지 시키거나 중단시킬 수는 없음.
- 대법원의 재심은 조세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관계만을 확인하는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 관계에 의한 판단은 조세법원의 결정이 최종심입니다.
- 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는 조세법원법(UU Pengadilan Pajak)에 의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최초 고지세액의 최소50%를 납부하여야함.
- 이의신청 패소에 따른 벌금은 소송이 접수되면, 그 고지가 유예됨으로 사전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 현행 국기법(UU KUP) 제27조의 주석사항은 총 고지세액의 20%의 금액만 납부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어, 50%의 의무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원법과 상충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 법률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류로서, 조세법원법에 따라 최초고지세액의 50%가 납부되어야만 법원의 심리가 시작됨으로, 실제적으로 50%가 납부되어야 함.
- 또한 2015년 조세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비록 세무조사 최종협의(Closing Conference)에서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판단은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조세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하며,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법원은 납부세액을 추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결정문이 발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서를 이용하여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체납으로 간주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월2%의 증가산금을 부과. 즉,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납부할 세액의 잔액에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산과정은 위 이의신청의 예시와 동일함.

다. 고충청구 (행정구제)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UU KUP) 제36조에 의거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불복을 진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별도의 요청(Correction Request)이 있을 경우, 세액확정통지서에 포함된 가산세의 일부 감면이나 전액 감면을 결정할 수 있음.
- 또한 불복이 진행되었으나 요건 불충족 등의 형태적 이유로 이의신청의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된 납세자의 과세내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심리되어 세액확정통지(SKP)의 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최근 자카르타 특별지방청 이의신청 담당부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법원 재심청구까지 각하된 사례에 대하여, 당초 이의신청의 내용에 대한 심리가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관련 내용에 대한 심리 후 일부 취소결정을 내린바 있음.

-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 받지 못하였거나, 최종협의를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납세자의 특정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대하여도 해당 고충청구를 통하여 해당 과세가 취소될 수 있음.
- 관할 지방 국세청은 제출된 고충청구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고충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발행해야 함.
 - 6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고충청구는 전부 승인된 것으로 간주
 - 고충청구는 위 납세자 권리 침해의 경우는 1회만 제출 가능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기각된 경우 최장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충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의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소송(Gugata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소송

-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출국금지, 압류등의 체납처분의 집행, 국기법에 의하여 이의신청 대상으로 특정된 고지 등을 제외한 조세행정관련 결정,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지처분 등은 행정소송(Gugatan)의 대상이 됨
 - 국기법 제36조에 의한 고충청구가 기각된 경우도 특정 조세행정관련 결정으로 보아 조세법원에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2015년 조세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일선 세무서의 일반과세자 제각결정 취소요청에 대한 거부도 이러한 조세행정 관련 결정으로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고, 세무서로 하여금 취소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함으로, 고지 이외에 대부분의 통지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



- 또한, 최근 2015년 조세법원은 세무조사 결과 최종협의를 “이사진” 이외의 자가 참석하였다 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이를 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관련 고지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납세자의 소송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음.
-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집행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 외 다른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조세법원에 직접 제기하여야 합니다.

마. 대법원 재심청구

-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조세법원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최종 결정으로 간주.
 - 그러나 납세자 혹은 과세관청 양측 당사자는 조세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해당 결정의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PK)를 할 수 있음
 - 다만, 재심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

1. 소송 상대방의 위증·사기·거짓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2. 조세법원의 심리 시 고려되었다면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서면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
 3. 납세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되거나, 청구한 부분을 초과하여 인용된 경우
 4. 청구된 일부분이 심리되지 않거나, 판결에서 제외된 경우
 5. 조세법원의 결정이 현행 세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대법원 재심청구는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대법원에 제출되어야 함
 - 1과 2의 경우 해당 내용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 3과 4와 5의 경우 기한은 조세법원 결정문이 발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

- 대법원의 재심은 양측 당사자를 출석시키거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실심이 아니라, 대법관들에 의하여 당초 조세법원의 결정에 법리적 오류만을 확인하는 법률심입니다.
 - 별도의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해당 증거에 대한 내부토의만을 거치며, 별도의 공판절차를 가지지 않음.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조세사건에 대하여는 조세법원의 결정이 최종심으로서 구속력을 가짐.

V

국제조세



가. 개요

- 인도네시아 세법은 한국과 다르게 국제 조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과 제3A항을 통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 가격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과, 특수 관계자가 거주하는 다른 국가의 과세 당국과 협조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하여 이를 국제 조세와 관련된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전가격 문제와 한·인니 조세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룸
-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2008년 정부령 No.GR80/2007을 통해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TP') 문서화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하였으며,
- 국세청규정 No.PER-39/PJ/2009를 통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하도록 함. 이러한 규정 마련을 통해 2010년부터 대규모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이전가격 과세를 시작 하였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함.
- 이전가격 과세의 내용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나 경영 자문 수수료(Management fee) 등의 비물동 거래 중심 이었으나, 최근에는 매출 매입과 같은 물동 거래에 대한 거래가 주요 조사 타겟이 되고 있음
- 조세협약은 세무 상 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협약 상대국의 세무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세율 경감을 다루고 있음 따라서 한국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인니 조세 협약에 따른 소득의 구분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



나. 이전가격 과세

□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 정리

○ 위에서 언급한 규정은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이 이전가격을 과세하기 위하여 처음 마련한 것임. 그 이후 발표된 규정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과세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세청규정 No.PER-43/PJ/2010과 PER-32/PJ/2011 No.PER-43/ PJ/2010(PER-43)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으로 1995년 OECD 가이드라인에 기초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함은 지적에 따라 2011년에, 2010년 OECD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수정 규정 No.PER-32/PJ/2011(PER-32)을 발표함. PER-32가 PER-43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PER-43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만 PER-32를 통해 수정한 것이므로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함.

2) 국세청규정 No.PER-22/2013과 국세청훈령 No.SE-50/2013 No.PER-22/PJ/2013(PER-22)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일선 세무서가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가 낮고 납세자 또한 이전가격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표한 규정임. No.SE-50/2013(SE-50)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시, 조사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음 이 두 가지 규정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반드시 필요함.

3) 상호합의와 사전 가격 합의에 대한 규정

○ 이전가격은 결국 한국에 소재하는 본사(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아닌 제 3국에 소재하는 특수 관계자인 자회사)와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특수 관계자인 자회사 중 누가 조세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과세 관할권의 문제이며,

- 이전가격 과세는 필연적으로 양국 간의 이중 과세의 문제가 됨. 따라서 이전가격 과세의 해결 방법은 양 과세 당국이 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음
- 상호 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는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이후, 양 과세 당국이 합의를 통해 과세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임. 상호 합의 절차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규정 No.PER-48/ PJ/2010에서 다루고 있음
- 사전 가격 합의(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는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이전 양 과세 당국이 미래의 이전가격 범위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임. 사전 가격 합의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규정 No.PER-69/PJ/2010에서 다루고 있음

□ 이전가격 과세의 내용

1) 적용 대상 거래

- 이전가격 과세가 적용되는 대상 거래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로, 국세청 규정 No.PER-32/PJ/2011(‘PER-32’)의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특수 관계자의 정의는 전술한 소득세법 제18조 제4항의 내용과 같음.

- ▷ 인도네시아 내국 납세자(고정 사업장 포함)와 세무상 비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인도네시아 내국 납세자(고정 사업장 포함)간의 거래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예를 들어,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납세자 또는 석유 가스 산업의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인 납세자 등)
- ▷ 이러한 거래는 반드시 정상 가격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2) 정상 가격의 원칙의 적용과 문서화

- 정상 가격이란 납세자가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를 반영한 것을 의미함.

- 적용 대상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납세자는 PER-32 제3항에 따라 거래가 정상 가격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문서를 이전가격 문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TPD')라고 함. 이전가격 문서화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 비교 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수행 및 비교 가능 자료의 선택
- ▷ 적절한 이전가격 산출방법(Transfer Pricing Method) 선택
- ▷ 비교 가능성 분석과 결정된 이전가격 산출 방법에 근거한 정상 가격의 원칙 적용
- ▷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 가격 혹은 이윤을 결정하는 각 단계를 문서화

- 다만, 일역년 동안의 특수 관계자 총 거래금액이 Rp.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비교 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 비교 가능성 분석을 수행할 때에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비교되는 거래와 해당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가격이나 이윤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됨
 -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의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정이 가능함
 - 내부 비교 가능 자료와 외부 비교 가능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 내부 비교 가능 자료를 우선 적용함
 - 사용 가능한 내부 비교 가능 자료가 부분적인 경우, 특수 관계자 거래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되는 유무형 재화와 용역의 성격·거래 당사자의 기능·계약 조건·경제 상황·사업 전략’ 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거래되는 유무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분석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재화와 용역의 성격분석 시 고려사항(PER-32 제6조)>

구 분	유형 재화	무형 재화	용 역
고려사항	재화의 물리적특징 재화의 품질 재화의 내구성 재화의 가용성 공급의 양	거래의 종류 무형 재화의 종류 보장 기간과 보호의 정도 무형 재화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이익	용역의 성격과 종류 용역의 범위

- 거래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분석(Functional Analysis)과 경제 환경 분석 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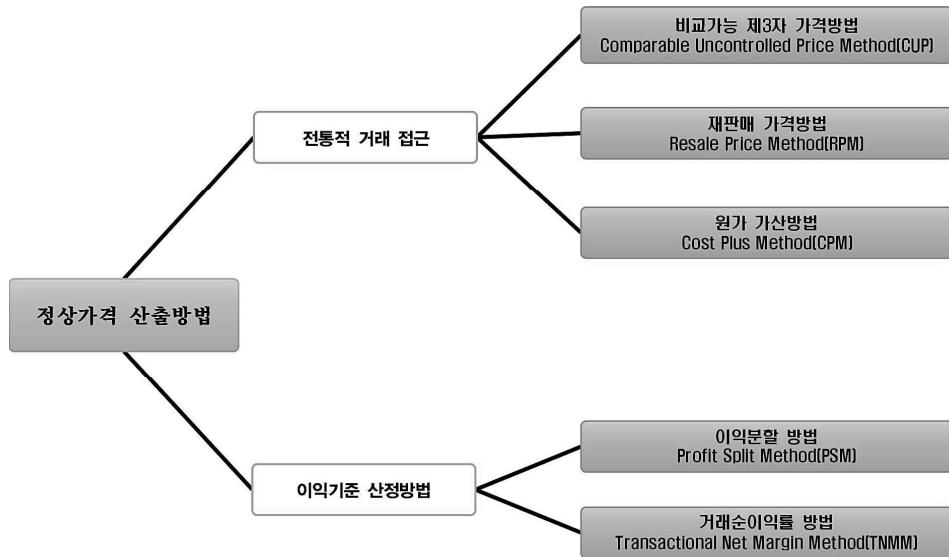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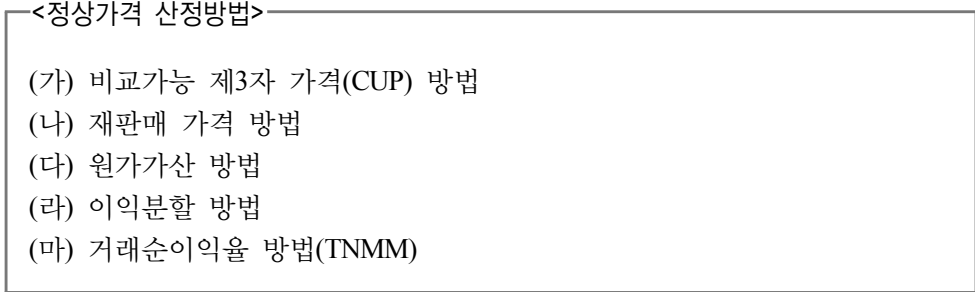
<기능 분석과 경제환경 분석시 고려사항(PER-32 제7조와 제9조)>

구분	기능 분석	경제환경 분석
고려 사항	조직 구조와 그룹의 Supply Chain management 회사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과 회사의 기능 성격 사용하는 자산의 종류와 성격 거래 주체가 부담하는 위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경쟁의 수준과 경쟁 위치 대체 재화와 용역의 가용성 국내외 시장의 수요와 공급 수준 소비자의 구매력 시장에서 정부 규제의 성격과 범위 생산 비용, 운반 비용, 시장 수준 거래의 날짜와 시간



다. 이전가격 산출 방법의 선택

○ 다음의 방법들은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5가지 정상가격 산정 방법

- (가),(나),(다) 은 전통적 거래접근 방식임
- (마)와(바) 방법은 일반적으로 거래이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통적 거래방법을 신뢰성 있게 적용할 수 없거나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방식이 최근에 많이 사용됨
- 납세자는 어떤 방법이든 선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정상가격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점임

- PER-32는 제11조에서 이전가격 산출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른것임. 5가지 산출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적용시 고려사항>

- 제품의 동일성
- 거래시기의 동일성
- 거래시장의 동일성(시장수준, 지리적 동일성)
- 거래조건의 동일성(대금지급조건, 운송조건)
-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 관계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임. 이 방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 1) 거래 대상 재화나 용역이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거나,
- 2) 높은 수준의 비교 가능성 혹은 차이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차이 조정이 가능하여야 함.

□ **재판매 가격법 (Resale Price Method, RPM)**

- 특수관계자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정상가격>

- 정상가격 = 재판매가격 - 구매자의 통상이윤
 ※ 구매자의 통상이윤 = 재판매가격 ×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 이 방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 1) 기능 분석에 기초한 비교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 2) 재판매자가 중요한 부가가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CPM')

-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정상가격>

- 정상가격 = 발생원가 + 자산 판매자 및 용역제공자의 통상이윤
- ※구매자의 통상이윤 = 재판매가격 ×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제공 원가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임. 이 방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 1) 특수 관계자간 거래 재화가 재공품/판제품임
- 2) 장기 공급계약 하에 있거나,
- 3) 특수 관계자 거래가 용역 거래 이어야 함.

□ 이익 분할법 (Profit Split Method, PSM)

- 특수 관계자간 거래를 통해 양 당사자가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적절한 배부 기준에 따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여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임. 이 방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 1) 특수 관계자간 거래가 높은 수준에서 통합 되어있거나,
- 2) 제 3자간 거래와 비교 가능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핵심적인 무형 자산이 거래에 관여 되어야 함.

□ 거래 순이익률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함

<유형>

-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 특수 관계자 거래와 유사한 제 3자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순이익율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임. 이 방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 1) 일방 당사자가 특수 관계자 거래에서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 2) 일방 당사자가 특수 관계자 거래에서 복잡한 거래를 수행하고 거래가 높은 수준에서 통합 되어있어야 함.

- 위의 5가지 방법 중 적절한 산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 각 방법의 장단점
- ▷ 기능 분석에 기초하여 결정된 특수 관계자 거래의 성격에 맞는 방법
- ▷ 선택된 방법 하에서 신뢰할만한 정보의 유무
- ▷ 제3자와의 거래에서 비교 가능성의 정도

라. 이전가격 세무조사 가이드라인

○ 2013년 발표된 세무조사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인 국세청규정 No.PER-22/2013과 국세청훈령 No.SE-50/2013은 일선 세무 공무원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납세자의 준비 부족이라는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발표됨.

- 두 가지 규정의 목표는 현행 이전가격 규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납세자가 이전가격 문서를 과세 당국의 기대에 맞게 원하는 정보를 담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무조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 두 규정 모두 본문의 내용은 이전가격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첨부 서류에서 다루고 있음

□ 국세청규정 No.PER-22/PJ/2013(PER-22)PER-22의 첨부서류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성됨.

1) 첨부서류 1 (Lampiran I)

- 제1장(이전가격 개요) : 국제 거래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설명 ·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 · 정상가격의 원칙에 대한 정의
- 제2장(이전가격 감사 절차) : 준비 단계, 감사 실행 단계 및 감사 결과 보고 단계
- 제3장(이전가격 산출 방법) : 5가지 산출 방법에 대한 이해
- 제4장(정상가격 원칙의 적용) : 정상가격 원칙 적용에 대한 3가지 적용 사례

2) 첨부서류2 (Lampiran II)

○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한 질문서로, 이전가격 감사에 활용됨. 특히 이 서류는 납세자가 해당 질문서에 대하여 답변을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총 10개의 서식으로 구분되어 있음

- 소개서와 자료 요청
- 진술서(납세자의 서명 필요)
- 특수 관계자 거래내역
- 부분 재무제표 : 특수 관계자 거래 구분
- Supply Chain Management Analysis
- 기능, 자산, 위험분석(Function, Assets and Risks Analysis, 'FAR')
- 사업의 성격
- 비교 가능성 분석
- 특수 관계자 거래정보 제공 확인 서한
-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설명이 기록된 회의록

○ 첨부서류 2의 내용은 대부분 이전가격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의 요약 형태임. 납세자가 서명한 첨부서류 2는 세무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전가격이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훈령 No.SE-50/2013(SE-50)SE-50의 첨부서류는 다음의 3가지로 구성됨.

1) 첨부서류 1(Lampiran I) : 이전가격 세무조사 절차

○ 개관과 함께 이전가격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음. 세무조사 절차는 준비 단계·실행 단계·보고 단계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준비단계에서 납세자의 조세회피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담고 있음

○ 납세자의 조세회피 위험성 판단을 위한 7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특수 관계자 거래가 매출액과 영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 거래 상대방이 조세 피난처에 소재하는 지 여부,
- 특정 거래(라이선스 거래, 로얄티 지급, 통합 서비스, 이자 비용 등),
- 산업내 경쟁자들에 비해 낮은 영업 이익률,
- 비영업 손익의 중요성(이자 비용, 자산 처분 손익, 외화 관련 손익 등)
- 비경상적 특수 관계자 거래(사업 구조조정 등),
- 지속적인 손실 여부.



- 실행 단계에는 납세자의 사업의 성격을 결정하는 7가지 사례와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는 2가지 사례,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는 19가지 사례가 나와 있으며, 세무 조사원은 이를 참고하여야 함.

2) 첨부서류 2 (Lampiran II) : 세무조사 조서 양식

- 세무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기 위한 조서 양식으로, 내용은 PER-22의 첨부서류 2와 매우 유사하며 다음을 포함함 :

- 특수 관계자 거래에서 정상가격 원칙이 적용 되었는지 테스트,
- 주주와 특수 관계자의 내역, 납세자의 산업 분석, 특수 관계자 거래, Supply Chain Analysis, 기능 분석, 납세자 사업의 성격, 비교 가능 회사 정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
- 이전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 가능성 분석, 합리적인 이전가격과 이익 결정

3) 첨부서류 3 (Lampiran III)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SPHP) 조서 양식

-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조서 양식으로, 특이한 점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세무 조사원의 의견과 납세자의 의견이 모두 비교 형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임
 -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 이해됨.

마. 이전가격 분쟁의 해소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전가격은 양 과세 당국간의 과세 관할의 문제이므로 이전가격 과세를 당하는 경우 또는 이전가격 과세를 당하기 이전에 납세자는 양 과세 당국에 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상호합의 절차(MAP)와 사전가격 합의(APA)가 바로 그것으로, 다음은 각 절차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임.

□ 상호합의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 상호합의 절차는 한·인니 조세협약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세청 규정 No.PER-48/PJ/2010(PER-48)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 납세자는 이전가격 과세와 같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두 개의 과세 당국에서 이중과세를 받게 되는 경우 등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1)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

- 상호합의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실행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세무상 거주자의 신청
- 적용되는 조세협약의 ‘무차별’ 조항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이 조세협약 상대국의 세무상 거주자가 되어 신청(한·인니 조세협약의 경우 제24조)
- 조세협약 상대국의 신청
-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직권 개시

- 위의 4가지 종류의 신청이 있으며, PER-48은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본서에서는 상호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이 신청하게 되는, ‘인도네시아 세무 상 거주자의 신청’에 대하여 주로 다룬다. 다른 신청의 내용 역시 이와 유사하므로 참고하면 됨.

2)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하는 사유

- 인도네시아 세무 상 거주자가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세무상 거주자가 조세협약 상대국에 소재하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조세를 납부한 경우
- 인도네시아 세무상 거주자가 조세협약 상대국으로부터 거주자 또는 고정 사업장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 협약에 반하는 조세를 부과받은 경우
- 인도네시아 세무상 거주자가 조세협약 상대국으로부터 원천징수에 관하여 조세 협약에 반하는 조세를 부과받은 경우
- 인도네시아 세무상 거주자가 조세협약 상대국으로부터 거주자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해 판단을 신청하는 경우



3) 상호합의 절차의 신청과 개시

- 인도네시아 세무 상 거주자는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에 PER-48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이에는 납세자 정보, 상호합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내용과 이에 대한 설명, 조세협약 상대국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됨. 신청서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서는 조세협약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인니 조세협약 제25조는 “이 협정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 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일 부터 3년 이내” 로 이를 규정하고 있음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한 후, 미비한 경우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또한 신청서가 완전히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청서를 이관하여야 함.
 -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국세청규정 2국장(The director of tax regulation II) 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할 지 결정하게 됨.
 - 진행이 결정되면 국세청규정 2국장은 조세협약 상대국에 서면으로 상호합의 절차 요청서를 보내게 되고,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됨. 다만, 기한이 지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함.

4) 상호합의

-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조세협약 상대국 과세 당국이 상호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상호합의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
 - 납세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 내용에 대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용된 경우 양 과세 당국은 상호합의에 이르게 됨.
 -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된 과세 내용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납세 고지의 수정 또는 취소를 하여야 함.

- 상호합의 절차 중에도 납세자가 취소를 신청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거나, 국세청이 요청한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국세청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취소될 수 있음

□ 사전가격 합의(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 국세청규정 No.PER-69/PJ/2010(PER-69)이 언급하고 있는 사전가격 합의 제도의 목적은 이전가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혜택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특수 관계자 거래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될 수 있음

- 미래 이전가격을 사전에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양 과세 당국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이전가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음은 장점이 있음

1) 사전 검토 회의(Pre-lodgment meeting)

- 인도네시아 사전가격 합의 규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 사전 검토 회의를 통해 사전가격 합의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공식 신청 이전에 미리 논의하게 됨. 사전 검토 회의의 신청은 Form APA-1를 통해 이루어짐.
 - Form APA-1은 PER-69의 첨부서식1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면으로 제출 하되 다음의 첨부서류를 포함하여야 함.

- ▷ 납세자의 회사 설립 공증서 또는 유사 서류;
- ▷ 납세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 그룹의 영업 및 소유 구조와 조직 구조를 포함한 회사의 구조;
- ▷ 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주주와 납세자 간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 다른 특수 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들과 납세자 간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 APA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 납세자의 이전가격 산출 방법과 이전가격 문서, 납세자의 이전가격 산출 방법의 적합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조건·환경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회계 시스템·생산 프로세스·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납세자와 유사한 영업 활동이나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 경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 직전 3개 연도의 부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사본; 납세자가 관련이 있음이고 간주하는 다른 문서

○ 사전 검토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게 됨.

- APA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산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상대방 과세 당국의 참여 하에 APA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논의
- 납세자가 수행한 이전가격 문서와 분석에 대한 논의
- APA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협의
- APA와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하여 논의

○ 사전 검토 회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APA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2) APA의 진행

○ 사전 검토 회의에서 APA의 진행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납세자는 PER-69의 첨부서류2에 따라 정식으로 APA를 신청하게 되며 Form APA-2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Form APA-2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사전 검토 회의의 결과에 대한 요약; 납세자의 이전가격 문서를 포함한 이전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설명; 결정된 이전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조건에 대한 설명; 납세자가 선택한 산출 방법이 정상가격의 원칙에 부합함은 근거 자료; 중요한 가정에 대한 분석

○ APA 진행 과정에서는 다음을 논의함.

- APA가 적용되는 거래와 기간
- 비교 가능성 분석, 비교 대상 정보의 선택과 결정
- 이전가격 산출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과 요소
- 다른 국가와 APA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한 지 여부

3) APA의 적용

○ APA는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으로 부터 최장 3년간 유효함.

- 또한 APA의 결과를 소급적용 할 수 있는데, 이미 세무조사 중이거나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과세연도에는 소급적용 할 수 없음.
- APA가 완료되면, 합의에 이른 날 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합의 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합의 문서에는 납세자 정보와 APA가 적용되는 기간 및 이전가격 산출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4) 사후관리

○ APA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매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APA가 납세자의 영업 활동에 적합함을 기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에는, APA에 포함된 거래와 이전가격 산출 방법을 납세자가 적용 하였으며,
- 이전가격 산출 방법이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음은 설명과 함께 이전가격 산출 방법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APA를 취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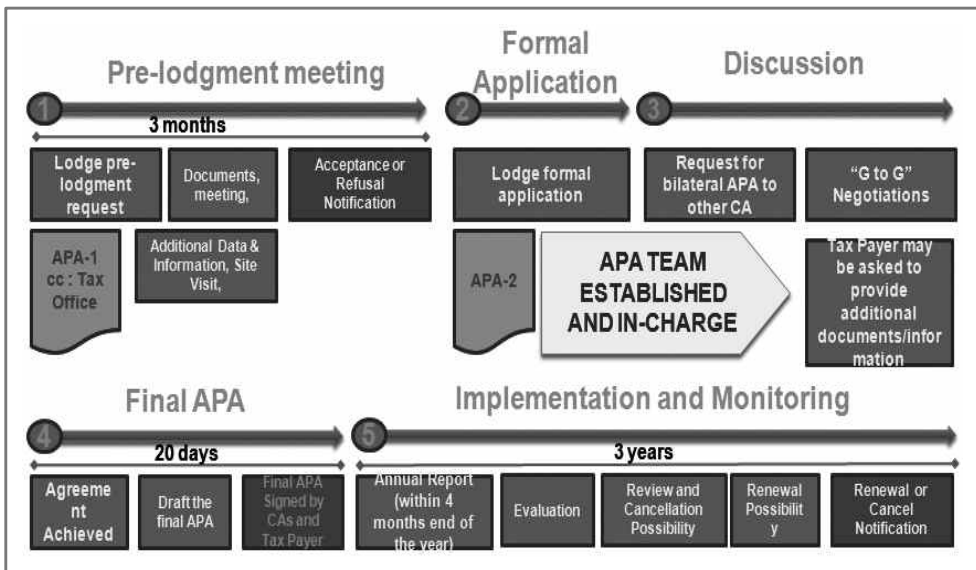
- 납세자가 APA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납세자가 국세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이전가격 산출 방법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APA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 납세자가 조세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행한 경우



5) APA 관련 규정 분석

- APA의 법적근거
 - 국제청령 Per 69/PJ/2010, GR 74 2011
- APA의 종류
 - 규정은 일방, 쌍방, 다방 APA를 상정
 - APA 절차관련 규정은 일반 APA에 초점
- APA 승인 절차
 - 사전심사 - 정식접수 - APA 심사 상담 - APA 승인 - 집행

<APA 절차 흐름도>



- APA 기간 및 소급적용
 - APA가 승인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최대 3년간
- 소급적용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심사하여 허용

-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을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불복이 없었을 것
- 조세범칙 혐의가 없을 것

- APA 갱신
 - 갱신과 관련 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세무조사와 APA
 - Per 69에 따르면 APA가 체결되어 있어도 세무조사가 예방되지는 않아서 문제였으나 GR74로 2012년부터는 문제해결
 - APA 체결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과세 불가

바. 조세협약 : 한 · 인니 조세협약

- 조세협약은 일반적으로 이중 과세 방지 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 'DTA')을 의미하며, 협약 체결국의 세무 상 거주자가 이중 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한 · 인니 조세협약은 1988년 11월 10일 체결 되었으며,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은 2011년 한국 정책 금융 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취하는 이자에 대한 면세 적용 기관에 포함된 것임.
 - 조세협약에 따라 협약 상대국의 거주자(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는 비거주자로서 일방 상대국(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세협약의 적용은 불필요한 세금 유출을 줄일 수 있음
 - 한 · 인니 조세협약 원문은 별첨으로 수록함. 여기에서는 조세협약의 주요내용과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 및 과세 사례에 대해 다룬다.

□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 조세협약은 일반적으로 일방 당국의 거주자인 경우, 상대방 국가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수익적 소유자가 그 혜택을 받는 당사자로 인식됨(한·인니 조세협약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 수익적 소유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개인, 다만 대리인이나 명의 대여자로서 수익을 수취하는 경우 제외
- 조세협약에 명시된 기관 및 인도네시아 공정 거래 위원회와 조세협약 상대국에서 인정하는 기관
-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에서 주식 혹은 채권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수취하는 해외 거주자, 다만 대리인이나 명의 대여자는 제외
- 증권 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회사
- 조세협약 상대국에서 과세되는 승인된 연금 펀드
- 은행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

- ▷ 조세협약 상대 국가에서 설립 되었고, 거래구조가 단순히 조세협약 상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경영진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것
- ▷ 종업원이 있을 것
- ▷ 영업 활동 또는 수행중인 사업이 있을 것
- ▷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 대상일 것
- ▷ 다른 상대방에게 총 소득의 50% 이상을 의무 이행 목적으로 이자·로열티·배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 고정 사업장의 형성

- 한·인니 조세조약은 비거주자라고 하여도 특정 기간을 초과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에 등록하는 모든 외국법인은 자동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발부되어, 일반 법인과 동일한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여받게 됨.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인도네시아에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개설하는 경우, 영리활동과 사업성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게 되고, 관련법률에 의하여 모법인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수출가액의 0.37%를 추계과세됨

□ 이자 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한·인니 조세협약 제11조 에서는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 기관을 특정하고 있음 ‘중앙은행’ 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 기관’ 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은행과 수출입 은행 및 산업 은행(정책 금융 공사 포함)이 이에 해당

□ 양도 소득의 과세 여부

- 한국의 세무상 거주자(인도네시아 비거주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소재의 자산 양도를 통해 수취하는 이익(‘양도 차익’)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문의와 사례가 있었음
 -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부동산 양도 차익은 한·인니 조세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함. 따라서 한국 거주자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부동산 이외의 자산(예를 들어,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는 거주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한국 거주자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매각하는 경우, 본래에는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매각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원천징수는 면제됨.



□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소득에 대하여 경감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조세협약에 따른 경감된 원천징수 세율>

배당	이자	사용료	지점 이윤
10%	10%*	15%	10%

- 다만, 위의(3)에서 설명한 면제 대상 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면제

□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조세협약 상의 원천징수 경감이나 면제 또는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인도네시아의 거주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 이를 증명하는 서식이 거주자 증명서(국세청 Form 1)이며, 한국 국세청에서 해당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에 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인정 가능하며, 해당 소득 발생 시 이를 과세 당국에 함께 제출하여야 조세협약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해당 서식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음.

<국세청 Form 1>

구 분	주요 내용 및 해설
Part I	소득을 수취하는 자의 성명, 납세자 번호, 주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자의 성명, 납세자 번호, 주소
Part II	해당 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인도네시아의 거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명
Part III	거주지국 세무 당국의 확인*
Part IV	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작성
Part V	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작성
Part VI	소득의 종류와 인도네시아에서 원천징수 하는 금액(루피아 기준)



- 거주지국 세무 당국의 확인을 위해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Part C에 서명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음

사. 인정 이윤 과세(deemed profit)

- 2012년과 2013년, 다수의 한국 상사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가 고정 사업장에 해당함은 이유로 인정 이윤에 대하여 과세를 받았다.
 - 대표 사무소는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수행함은 이유로 고정 사업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인데 이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 건설 지사에 대한 과세 : PPh4(2), PPh26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표 사무소는 대표 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Ministry of Public Works(‘MoPW’)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이렇게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건설업 대표 사무소(이하, ‘건설 지사’)를 Public Works/Construction Representative Office(‘PWRO’)라고 부른다.
 - 건설 지사는 최종 분리 과세(PPh4(2))를 적용 받으며,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른 지점 이윤세(Branch Profit Tax)를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 건설 지사에 대한 이해

- 건설 지사에 대한 규정은 No.10/PRT/M/2014로 2014년 10월 중 발표된 규정이 가장 최근 규정임. 동 규정은 과거 No.05/PRT/M/2010을 개정한 규정으로, 불명확 했던 부분들 중 상당 부분이 명확해졌다.
 - 건설 지사는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로컬 건설 회사와 Joint Operation(‘JO’)를 형성하여야 함.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Negative List)에 따른 건설업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67%로 제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임.



- JO는 세무상 독립성 여부에 따라 Administrative JO와 Non-Administrative JO로 구분됨. 전자는 JO가 별도의 납세자 번호(NPWP)를 부여받아 독립적인 세무상 납세 주체가 되는 경우이며, 후자는 JO가 별도의 납세자 번호 없이 운영되고 납세 의무는 건설 지사와 로컬 건설회사(JO partner)가 부담하는 것임.
- 전자의 경우에는JO를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PKP)로 등록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의무 또한 부담하게 됨.

□ 새로운 규정의 내용

-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규정(No.10/PRT/M/2014)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건설 지사 신·구 규정 비교>

내용	구 규정	신 규정
JO 협약 체결 시점	불명확, 다만 실무적으로 입찰 프로세스 이전 혹은 공사 시작 이전에 JO 협약 체결	필수적으로 입찰 프로세스 시작 전에 JO 협약 체결
JO Partner 요건	100% 현지인 지분인 건설회사	현지인 지분이 65%인 건설 회사로, MoPW의 사전 승인 필요
JO Partner 가 수행하는 업무 비중	규정 없음	건설 시공 : 총 금액의 30% 이상 건설 자문 : 총 금액의 50% 이상
건설 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고위험, 하이테크 기술 및 높은 비용의 건설 프로젝트	구 규정과 유사하며, 건설 시공 : Rp. 1천억 이상 건설 자문 : Rp. 1백억 이상의 프로젝트 일것
수행 지역	규정 없음	건설 시공 : 총 금액의 50% 이상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행 건설 자문 : 100% 인도네시아 내 수행
지식 전수 요건	규정 없음	지식 전수에 대한 요건 포함
경영진 요건	규정 없음	건설 지사의 이사, 감사 및 지사장은 다른 인도네시아 건설 회사의 이어나 감사를 겸임할 수 없음

□ 최종 분리 과세의 적용 :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PPh4(2))

- 건설 업종은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되며, 규모와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다. 그 구분은 다음과 같음.

<건설 용역의 최종 분리 과세 세율 구분>

구 분	건설 시공	건설 설계	건설 감리
소규모 업체 인증	2%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일반 업체 인증	3%	4%	4%
인증이 없는 경우	4%	6%	6%

- 위의 ‘인증(Sertifikasi)’이란, 인도네시아 건설협회(Lembaf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 ‘LPJK’)가 발행하는 인증서(Sertifikat Penyetaraan)로 소규모 업체 인증과 일반 인증으로 구분됨.
- 과거에는 일반적인 건설 시공을 수행하는 건설 지사의 경우, LPJK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대부분의 한국 건설 지사는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4%의 원천징수를 적용받아 왔다.
- 그러나 새로운 규정(No.10/PRT/M/2014)에 따라, 건설 지사도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2015년 4월 7일까지) LPJK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앞으로는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2% 또는 3%의 낮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게 됨.

□ 지점 이윤세 (PPh26)

- 건설 지사는 위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이외에도, 소득세법 제26조(PPh 26)에 따라 세후 이익의 10%를 지점 이윤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율은 20%이나, 한·인니 조세협약에 따라 경감된 세율인 10%가 적용됨.
- 지점 이윤세의 논리는, 건설 지사의 경우 세후 이익을 본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과 동일한 과세를 하기 위함임.
- 인도네시아에 건설 자회사를 법인으로 둔 경우, 이익을 본사에 배당할 때 배당에 대하여 10%의 원천징수(조세협약에 따라)를 하게 됨. 이와 동일하게 건설 지사도 세후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VI

국세기본법

1. 인도네시아 국세 기본법의 연혁과 개요	76
2. 신고 의무	80
3. 납부 의무	89



1 인도네시아 국세 기본법의 연혁과 개요

가. 개요

- 인도네시아 국세 기본법은 한국의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국세의 부과, 송달, 벌칙, 불복, 기장, 조사 등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

나. 납세자번호

- 국세기본법 제 2조 에는 납세 의무의 수행과 납세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모든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 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NPWP')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 2조 제 2항 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Pengusaha Kena Pajak, 'PKP')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에서 다루도록 함.

□ 납세자 번호의 구성

- 납세자 번호는 총 15자리로 구성 되어 있음
 - 예시 : 01.069.536.9-091.000
- 납세자 번호를 구성하는 각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납세자 번호의 구성>

구 분	의 미
최초 2자리	납세 의무자의 종류(법인 : 01~03; 개인 : 04~09)
다음 6자리	납세 의무자 일련번호
다음 1자리	Digital Check 번호
다음 3자리	세무서 번호
최종 3자리	납세 의무자의 상태 : 단일 사업장, 지점 여부 등

□ 납세자 번호의 변경

- 납세자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주소지의 변경임.
 - 납세자가 주소지를 이전 하는 경우, 기존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 번호를 반납하고 새로운 관할 세무서로부터 납세자 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간 동안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해지는 등의 불편한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주소지 이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규 세무서로 세적 이전을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완료되므로 간단함
-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며, 국세청규정 No.KEP-161/PJ/2001에서 이를 다루고 있음
 - 다음은 규정의 주요 내용임.

<기존 세무서 확인 및 제출>

-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세무서에 확인 및 제출 절차가 필요함.
 - 기존 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 정리
 - 납세자 정보 변경 신청서 작성
 - 납세자 카드 반납
 - 이전되는 주소지의 거주 사실확인서 제출
 - 통상적으로 모든 세목에 대한 최근 3개월 신고서 및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적으로 요구

□ 납세자 변경 신청 및 처리절차

- 납세자는 기존 세무서에 납세자정보변경신청서(Formulir Permohonan Pendaftaran Dan Perubahan Data Wajib Pajak)와 세적이전사실통지서(Surat Pemberitahuan Pernyataan Pindah) 및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함.

- 기존 세무서는 위의 확인 및 제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장의 서명이 있는 이전서류(Surat Pindah)를 납세자에게 교부함.
- 납세자가 신규 세무서에 이전 서류를 제출하면, 신규 세무서에서는 새로운 납세자 번호와 세적등록 사실확인서(surat Keterangan Terdaftar)를 발급함.
- 해당 서류는 팩스로 기존 세무서에 송부되며, 기존 세무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세적 등록 제각확인서(Surat Pencabutan Surat Keterangan Terdaftar)를 발급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함.
- 또한 신규 세무서 에서는 새로운 납세자 번호와 관련된 업무가 완료된 후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 과세자(PKP) 등록 업무를 하게 됨.

□ 납세자 번호의 취소

- 납세자 번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이 취소할 수 있음
- 납세자가 납세자 번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법인인 납세자가 영업 중단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청산을 하는 경우
 - 외국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인도네시아에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이 직권취소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인 경우, 개인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

다. 과세기간

- 국세기본법 제 2A조 에서는 과세기간(Tax Period) 을 1역월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 월이 국세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기간이 됨.

- 그러나 소득세법 제 1조는 과세 기간을 사업연도(Fiscal Year) 인 1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는 각 월별로 신고 납부 의무가 부여되며,
- 연간소득세 역시 전년도 소득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월 월할 선납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이러한 소득세법의 월 단위 신고 납부 의무는 국세기본법의 과세 기간 규정에 상응하는 제도로 보임 (소득세법 참조).
- 부가가치세법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 기간을 동일하게 1역월로 규정하고 있음

라. 국세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에서 명확하게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명하고 있는 규정은 실제로 없음.
 - 다만, 제 13조에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과소납부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SKPKB')를 발행할 수 있는 기한을 납세 의무 성립일 또는 납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과소납부통지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에 비해 실제로 납부할 금액이 많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때 발행 함.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납세 기간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이해함

2 신고 의무

가. 신고의무 일반

- 인도네시아 세법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택하고 있음 따라서 납세자는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됨.
- 국세기본법 제3조는 이러한 신고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음. 다음은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

□ 신고서의 제출 : 제 3조 제1항과 제 1a항

- 납세자는 법률과 규정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적합하고 완전하고 명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때 사용 되어야 하는 언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이어야 하며, 로마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 및 루피아(Indonesia Rupiah, Rp. 또는 IDR)를 사용 하여야 함. 또한 신고서에는 납세자의 서명(스탬프 서명 이나 전자 서명 방식을 포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다만,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와 외국 화폐로 장부 기장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되, 화폐는 허가 받은 통화로 할 수 있음
 - 장부의 기장 의무는 기능 통화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별도로 규정 하고 있으며, 후술 하도록 함.

□ 신고 기한과 연장 : 제 3조 제 3항, 제 4항과 제 5항

- 월별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세목(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목)에 대해서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의무가 부여됨.
 - 개인의 연간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통 익년 3월말 까지), 법인의 연간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보통 익년 4월 말 까지)임. 부가세와 사치품 소비세는 익월 말일까지가 신고 기한임.

<세목별 신고 기한>

구 분	신 고 기 한
연 법인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연 개인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부가가치세와 사치품소비세	익월 말일
원천징수*	익월 20일
월 선납법인세(소득세법 제25조)	익월 20일

* 소득세법 제4조 제2항과 동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의미함.

- 다만, 연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최장 2개월의 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함. 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연장 신청시, 임시 연간소득세 계산서(드래프트신고서)와 이에 근거한 납부서 및 재무제표를 첨부 하여야 함.

□ 미신고 의제 : 제 7항

-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당국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국세청은 반드시 납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신고서에 서명이 없는 경우
- 규정이 정한 정보와 문서가 완전히 제출 되지 아니한 경우
- 과세 기간이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신고로 환급(Overpayment)에 해당 하는 경우

나. 장부의 기장 의무와 재무제표 및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 국세기본법 제 4조는 장부를 기장하는 납세자에게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제 28조는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납세자와 장부의 기장 및 보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장부의 기장 의무

- 국세기본법 제 28조가 규정 하고 있는 장부의 기장과 관련된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자영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모든 법인은 인도네시아어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음 장부의 기장과 기록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되, 로마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 및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로 기록 되어야 함.
- 장부는 최소한 자산·자본·부채로 나누어 하여야 하며 수익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을 나누어 과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함. 또한 장부 기장은 이전 사업연도와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 장부 기장 방법의 변경과 회계연도의 변경은 과세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함. 따라서 유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나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과 같은 중요한 회계 변경을 세무상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함.
- 또한 장부 기장의 기초가 되는 장부, 근거 서류, 관련 기록 등은 10년간 인도네시아에 보관하여야 함.

- 외화 장부 기장의 허용

- 제 28조 제 8항은 외국어와 외국 화폐를 사용한 장부 기장에 대하여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재무부 장관령은 No.24/PMK.011/2012로 기존 규정 No.196/PMK.03/2007의 개정 규정임.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영어와 미 달러화(USD)로 장부 기장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언어와 화폐는 승인의 대상이 되지 못함.
-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승인 신청 대상>

- 다음의 납세 의무자는 영어와 미 달러화 장부 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관련법령에 따른 외국인 투자법인(PMA)
 - 광업법 규정에 따른 CoW(Contract of Work) 가스오일 산업의 PSC(Production Shareing Contractor)
 - 고정 사업장
 - 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 자본시장 감독국(Badan Pengawas Pasar Modal Lembaga Keuangan, 'BAPEPAM')에 미 달러화 개방형 펀드를 발생하는 집합 투자 계약
 - 소득세법 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국외 모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

a) 승인 절차

-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납세자는 영어와 미 달러화로 기장을 하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이전 3개월 전까지(회계 기간이 12월 말 로 종료 하는 경우, 직전연도 9월 말까지)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 신설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국세청에 신청 하여야 함.
- 신청서를 접수 받은 지방 국세청장은 접수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 으로 간주함.

b) 세무상 적용

- 승인을 득한 납세자는 연 소득세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미 달러화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이때에도 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야 하며(단 PSC 회사 제외), 납부는 루피아화로 이루어져야 함.
- 루피아화로 기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서에 미달러화로 환산하여 기재 하여야 하며 이 때 환율은 납부일 또는 원천징수일의 환율을 적용함.

- 승인을 득한 납세자는 루피아화에서 미 달러화로 기초 재무제표(전기말 재무제표)를 환산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다음과 같음.

<재무제표 계정 별 적용 환율>

계정 구분	적용 환율
유 무형 자산	취득일의 유효 환율
그 외의 자산부채	전기말의 유효 환율
재평가 차액	재평가일의 유효 환율
이익 잉여금 / 결손금	전기말의 중앙은행 환율
그외의 자본계정	해당거래일의 유효 환율
세무상 이월 결손금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말의 중앙은행 환율

- 유효 환율은 거래에 실제로 적용된 환율을 의미함. 중앙은행 환율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기준 환율(Bank Indonesia middle rate)을 의미함.
- 환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이익 잉여금에 가감함.

c) 재변경

- 승인을 득한 납세자는 최소한 5년간 해당 장부를 영어와 미 달러화로 유지하여야 하며, 루피아화로 재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5년 이후의 재변경은 서면에 의한 요청으로 가능함.
- 승인이 직권으로 취소되거나 재변경 요청으로 변경되어 루피아화를 적용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은 미 달러화 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 재무제표 및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 장부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 4조에 따라 연간 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음 이와 함께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로 간주됨.
- 현행 인도네시아회사법 UU No.40/2007 제 68조에 따르면, 상장회사나 정부 소유회사 등에 공인 회계사의 외부 감사 의무를 부여 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매출액이 Rp. 500억 이상인 경우 에도 이에 해당함.



- 또한 동 조에서 위임한 상공부령 No.121/MPP/Kep/2/2002에서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Rp.500억 이상인 회사와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하여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기업 정보를 회계 기간이 종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상공부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인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실무적인 편의일 뿐 규정에 부합 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은 점에 유의하여야 함.

다. 신고 방법과 미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6조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서 접수 증빙을 발행해 주어야함과 신고의 방법에 대해 규정함
또한 제7조는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신고 방법

- 국세기본법 제6조 제 2항은 납세자는 우편제출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고만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신고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짐.

- 직접 제출
- 우편 제출(택배 또는 특송회사 이용 제출 포함)
-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제출(e-filing, e-SPT)
- 직접 제출하는 경우나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증이 발행됨. 그러나 우편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송 증명이 접수증을 대신함.



□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제출

- 신고서의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제출에는 e-filing과 e-SPT 가 있음 국세청 규정 No.PER-6/PJ/2009에 따르면 LTO(Large Taxpayer's Office) 및 자카르타 지방 국세청 등 특정한 세무 관서에 등록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신규 법인이라면 해당 여부에 대해 세무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E-filing

- 국세청에 의하여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임.
- 해당 사업자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 www.pajakku.com
- ▷ www.laporpajak.com
- ▷ www.layananpajak.com
- ▷ www.spt.co.id

2) E-SPT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세청 홈페이지(www.pajak.go.id)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3) E-FIN 과 인증서

-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신고서 제출에는 반드시(Electronic filing identification number(E-FIN)과 인증서가 필요함.
- E-FIN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승인 및 수령 받을 수 있음 E-FIN을 수령한 납세자는 ASP사업자의 웹사이트에 E-FIN을 등록
- ASP 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지연 또는 미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 3조 제 3항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과금(Denda)이 부과 됨.

<미신고 가산세>

구 분	벌 과 금(Rp.)
부가가치세 신고	500,000
기타 월 신고	100,000
개인 연소득세 신고	100,000
법인 연소득세 신고	1,000,000

라.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 8조에서는 수정 신고와 함께 부적절 신고제도를 다루고 있음 수정신고는 우리나라 세법상의 경정청구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적절 신고제도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자진 수정과 관련된 제도임.

□ 수정 신고 기한

- 수정 신고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를 납세자가 자진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재신고하는 제도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수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결손금이 증가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하는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동 법 제8조 제1a항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2년전 까지로 제한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수정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이해하면 됨.

□ 수정 신고에 따른 가산세

- 수정 신고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과 이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이후에 수정 신고가 가능함.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과 제2a항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산세는 소득세의 경우 당초 신고일로부터 수정 신고일 까지의 기간동안 월 2%의 가산세가 적용됨. 이때 1개월을 초과하는 날은 1개월로 간주함.
 - 원천징수에 대한 수정 신고 가산세는 당초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추가 납부세액을 자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월2%의 가산세가 적용됨. 이때에도 1개월을 초과하는 날은 1개월로 간주함.

□ 부적절 신고제도

- 국세기본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부적절 신고제도를 다루고 있음
수정신고가 세무조사 이전(세무조사 통지서의 송달일)까지만 가능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신고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부적절 신고 기한
 - 세무조사 통지서가 송달되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당초 신고서의 오류를 납세자가 자진하여 과세당국에 신고(부적절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부적절 신고는 세무조사의 결과물은 세액 확정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SKP')가 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부적절 신고에 따른 과태료
 - 부적절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의 부적절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함. 납부는 부적절 신고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심각한 불성실이 적발되어 조세 사건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건의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자진하여 부적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추가 납부세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함.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음.

3

납부 의무



가. 개요

- 납세자는 신고한 세액을 반드시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 의무를 짐. 이러한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9조에서 부터 제12조 까지 다루고 있음

나. 납부 기한과 지연 납부 가산세

- 1) 납부는 반드시 법과 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됨.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음
- 2) 납부 기한
 - 국세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납부 기한을 규정함. 법이 정한 납부 기한은 연소득세 신고는 신고 전까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각 세목별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음.

<세목별 납부 기한>

구 분	납 부 기 한
연 법인소득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
연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전
부가가치세와 사치품소비세	신고 기한(익월 말일) 이전
원천징수*	익월 10일
월선납법인세(소득세법 제25조)	익월 15일

- 소득세법 제4조 제2항과 동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의미함.

- 신고 기한 이전으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 실무적으로 납부한 날 즉시 신고할 수 있음
- 또한 국세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에 따른 세액 징수 통지서(Surat Tagihan Pajak, 'STP'), 과소납부 세액 확정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SKPKB'),
- 추가 과소납부세액 확정 통지(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 'SKPKBT') 및 수정 결정(Decision on rectification), 이의 제기(Keberatan, 또는 Objection)결정,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나 결정문이 발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이러한 납부기한은 국세기본법 제9조 제3a항에 따라 소규모사업자 또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2개월 연장이 가능함.

3) 지연 납부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9조 제2a항과 제2b항에 따라, 납부 기한 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납부 의무가 추가로 부과됨.
 - 이러한 지연 납부 가산세는 연 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월 2%의 가산세가 부과됨.
 -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 기한의 종료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월 2%의 가산세가 부과됨. 기간의 계산은 역에 따르며, 이 경우에도 1일은 1개월로보는 '1 day 1 month rule'이 적용됨.

4) 납부 기한의 연장

- 국세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납세자는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승인할 수 있음 신고 납부세액의 납부 기한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며, 고지 납부세액도 동일하게 징수 유예 승인을 받을 수 있음

5) 납부 기한 연장의 신청

- 납부 기한의 연장은 다음과 같이 신청함.
- 납부 기한의 9영업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단, 불가항력이 사유인 경우는 제외
- 연장 신청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첨부할 것
-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할 것

6) 납부 기한 연장의 승인

- 납부 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세당국은 7영업일 이내에 승인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문을 발행 하여야 함. 결정문이 발행 되지 않은 경우,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 결정은 납세자의 상황과 금액 및 기간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모두 수용할 수도 있고 일부 수용 또는 각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또한 이미 연장 신청이 승인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음.

다. 납부의 방법과 상계요청

□ 납부

- 국세기본법 제10조는 납부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세금의 납부는 국고은행에 납부양식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납부서(Surat Setoran Pajak, 'SSP')'라고 불림. 세금을 납부한 납부서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이렇게 일련번호가 부여된 납부서 원본은 가장 중요한 납부 증빙이 됨.

□ 상계요청

- 국세기본법 17조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납세자가 제17C조 또는 17D조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때에, 납세자는 다른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의 상계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계요청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반드시 납세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상계할 세액의 원본 납부서
- ▷ 상계되어야 할 세액의 납부서와 신고서 사본
- ▷ 타인명의 납부세액인 경우, 해당 납부액의 상계처리에 대하여 당초 납부서에 명의를 기재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상계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확인서
- ▷ 상계요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납부할 세액을 상계처리하여야 함. 1개월 이내에 상계처리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월 2%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VII

소득세법

1. 개요	94
2.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과세 대상 소득	99
3. 손금 산입과 손금 불산입	106
4. 원천징수	119
5.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131
6. 신고와 납부	136
7. 기타 중요한 주제	142
8. 개인 소득세	149



1 개요



가.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의 연혁과 특징

-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의 특징은 한국 세법 + 원천징수 및 선납 중심의 운영, 법 상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의 구분이 없음, 국제 조세 포함(특수 관계자 거래)
- 순자산 증가 원칙과 포괄 주의
 - GR 94/2010 제 9조제1항. 수익과 비용은 인도네시아 재무회계 기준을 따름.
 - 2항 사업 연관성의 대원칙

나. 납세의무자

□ 개요

-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 2조 제 1항은 다음에 납세 의무를 부과 하고 있음

- 개인과 상속인
 - 법인
 -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 상속인과 고정사업장을 언급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여기에서 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영위 하고 있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 되지 않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임.
- 법인은 사람 또는 자본의 집합체로, 사업을 영위 하는지 여부 와는 무관함.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PT') · 합명/합자회사(Perseroan Komanditer) · 조합 · 사단법인 · 공제회 등 형태를 불문하고. 국영 기업 또한 법인의 범위에 포함함.

- 고정사업장은 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소득세법 제 2조 제1A항에 따라 법인인 납세자와 동일한 세무 상 의무를 부여받는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인 납세자(Resident tax subject, 이하 ‘거주자’)와 외국인 납세자(Foreign tax subject, 이하 ‘비거주자’)로 나뉜다.

1) 거주자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이 정의하는 거주자는 다음과 같음

- 개인 :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 하거나, 또는 과세 기간에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자
- 법인 : 인도네시아에 설립 되었거나 주소를 둔 모든 법인.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부기관은 제외
- 상속인

- 상속인은 법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됨. 현금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지만,

-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사업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됨. 법인 중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 기관의 요건은,

- i)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설립 되었고,
- ii)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입 지출 예산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며,
- iii) 수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 iv) 장부가 정부 감사기관에 의해 감사받을것임.

- 개인은 면세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 때에 납세 의무자가 되며, 법인은 설립된 때 또는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때부터 즉시 납세 의무자가 됨.

2) 비거주자

- 소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 미만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과, 인도네시아에 설립 되지 않았고 주소가 없는 법인임.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수취한 때에 납세의무자가 됨.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비교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와 신고 의무 등에서 세법 상 다른 대우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로 정리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비교>

구 분	거 주 자	비거주자
과세대상 소득	인도네시아 내 외의 모든소득	인도네시아 원천소득
신고 의무	연소득세 신고 의무 부과	주로 원천징수를 통해 신고납부
과세표준 과세율	순이익(Net income)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	총소득(Gross income)에 대하여 소득 구분별 특정 세율적용

- 가장 중요한 차이는 거주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외에서 수취한 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 됨.

-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후술 하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음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대부분의 경우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 징수 의무가 부과됨.
- 따라서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연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 그러나, 고정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는 거주자인 법인과 유사한 신고 납부의무가 부과됨.



- 소득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은 실질에 의함이고 규정함
- 따라서 형식적인 근거보다는 실질에 의거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실제로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 거주자 여부에 대하여 반대의 증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고정 사업장

- 고정 사업장은 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음 소득세법 제 2조 제 5항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예시로 열거하고 있음

- 경영진의 주소지, 지점(Branch), 대표 사무소(Representitive Office), 상건물
- 공장, 작업장, 창고, 판매장, 광물채굴장소, 원유와천연가스채굴장소, 어업·축산업·농업·플랜테이션·조립사업지
- 건설·설치·조립프로젝트수행지, 12개월의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곳
- 독립적인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
- 외국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인이나 대표 사무소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보험프리미엄 등의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장소나 개인
- 컴퓨터나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업 목적의 전자 상거래를 하는 경우 그 장소

- 고정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인 개인과 법인 모두 고정 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음이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이하 ‘한·인니조세협약’]은 제 5조에서 기업(법인)만이 고정 사업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

- 한·인니조세협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8절에서 다룬다.

- 많은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에이전트나 중개인을 통해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세법은 이러한 에이전트나 중개인이 외국 기업에 종속되어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에이전트나 중개인이라는 사실 만으로 고정 사업장이 있음이고 간주할 수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외국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인이나 대표 사무소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보험 프리미엄 등의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납세 의무가 없는 외국단체 등

- 소득세법 제 3조는 납세 의무가 없는 외국 단체 등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음 다음에서 설명하는 외교기관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음

- 다른 국가의 대표부(Representative office)
- 외교관과 영사관 및 외국 공관에서 일하는자로 인도네시아 국적이 아니며 해당 업무 이외의 다른 직업 소득이 없는 자(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 인도네시아가 가입 되어 있으며 사업 활동이나 수익 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국제기구로, 재무부령의 결정에 따름
- 상기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자로, 인도네시아 국적이 아니며 다른 소득을 얻기 위해 사업활동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다. 과세기간

- 소득세법 제 1조에 따른 과세 기간은 ‘사업연도(fiscal year)’임
 - 사업연도는 1역년(1월1일로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기간)을 의미함. 납세자는 ‘회계연도(accounting year 또는 financial year)’가 1역년과 다른 경우, 회계연도를 과세 기간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이때의 회계연도는 반드시 12개월 이어야 함.
 - 따라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연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함. 그러나, 직전 사업 연도 과세소득에 근거한 월 할 납 법인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부과되며, 원천징수 되는 세목 역시 매 월 신고 납부의무가 부과됨.

라. 장부의 기장과 외화환산

- 장부의 기장에 대한 의무는 국세기본법 28조에서 다루고 있음 다만, 소득세법에 대한 정부령 No. GR94/2010은 추가적으로 장부가 인도네시아 재무회계 기준(PSAK)에 따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기 정부령 제9조는 수익과 비용은 유효한 인도네시아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세법과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회계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됨.

2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과세 대상 소득



가. 과세대상소득

- 소득세법 제 4조는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중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한국과 동일하게 ‘순자산증가’의 원칙과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동 법 제4조 제1항은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Economic capacity)’을 증가 시키는 모든 종류의 소득이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근로나 용역 제공의 대가

- 근로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대가로, 급여·임금·보조금·보상금·커미션·보너스·연금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

□ 상금 및 경품

- 복권 당첨금, 스포츠 경기에서 받는 상금, 고고학 유물의 발견과 관련하여 얻는 보상금 등

□ 사업 소득

□ 자산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소득으로 다음의 것

- 회사, 파트너십 및 다른 형태의 법인에 자산을 이전하고 주식이나 지분 참여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
- 회사, 파트너십 및 다른 형태의 법인이 가득한 자산을 주주, 파트너 혹은 다른 참여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얻는 이익
- 청산·합병·결합·사업확장·분할·사업양수도 또는 사업형태 변경 등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이러한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
-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사업적관계·소유관계 또는 지배관계가 없이 자산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증여(Hibah)·기부(Bantuan)·원조(Sumbangan)에 따른 이익으로, 다음을 제외함 : 일촌 이내의 가족 간의 이전; 종교법인이나 교육단체·사회단체 또는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이전

□ 광업권(Hak Penambangan)

- 광업권이나 광업 회사에 대한 재무적 참여권 또는 참여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이전함에 따른 이익
- 소득세법 해설은 이러한 자산매각 등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매각 대가 (또는 시장가격)가 취득가액(또는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등의 형태와 대가의 구분에 관계 없이 이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겠다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음

□ 기비용 처리된 세금의 환급금

□ 이자수익으로 프리미엄·할인액·지급보증 수수료를 포함함

□ 형태와 명칭을 불문한 배당으로 다음을 포함함 :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얻는 배당금; 조합의 이익 분배금

○ 소득세법이 예시하고 있는 배당으로 보는 것들

- 형태와 명칭을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의 배분금액
- 청산 시, 납입 자본을 초과하여 얻는 청산 대가
-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 전입을 제외한, 대가 없는 주식의 분여
- 주식 배당
- 대가를 수반하지 않은 증자
- 주식 상환에 따라 주주가 얻는 이익으로 납입 자본을 초과하는 금액
- 법적인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르지 않은, 이익 소각에 따른 배당
- 중간 배당
- 보험 계약자가 수령하는 이익 분배금
- 채권 소유자가 수령하는 이익 분배금
- 조합원이 수령하는 이익 분배금
-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된 주주의 사적 사용 금액

□ 권리의 사용에 따른 로열티나 사용료

○ 다음의 권리 사용에 대하여 지급 받거나 지급 받을 총 금액으로, 지급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는 무관함.

- 문학·예술분야의 저작권, 과학적 결과물, 특허, 디자인, 모델, 공식, 공정, 상표, 지적/산업 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 산업·상업·과학적 방법론
- 과학·기술·산업·상업 분야의 지식과 정보

□ 자산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와 이와 유사한 수익

- 이름과 형식에 불구하고 동산이나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얻는 모든 종류의 수익으로, 자동차 렌트·사무실임대·주택임대 등을 포함함.



□ 특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부조와 보조금

- 퇴직 공무원 연금과 같이 종신 또는 특정기간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함.

□ 채무면제 이익

- 채권자에 의해 면제된 채무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이며, 채권자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정부령이 정하는 소액 채권에 대한 면제, 예를 들어 영세 사업자 대출(Kukesra) · 농업 자금 대출(KUT) · 서민 자금 대출(KU) 등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외환 관련 이익

- 인도네시아 재무회계 기준(PSAK)에 따라 인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함. 이와 반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은 비용으로 인정함.

□ 자산 재평가 차익

- 재무부장관(The Minister of Finance)의 승인을 받아 자산의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재평가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재평가 대상과 적용세율은 별도의 재무부장관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7절에서 후술함.

□ 보험 프리미엄

- 보험 프리미엄은 재보험 프리미엄을 포함함.

□ 사업 또는 자유 직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로 이루어진 조직이 수령하는 지원금

-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통한 부의 증가
- 샤리아(Syariah)에 따른 사업소득; 부가가치세법 **참조
- 국제 기본법이 규정하는 이자 보상
- 중앙은행(Bank Indonesia)의 잉여금

나.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음.
- 사업상·업무상·소유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기부·증여·원조의 형태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
 -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개인이나 단체가 수령하는 원조·기부 및 종교적 의무로서의 종교 기금 또는 현금
 - 직계 1촌 내의 가족으로부터 증여
 - 수익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종교적 의무와 종교 행사만을 관장하는 종교 단체가 받는 재산 상 의 증여·원조·기부
 - 수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사회 공헌활동만을 하는 단체(사단법인과 조합 등을 포함)가 받는 재산 상 의 증여·원조·기부, 사회 공헌활동이란 보건의·노인보호·자연재해 지원·고아 장애아동 등의 보호·장학금 수여·자연 보호 활동 등을 의미함.
 -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받는 재산 상 의 증여·원조·기부, 소규모 사업이란 토지·건물을 제외한 순자산이 Rp. 50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연간 총 매출액이 Rp. 2,50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의미함.

□ 유산

- 분할되어 상속인에게 배부되는 현금,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한 사업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자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됨.

□ 현물출자로 인한 차익,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 매매시 시가와의 차익,

□ 납세자나 정부로부터 받는 편의로, 근로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

- 납세자가 아닌 자나 소득세법 제15조가 정하는 인정이익(deemed profit) 과세를 받는 납세자로부터 받는 것은 과세 대상임.

□ 보험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 건강보험 · 상해보험 · 종합보험 · 교육보험 등을 포함함.
 - 다만, 납부한 해당보험료가 개인소득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 납세자인 주식 회사 · 조합 · 국영 기업이 인도네시아 내에 설립하고 소재하는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또는 이익 배분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

- 배당은 이익 잉여금 처분에 의한 것일 것
- 배당을 수령하는 회사 등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금펀드(Dana Pensiun)에 지불하는 출연금

- 위에서 규정한 연금펀드가 출자한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
-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합명·합자회사 등의 유한 책임 사원이 수령하는 이익 분배금
- 벤처 캐피탈 회사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소재 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익 분배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중소 규모의 기업 또는 재무부령에 따른 특정 분야의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 주식이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기업(비상장 법인)
-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령이 위임한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장학금
- 비영리 단체 또는 교육·연구 기관이 수취하는 이익. 관련 분야의 단체에 등록된 기관에 한하며, 해당 이익이 발생한 때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연구 개발 분야에 기자재나 기반 시설 등의 형태로 재투자 되는 것에 한함.
- BPJS(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Operating Board)에서 자연재해를 입은 저소득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원조나 기부

3 손금 산입과 손금 불산입

가. 손금산입

- 거주자인 납세자와 고정 사업장의 과세 대상 소득은 총 수익에서 관련 비용(필요경비)을 차감하여 결정하며, 소득세법 제6조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열거 하고 있음

□ 사업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다음의 것들

- 1) 재료비
 - 2) 임금, 급여, 보너스 등 금전으로 지불하는 근로와 용역의 대가
 - 3) 이자, 임대료 및 로열티
 - 4) 여비
 - 5) 폐기물 처리 비용
 - 6) 납입 보험료
 - 7) 재무부령이 정하는 광고 선전비
- 재무부령 No.02/PMK.03/2010 은 광고 선전의 손금 산입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제 가능한 광고 선전비
 - ▷ 미디어나 매체에 지불한 광고비
 - ▷ 제품 전시회 관련 비용
 - ▷ 신제품 소개비
 - ▷ 제품 홍보를 위한 스폰서 비용
- 공제 불가능한 광고 선전비
 - ▷ 광고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출된 비용과 편의 제공
 - ▷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최종 분리 과세되는 소득을 목적으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



- 광고 선전비 지출 명단 작성 의무
 - 공제 가능한 광고 선전비를 지출한 납세자는 광고 선전비 지출 명단 (Daftar Nominatif atas Pengeluaran Biaya Promosi)을 작성하여야 함. 명단에는 성명, 납세자 번호(NPWP), 주소, 날짜, 비용의 형태와 종류, 비용 총액, 원천징수 영수증 번호와 원천징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지출 명단의 양식은 상기 규정 별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세 신고 시 동 별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8) 일반 관리비

9) 소득세를 제외한 조세

- 소득세를 제외한 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포함하며, 재산세(PBB)와 식당세(PBI) 등이 포함됨. 다만, 해당 조세 납부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감가상각비

- 내용 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1조는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제12조는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후술함.

□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연금펀드에 납부하는 기여금

-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유하던 자산의 이전이나 매각 손실

□ 외환 관련 손실

- 인도네시아 재무회계 기준(PSAK)에 따라 인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됨.

□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는 회사의 연구 개발 비용

□ 교육 훈련비

□ 대손 상각비

- 실제 대손이 발생한 금액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손익 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 되어야 함
- 결산 상 대손상각비가 반영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음
- 신고 조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다만, 회사가 당기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 함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익 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회수 불능 채권 목록의 제출
 - 납세자는 반드시 국세청에 회수 불능 채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 해진 것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채권 추심 업무가 법원이나 해당 정부 부처로 이관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 면제 / 채권 포기에 관한 서면약정이 있을 것
- 일반 또는 특정 발행물에 공표 되었을 것
- 채권자가 특정 금액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인정할 것

- 다만,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소액 채권에 대하여는 3)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령에 따른 국가 재난 방지 목적의 기부
- 정부령에 따른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개발 목적의 기부
- 정부령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개발 목적의 투자
- 정부령에 따른 교육시설 지원 목적의 기부
- 정부령에 따른 체육시설 건설 목적의 기부

나. 손금 불산입

-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은 손금 불산입 되는 비용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손금 불산입 비용으로 당연히 조정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회사의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나 개인적 목적의 경비 등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 배당
 - 형식과 명칭에 불구하고, 배당과 같이 이익을 분여 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조합의 이익 분배도 동일함.
- 주주·파트너·임직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
 - 소득세법 해설은 사택의 수리 비용이나 사적 여행 경비, 주주나 그 가족의 이해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를 예시로 들고 있음
- 충당금 설정액
 - 충당금 설정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함.

1) 금융기관의 대손 충당금

- 은행·신용 공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리스회사·소비 금융회사와 팩토링 회사의 대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은 손금으로 인정함.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도록 함.

2) 보험회사의 충당금

- BPJS(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Operating Board)가 조성한 사회 보장을 위한 충당금을 포함함.

3) 예금 보험 기관의 충당금

4) 광업 회사의 복구 충당금

- 광업 회사의 경우, 광산 개발을 위해 산림 벌목 등 지역 환경을 훼손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이에 대하여 에너지 광물자원부 정부령 GR No.78/2010 에서 광업 회사에 복구 비용의 부담 의무를 지우고 있음
 - 이를 목적으로 복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음
 - 이러한 복구 충당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됨. 다만, 적립금의 적립은 상업 생산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비용으로 인정됨.

5) 조립 회사의 재투자 적립금

6) 산업 폐기물 처리회사의 처리장 폐쇄 및 복구 관련 충당금

□ 납세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 납세자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또한 개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다만, 고용주가 개인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급여로 처리하여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고용주의 비용으로 인정됨.

□ 복리 후생비(BIK, Benefit in Kind)

- 원칙적으로 현물급여, 편의제공과 같은 비 현금적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소득으로도 간주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비 현금적 급여라 할지라도 손금에 산입 가능함.

-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음식료
- 산간 벽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관련하여 동 지역에서 지급하는 근로자 용역 제공의 대가(허가 필요)
- 안전 목적이거나 작업 수행의 특성 상 필요한 물품의 제공, 예를 들어 안전복·안전장비·작업장 유니폼·선박 승무원의 숙박제공 등

□ 부당행위 계산 부인

- 주주 또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이외에도 소득세법 제18조에서는 과세 당국이 거래의 성격이나 금액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후술 하도록 함.

□ 기부금

- 기부·증여·원조 등으로 무상이전 되는 자산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정부령에 따른 다음의 기부는 손금으로 인정함.

- 국가 재난 상태에 대한 기부
- 인도네시아 내의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한 기부
-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기부
- 교육시설을 위한 기부
- 체육시설을 위한 기부
- 정부에서 인정한 이슬람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나 종교 헌금



□ 소득세

- 소득세는 손금불산입 비용임. 소득세법 제22조(PPh 22), 제23조(PPh 23) 및 제25조(PPh 25)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함.

□ 무한 책임 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 자본이 주식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파트너십, 회사 또는 유한 파트너십의 무한 책임 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배당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가산세와 가산금

- 이자나 벌금 형식의 행정제재에 따른 가산세 및 조세 분야의 법률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 감가상각비

-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 연수에 걸쳐 비용을 배부하여 인식함.
 - 인도네시아의 감가상각규정은 대체로 한국과 유사함.

□ 유형 자산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제11조에서는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상각대상 : 소득세법 제 11조 제1항



-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유형 자산의 구매, 건설, 증설, 수선 및 개조와 관련된 비용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함.
- 다만, 소유권(Hak Milik) · 건축권(Hak Guna Bangunan, HGB) · 경작권(Hak Guna Usaha, HGU) · 사용권(Hak Pakai)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토지는 상각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소득세법 해설에서는 토지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토지의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로 기와 · 시멘트 · 벽돌 제조회사를 예로 들고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2) 감가상각 방법 : 소득세법 제 11조 제2항

-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인정하고 있음
- 다만, 건물에 대하여는 정액법만을 인정하고 있음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에 잔액 상각하여 잔존가치가 없도록 적용함.

3) 감가상각 개시 : 소득세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 감가상각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을 위해 지출이 이루어진 월부터 시작함.
- 건설중인 자산은 건설이 완료된 월에 감가상각을 개시함. 다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월 또는 생산을 시작한 월에 감가상각을 개시할 수 있음 국세청규정No.PER-10/PJ/2014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승인대상 자산 : 유형자산으로 조립 등 일부산업은 제외
- 승인신청 시기 : 지출이 이루어진 과세연도 또는 건설이 완료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점(head office) 소재지 세무서에 신청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납세자가 신청서의 미비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신청서가 완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직권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내용연수 : 소득세법 제11조 제6항

- 유형 자산 구분 별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다음과 같음.

<내용연수와 상각률>

구 분	내용연수	정액법 상각률	정률법 상각률
Group 1	4년	25%	50%
Group 2	8년	12.5%	25%
Group 3	16년	6.25%	12.5%
Group 4	20년	5%	10%
상설 건물	20년	5%	-
비상설 건물	10년	10%	-

- 유형 자산의 Group 별 세부 구분은 재무부령(MoFregulation No. 96/PMK.03/2009)에 규정되어 있으며, 오일·가스산업 자산의 세부 자산별 감가상각율 역시 재무부 장관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 특정 산업(예를 들어, 조림, 플랜테이션 및 목축업)에 사용되는 자산이나 경제발전 통합지구(KAPETs) 내에서 사용되는 자산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 다음은 상기 재무부령의 Group 별 해당 자산 예시 임.

<Group별 예시>

구 분	자 산 예 시
Group 1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가구 및 목재 비품, 사무실 비품, 오토바이, 특수 산업·서비스용 특수 공기구, 주방 기구, 농임어업용 수작업 공구, 음식료산업용 경량 기계, 공공 운송업용 차량, 반도체 산업용 공구, 심해정박장비 렌탈용 기구 비품,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
Group 2	금속가구 및 기구, 에어컨, 승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 보트, 컨테이너류, 농임어업용·식료품용 기계, 경량 기계, 벌목 기구, 건축용 도구, 운송·창고용 중장비, 통신 공구, 반도체 산업용 공구, 심해정박장비 렌탈용 기구 비품, 휴대전화 서비스용 공구
Group 3	일반 광산업용 기계(석유가스 제외), 봉제·목재·화학공장·기계제작 사업용 기계, 운송·통신용 중장비, 부두설비 및 선박, 기타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Group 4	건설용 중장비 기계, 기관차, 철도 운송도구, 대형선박, 부두



5) 특정 사업에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의 내용연수

- 재무부령 No.126/PMK.011/2012는 조림, 플랜테이션 및 목축업과 같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를 사업별로 일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별 내용연수>

구 분	Group	내용연수
조림(Forestry)	Group 4	20년
플랜테이션(Plantation)	Group 4	20년
목축업(Cattle Breeding)	Group 2	8년

- 예를 들어, 조림 사업에 사용하는 상각 대상 유형 자산은 모두 Group 4로 분류 되어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 다만, 국세청규정 No. PER-21/PJ/2012에 따라 과세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각 자산의 실제 내용연수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관련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
- ▷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 추정에 대한 검토 결과
-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위임장
- ▷ 신청을 받은 과세 당국은 신청서와 상기 첨부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무형 자산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제11A조에서는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각대상

-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무형 자산으로, 영업권과 토지이용권(건축권, 경작권, 사용권) 연장 비용을 포함함.

2) 감가상각 방법

-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과 광업권·조림권·기타 천연자원 개발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여야 함.

3) 감가상각의 개시

-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월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함.

4) 내용연수

- 무형 자산 구분별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다음과 같음.

<내용연수와 상각률>

구 분	내용연수	정액법 상각률	정률법 상각률
Group 1	4년	25%	50%
Group 2	8년	12.5%	25%
Group 3	16년	6.25%	12.5%
Group 4	20년	5%	10%

- 무형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각 Group별 내용연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가까운 내용연수를 적용함.

- 만일 취득한 무형 자산의 내용연수가 7년인 경우, Group 2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면 됨.
- 만일 내용연수가 6년으로 Group 1과 2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음

5) 기타 고려사항

- 광업권·조림권·기타 천연자원 개발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되 연간 상각비가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업 생산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비용 역시 자본화하고 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음



라.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손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금융 기관의 대손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은행의 대손 충당금
 - 은행의 회수의 문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채권 구분별 대손 충당금 설정률>

채권 구분	대손 충당금 설정률
중앙 은행(BI) 채권과 국채 및 회수 원활 등급의 채권	채권 금액의 1%
주의를 요하는 채권	담보 설정 금액을 차감한 채권 잔액의 5%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채권	담보 설정 금액을 차감한 채권 잔액의 25%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	담보 설정 금액을 차감한 채권 잔액의 50%
회수 불가능 채권	담보 설정 금액을 차감한 채권 잔액의 100%

마.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

- 소득세법 제18조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 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수 관계자 거래

- 소득세법 제18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은 납세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 상대방을 납세자의 특수 관계자로 간주함.

-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보유한 경우; 2개 이상의 동일한 피투자 회사에 각각 2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간의 관계 및 해당 피투자 회사들 간의 관계

- 직간접적으로,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한 통제 하에 있는 경우
- 배우자 및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과 제3a항에서 과세 당국이 정상 가격의 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직권으로 과세 수익과 손금 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파생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문제는 최근 인도네시아 과세 환경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이슈임

□ 과소 자본 세제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은 세무상 적정한 부채비율(Debt to equity ratio)을 재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나, 아직 관련 구체적인 재무부 장관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배당 지급시기 의제

-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보유한 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 지급시기를 의제할 수 있음
 - 따라서 거주자가 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배당금을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특정한 경우 과세 관청의 판단에 따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거주자가 해당 외국 소재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외국 소재 법인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제3자 또는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한 거래의 부인 : 소득세법 제18조 제3b항

- 납세자가 특수 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특수 목적 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을 통하여 주식 또는 자산의 매입거래가 있고,
 - 이러한 거래가 정상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주식 또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조세 피난처를 통한 거래의 부인 : 소득세법 제18조 제3c항

-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설립된 도관 회사(Conduit company) 또는 특수 목적 법인(SPC)이 인도네시아 소재의 법인 또는 고정 사업장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 이러한 도관 회사 또는 특수 목적 법인의 주식 매각 또는 양도는 인도네시아 소재의 법인 또는 고정 사업장이 직접 매각 또는 양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4

원천징수



가. 개요

- 원천징수는 거래 단계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래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급여 원천징수(소득세법 제 21조, ‘PPh 21’)와 같이 종업원을 대신하여 회사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을 포함함.

-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원천징수 제도는 최종 분리 과세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제 4조 제2항, ‘PPh 4(2)'), 소득세의 선납 성격으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제22조와 23조, ‘PPh 22’ 및 ‘PPh 23’)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 26조, ‘PPh 26’)가 있음
- 급여 원천징수는 제9절에서 다루며, 본절 에서는 급여를 제외한 다른 원천징수에 대하여 소개함.

<원천징수의 종류>

구 분	설 명
소득세법 제21조(PPh 21)	종업원 급여 지급에 대한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2조(PPh 22)	수입 등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3조(PPh 23)	특정 국내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6조(PPh 26)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PPh 4(2))	특정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최종 분리 과세성격

- 기납부세액을 구성하는 원천징수 : PPh 22와 PPh 23
- 소득세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는 세액은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연말 법인세 신고 시기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됨. 따라서 해당 세액은 소득세의 선납 성격으로 이해하면 됨.

□ 소득세법 제22조(PPh 22) : 수입 등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22조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입 행위 혹은 특정 영업 행위를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또는 사치품 소비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음이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대하여 재무부령 No.224/PMK.011/2012(구 재무부령 No.154/PMK.03/2010 의 개정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PPh 22>

1	수입 라이선스(Angka Pengenal Impor/API)를 통한 수입 : 특정 최종 소비재 콩, 밀, 밀가루 (a)와(b) 이외의 재화	7.5 0.5 2.5	수입가격 (i.e., CIF 가격 + 관세)	
2	수입 라이선스(API)를 통하지 않은 수입	7.5	수입가격(i.e., CIF 가격 + 관세)	
3	경매 수입품	7.5	경매 가격	
4	정부에 대한 재화의 판매로, 국고나 대행 기관 (Kuasa Pengguna Anggaran/KPA)이 지급하는 경우	1.5	판매 가격	1
5	정부 소유기업(Badan Usaha Milik Negara/BUMN)에 대한 재화의 판매	1.5	판매 가격	1
6	정부 소유 주유소의 유류 구매	0.25	판매 가격	2
7	민간 주유소의 유류 구매	0.3	판매 가격	2
8	정부 및 민간 주유소가 아닌 유류 구매	0.3	판매 가격	2
9	가스 연료 구매	0.3	판매 가격	2
10	윤활유 구매	0.3	판매 가격	2
11	로컬 유통 업체의 시멘트 구매	0.25	판매 가격	
12	로컬 유통 업체의 종이제품 구매	0.1	판매 가격	
13	로컬 유통 업체의 철강제품 구매	0.3	판매 가격	
14	로컬 유통 업체의 자동차제품 구매	0.45	판매 가격	
15	로컬 유통 업체의 의약제품 구매	0.3	판매 가격	
16	독점 에이전트(Agen Tunggal Pemegang Merek/ATPM), 에이전트 일반 수입자로부터 오토바이 구매	0.45	판매 가격	3
17	조림, 플랜테이션,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도매업자로 부터 원자재 구매	0.25	판매 가격	
18	고급 사치품 구매	5	판매 가격	

□ 소득세법 23조(PPh 23) : 특정 국내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 23조는 거주자인 납세자 또는 고정 사업장에게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생긴 때에, 지급하는 자가 지급 총액의 일정 비율(15% 또는 2%)로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원천징수 대상>

- 15% 원천징수 대상
 - 배당, 프리미엄·디스카운트·보증 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로열티, 포상금 및 상금
- 2% 원천징수 대상
 -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의 임대, 기술 서비스, 경영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 감정 평가 서비스, 계리 서비스, 회계, 장부 기장 및 증명 서비스
 - 설계 서비스, 석유 및 가스 시추 서비스(고정 사업장이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석유 및 가스 시추 관련 지원 서비스, 석유 및 가스 이외의 광산 서비스
 - 항공 운송 및 공항 서비스, 산림 채벌 서비스, 폐기물 처리 서비스
 - 인력 공급/아웃소싱 서비스, 중개/에이전시 서비스, 증권거래 및 예탁 서비스(stock exchanges, KSEI and KPEI 제외)
 - 사운드 더빙 서비스, 필름 믹싱 서비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설치 용역 서비스(예를 들어, 전기, 기계 또는 통신장비). 단, 허가받은 건설회사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 유지 보수 서비스(예를 들어, 전기, 기계 또는 통신장비). 단, 허가받은 건설회사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위탁 제조 서비스(maklon), 검사 및 보안 서비스
 - 이벤트 제공 서비스, 포장 서비스, 대중 매체, 옥외 광고 매체 및 기타 매체에 정보 송출을 위해 장소 또는 시간 제공
 - 해충 구제 서비스, 청소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



□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정리

- 배당 소득에 대하여, 지분을 및 소득 수취인의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세법 규정이 적용됨. 이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배당 수취인		원천징수 세율	관련 근거	주
거주자	25% 이상 지분 보유 법인	비과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절 2. 비과세 소득 참조)	
	25% 미만 지분 보유 법인	15%	소득세법 제23조	1
	개 인	10%	소득세법 제17조	1
비거주자		20%	소득세법 제26조	2

- 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5%)는 기납부세액을 구성하므로, 배당을 과세 소득에 넣어 법인세를 계산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개인인 경우 10%의 세율로 최종 분리 과세하므로 추가적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조세 협약에 따라 세율이 경감될 수 있으며, 현행 한·인니 조세협약에 따른 배당 원천징수 세율은 10%임

□ 최종 분리 과세되는 원천징수 : PPh 4(2)

-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은 최종 분리 과세되는 원천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거주자인 회사·고정 사업장·외국 회사의 대표 사무소와 단체 및 지정된 개인은 거주자인 납세자와 고정 사업장에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 최종 분리 과세의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이렇게 원천징수된 부분은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로 납부의무가 종결됨.



1)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최종 분리 과세 원천징수

-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거래와 세율은 다음과 같음.

<PPH4>

구 분	세 율
토지 건물 임대	10%
토지 건물 권리 이전에 따른 대가	5%
건설 시공 대가	2/3/4%
건설 설계 대가	4/6%
건설 감리 대가	4/6%
예적금 이자와 중앙은행 예금증서(Bank Indonesia Certificates, 'SBIs')에 대한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은행이나 정부 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20%
채권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은행이나 정부 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15%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에서의 주식 매각. 창업주(Founder)는 상장시 시장 가격의 0.5%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시 차익에 대하여 일반 과세 규정을 적용(조세 협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	0.1%
복권 당첨금	25%
연간 매출액이 Rp 4.8 billion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의 특정소득(단, 고정 사업장은 해당되지 아니함)	1%

- 채권이자 중, 수령인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toritas Jasa Keuangan/OJK)에 등록된 뮤추얼펀드인 경우 2020년 까지는 5%를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10%를 적용함.
 - 다만, 수령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26조에 따라 20%를 적용하며 조세 협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음
 - 연간 매출액이 Rp. 4.8 billion 이하인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 2013년 발표된 정부령 No.46/2013에 따라 1%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되며, 이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중소기업에 대한 1% 최종 분리 과세

- 정부령 No.46/2013은 연간 매출액이 Rp. 4.8 billion(이하, ‘기준 매출액’) 이하인 개인과 법인(고정 사업장 제외)의 사업 소득(근로 소득과 자본 소득 등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매출액의 1%의 최종 분리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세액은 납세자가 직접 인도네시아 과세 관청에 계산, 납부 및 보고 하여야 함.
- 다만, 연간 매출액이 기준 매출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 개인인 경우, 영업이나 거래를 하도록 의도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며 해당 시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 ▷ 법인인 경우, 상업 생산 시작 이전의 회사로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매출액이 해당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 다른 최종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변호사·회계사·보험 중개인 등 프리랜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연간 매출액은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 하며, 직전 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연도 중 매출액이 기준 매출액을 초과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계속하여 1% 최종 분리 과세를 적용하며 다음 연도부터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됨.
- 또한 최종 분리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월 결손금의 이월 공제가 허용 되지 아니함.

□ 부동산 매각에 대한 소득세 과세

- 토지와 건물의 이전이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는 양도 차익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매도자에게 이전/판매에 대한 인정이익(deemed gain)에 대하여 과세함.

- 소득세는 총 이전 대가(과세 표준)에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단순 주택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됨.
- 세금은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매수자에게 이전 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관련 공증 문서에 따른 실거래 금액에 기초한 거래 가치(실제 양도가액)와 부동산 과세 적용가액(NJOP) 중 큰 금액임.
- 그러나, 정부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 표준은 해당 정부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수행하는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공증인은 해당 소득세가 완전히 납부되기 전까지 권리 이전 공증 문서에 서명할 수 없음. 따라서 실무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따른 간주 양도 소득세 5%가 납부되기 이전에는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임.

□ 국외 지급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PPh 26

-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인 납세자·단체 및 외국 회사의 대표 사무소는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 다만, 해당 소득을 수취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ry Owner)가 인도네시아와 조세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한·인니 조세협약에 대한 설명과 적용에 대하여는 제8절 국제 조세를 참고하면 됨.

1) 지급 총액의 20% 과세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은 지급 총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다음의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20%의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됨.

- 배당;
- 프리미엄 · 디스카운트 · 보증 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임차료 및 자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 서비스,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수수료;
- 상금 및 포상금;
- 연금과 다른 정기적 지급;
- 스왑 프리미엄과 다른 헤지 거래;
- 채무 면제 이익

□지점 또는 고정 사업장의 세후 이익

○ 소득세법 제26조 제4항은 지점(지사) 또는 고정 사업장의 세후 이익에 대하여 20%의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납세 의무는 지점 또는 고정 사업장이 직접 계산하여 신고 · 납부 하여야 함. 건설업 지사가 대표적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당사자이며,
- 예외적으로, 지점 또는 고정 사업장의 이윤이 재투자 되는 경우 이러한 납세 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재투자 형식

- 인도네시아에 신규 설립하는 회사에 지분 참여를 통해 설립자가 되거나 또는 설립자로 참여하는 경우
- 지분 참여를 통해 기설립된 인도네시아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경우
-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 활동 수행을 위해 고정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 활동 수행을 위해 고정 사업장에서 사용 하는 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재투자 기간 요건

- 신규 설립되는 회사에 투자한 주식은 상업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간 양도 되지 않아야 함.
 - 기 설립된 인도네시아 회사에 대한 투자, 고정 자산의 취득 및 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간 투자가 양도 되지 않아야 함.

□ 인정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한 원천징수

- 상기 이외에도 소득세법 26조는 특정 소득에 대하여 수취하는 총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정 과세 표준(Estimated Net Income, 'ENI')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PPh 26 : ENI 기준 과세>

	ENI	유효 세율*
보험 회사에게 지급 하는 보험 프리미엄 :		
피보험자	50%	10%
인도네시아 보험 회사	10%	2%
인도네시아 재보험 회사	5%	1%
비상장 인도네시아 회사 주식의 매각	25%	5%
조세 피난처인 국가에 소재한 도관 회사(conduit company)의 매각으로, 도관 회사가 인도네시아 내 회사나 고정 사업장 보유를 위한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25%	5%
사치 보석, 다이아몬드, 금, 고가 시계, 골동품, 그림,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및 경비행기 매각으로 매각 금액이 Rp 10 million 을 초과하는 경우	25%	5%

* 유효 세율은 ENI에 20%를 적용하여 산출함



나. 원천징수 시기

□ 신고 납부 의무

- 원천징수한 세금은 매월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됨. 위에서 살펴본 원천징수는 모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익월 2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기

- 원천징수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정부령 GR-No.94/2010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기>

구 분	발생 시기
PPh 22 : 수입 등의 거래	지급한 때 또는 재무부령에 따라 다른 정함이 있는 때
PPh 23 : 특정 국내 거래	다음 중 가장 빠른 때
PPh 26 : 국외 지급 소득	소득을 지급한 때 소득 지급을 준비한 때 소득 지급 기일이 도래한 때

다. 원천징수 감면신청

- 납세자는 특정한 경우 원천징수에 대하여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규정 No. PER-1/PJ/2011에서 규정하고 있음
 - 2014년에 국세청규정 No. PER-21/PJ/2014로 일부 내용이 개정된 바 있음
감면신청은 납세자의 과도한 원천징수를 방지하여 납세자가 다시 이를 환급 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 소득세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PPh 21, 22 및 23)의 원천징수에 적용됨.

□ 신청 요건

- 납세자로, 다음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해 당해 연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세무상 결손인 경우
- ▷ 세무상 결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 기납부한 원천세가 연간 납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소득세를 초과한 경우

- 세무 상 결손인 경우란,
 - i) 납세자가 신규 설립 법인으로 투자 단계에 있거나,
 - ii) 상업 생산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 iii) 불가항력에 따라 세무 상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함.
- 세무 상 결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란,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에 따른 세무 상 결손금이 충분하고 납세자가 결손금 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함.

□ 신청과 승인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직전 연도 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상기 규정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음
- 완비된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접수일 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한 경우에는 면제 승인서(Certificate of exemption)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사유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5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가. 과세 표준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 표준은 인도네시아 재무회계 기준(PSAK)에 따라 산출된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기업 회계기준과 다른 정함이 있는 익금과 손금 및 비과세 소득 등을 가감하여 결정함
 - (개인 소득세 제외).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는 한국의 세법과 다르지 않으나, 일부 인도네시아의 특수한 제도로 인해 일부 차이가 있음

□ 과세 표준 계산 구조

- 법인세 신고서(Form 1771)에 근거한 과세 표준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음.

<과세 표준의 산출>

	구 분	설명 및 관련규정
	당기순이익	기업 회계 기준에 따름
차감(-)	최종 분리 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등
차감(-)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가산(+)	손금 불산입 항목	소득세법 제4조 및 제9조
차감(-)	익금 불산입 항목	
차감(-)	투자 소득 공제	소득세법 제31A조(제7절‘투자 인센티브’ 참조)
	세무상 당기 순이익*	
차감(-)	이월 결손금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과세 표준	

- 한국 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회계 상 당기 순이익에서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세무 조정)만을 고려한 금액으로, 인도네시아 세법 계산 구조에 맞지 않아 부득이 세무상 당기 순이익 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함.



- 최종 분리 과세 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설명한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자산 재평가 차익 등 원천징수를 통해 최종 분리 과세되므로 과세 표준 계산시에 이를 차감함.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소득이므로 이 역시 차감하여 계산함.

□ 손금 불산입 항목과 익금 불산입 항목

- 인도네시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이를 수익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에서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산출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4조 및 제9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하며, 법인 소득세 신고서에 따른 각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손금 불산입과 익금 불산입>

	구 분	법인 소득세 신고서(Form 1771-I)의 구분 예시
가산 (+)	손금 불산입 항목	주주 등에 대한 개인적 비용 충당금 복리 후생 성격의 비용(Benefit in kind) 기부, 원조 등 법인세 비용 주식이 발행되지 아니한 파트너십 등의 사원에 대한 배분 행정벌과금 유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 차이 이연 비용 기타
차감 (-)	익금 불산입 항목	유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 차이 이연 수익 기타



□ 이월 결손금 공제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은 세무상 결손금에 대하여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함이고 규정하고 있음 이월 결손금은 법인세 신고서 Form 1771의 Attachment 2A 서식을 통해 관리함.

□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을 일반세율(25%)이 적용되는 사업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과세 표준을 산출하여야 함.
 - 이러한 경우,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반드시 구분 경리하여야 함. 다만 공통비용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면 매출액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나. 산출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개인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의 구간에 따라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법인 소득세율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그 외에도 세율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이 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 법인 소득세율

- 일반적인 경우, 법인 소득세율은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2010년 이후 지속 25%를 적용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b조는 2008년 개정 당시 법인 소득세율(고정 사업장 포함)을 28%로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은 2010년 과세 기간부터는 이를 25%로 낮추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8년 개정 이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됨.

□ 세율 적용 특례

- 특정한 경우, 위의 단일세율보다 경감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장 법인세율 경감

- 소득세법 제17조 제2b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상장한 법인에 대하여 일반 법인 소득세율에 비해 5%가 낮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였을 것
- ② 총 발행 주식의 5% 미만을 보유한 주주가 최소 300인 이상일 것
- ③ 상기 요건은 과세 기간 내에 최소 183일 이상 충족되어야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중소기업 세율 경감

- 소득세법 제31E조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Rp. 500억 이하의 법인은 일반 법인 소득세율에 비해 50%가 경감된 1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 다만,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 표준이 Rp. 48억에 달할 때 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됨.
- 따라서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됨.



□ 납부세액의 계산

-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와 기납부세액등을 차감하여 산출함.
 - 이러한 산출구조는 한국세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국과 같은 다양한 조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계산이 복잡하지 않음.

1)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법인세 신고서(Form 1771)에 근거한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음.

<납부세액의 산출>

	구 분	설명 및 관련 규정
	산출세액	
차감(-)	외국 납부세액 공제	소득세법 제24조
차감(-)	국외 원조 프로젝트 세액 공제	제7장 ‘조세 편익과 기타제도’ 참조
차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제22조 및 제23조
차감(-)	월선납 법인세 납부액	소득세법 제25조(제6절 ‘신고와 납부’ 참조)
	납부(환급)세액	

- 외국 납부세액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특정 요건을 충족한 국외 원조 프로젝트에 대하여 부여되는 다양한 조세 혜택 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공제받을 수 있음(제7장 참조).
- 제4절에서 설명한 소득세법 제22조 및 제23조(PPh 22 및 23)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구성하는 원천징수세액 또한 공제를 받는다.
- 월 선납 법인세는 한국의 중간 예납 성격과 유사한데,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매월 자진 납부하는 금액임. 선납 법인세이므로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며,
- 이에 대하여는 제6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6 신고와 납부

가. 신고 납부

-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닌다. 법인세 납세자는 법령이 정한 기한 이내에 일정 서식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법인 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신고 및 납부 기한

- 법인 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임. 따라서 납세자의 회계 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 하면, 익년 4월 30일까지 법인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납부 기한 역시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반드시 신고 전에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29조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와 기납부세액등을 차감한 결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 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 기한의 연장

- 납세자는 국세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장 2개월의 신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부로 간주하는 점은 주의하여야 함.



□ 법인세 신고서의 구성

○ 법인세 신고서는 Form 1771로 불리며, 기본 신고서 서식 이외의 여러가지 첨부서류로 구성됨. 신고서 양식은 별첨*을 참고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각 서식에 대하여 설명함.

1) 기본 서식

- 기본 서식은 Form 1771의 본 신고서와 Form 1771-I 부터 Form 1771-VI 까지 총 7개의 서식으로 구성됨. Form 1771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신고서(Form 1771)>

번호	구 분	주 요 내 용
	납세자 기본 정보	납세자 번호(NPWP), 사업의 종류, 납세자의 명칭, 연락처, 회계 기간 등
	회계 감사 및 세무 대리인 정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감사 의견, 감사인의 명칭과 납세자 번호; 세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 대리인의 명칭과 납세자 번호
A	과세 표준	세무상 당기 순이익에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
B	산출세액	일반세율(25%) 또는 경감세율 적용여부 산출세액 계산 외국 납부세액 공제(소득세법 제24조) 차감
C	세액 공제 등	세액 공제, 원천징수 세액, 월선납 법인세액 차감
D	납부(환급)세액	납부(환급)세액 계산 결과 환급 포지션인 경우, 환급 또는 다른 납부세액에서 공제 선택
E	월선납 법인세	익년 납부하여야할 월선납 법인세의 계산 내역
F	비과세 등 소득 금액	최종 분리 과세와 비과세 되는 소득 금액
G	특수 관계자 거래 여부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3 서식 제출 필수
H	첨부서류	제출하는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체크
	행정사항	납세자 또는 대리인 여부와 제출일 납세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 본 신고서 이외의 서식 Form 1771-I 에서 VI 까지 6개의 서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법인세 신고서(Form 1771-I~VI)>

신고서	명 칭	주요 내용
Form 1771-I	세무상 당기순이익	회계 상 당기 순이익에서 시작하여 세무상 당기 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제 5절 참조)
Form 1771-II	원가 및 비용 상세 내역	매출 원가와 영업 비용 및 영업외 비용의 산출 내역과 상세 내역
Form 1771-III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제 22조 및 제 23조에 따라 기중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상세 내역
Form 1771-IV	최종 분리 과세 소득내역 비과세 소득내역	(Part A) 소득세법 제 4조 제 2항 등에 따라 최종 분리 과세되는 소득의 상세 내역 (Par B) 소득세법 제 4조 제 3항에 따른 비과세 소득의 상세 내역
Form 1771-V	특수관계자	(Part A) 주주의 이름과 지분율 (Part B) 이사와 감사의 이름·주소·직책
Form 1771-VI	주주 및 자회사 거래	(Part A) 자회사의 이름과 보유 지분율 (Part B) 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채무 내역 (Part C) 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채권 내역

2) 첨부서류

- 기본서식 이외에도 Form 1771의 H. 에서 정한 첨부서류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지정된 첨부서류 이외의 서류도 필요한 경우라면 Form 1771의 H.에 별도로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음 지정된 첨부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납부서
- 재무제표
-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 상세 내역 및 특수 관계자 거래 요약(첨부서류 서식 8A-1/8A-2/8A-3/8A-4/8A-5/8A-6의 6종류가 있으며,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 감가상각비 계산 내역(첨부서류 서식 1A)
- 이월 결손금 내역(첨부서류 서식 2A)
- 투자관련 조세 혜택 내역(첨부서류 서식 4A)
- 주요 지점 명부(첨부서류 서식 5A)
-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납부서(고정사 업장에 한함)
-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른 소득세 계산(첨부서류 서식 6A, 고정 사업장에 한함)
- 외국 납부세액(첨부서류 서식 7A)
- 대리인 위임장(필요한 경우)

나. 월선납 법인세

□ 개요

- 월선납 법인세는 한국의 중간 예납 성격과 유사한 제도로, 직전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다음 해에 매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임.
 - 납부한 금액은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됨. 월선납 법인세 역시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 납부 의무에 따라야 하므로 미납 및 지연 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계산과 납부 기간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계산 방식

- 월선납 법인세의 계산 방식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 서식 Form 1771. E.에 보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 나와있음
 - 신고 서식에 따라 월선납 법인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월선납 법인세 계산을 위한 기준 소득”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연도 ‘세무상 당기 순이익’ 에서 직전 연도의 비정기적 소득과 비용을 가감하여 산출함.

- 법인세 신고서식 Form 1771. E.에 따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음.

<월선납 법인세의 계산, Form 1771. E.>

번호	구 분	내 용
a.	월선납 법인세 계산을 위한 기준 소득	직전 연도 세무상 당기 순이익에서 비정기적 소득과 비용을 가감하여 산출
b.	이월 결손금	첨부서류 서식 2A에 따라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공제 가능한 결손금
c.	과세 표준	a.에서 b. 를 차감하여 계산
d.	산출세액	c.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e.	원천징수 세액	소득세법 제 22조, 제 23조 및 제 24조에 따라 국내와 국외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f.	납부세액	d.에서 e.를 차감하여 산출
g.	월선납 법인세	f.를 12로 나누어 산출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를 함께 다루고 있어, 개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인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소득 계산 시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신고와 납부

- 당해 연도 월선납 법인세의 계산 내역은 직전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포함됨.
 - 예를 들어 2014년 연간 법인세를 2015년에 신고할 때, 2015년에 매월 납부해야할 월선납 법인세가 2014년의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서식 Form 1771.E.에 포함되는 것임.
 - 이렇게 계산된 월선납 법인세액은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익월 2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직전 연도의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기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그 직전 연도의 마지막 월에 납부한 월선납 법인세액’ 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14년 연간 법인세를 2015년 3월에 신고한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달 이전의 기간인 2015년 1월과 2월에 대하여는 2013년 법인세 신고 시 계산된 월선납 법인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월선납 법인세의 조정과 감면 신청

- 소득세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이 월선납 법인세를 조정할 수 있음 일정 조건이란, 다음의 6가지 경우임.

- ▷ 납세자가 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 ▷ 납세자가 비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
- ▷ 직전 연도 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 연간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 ▷ 납세자가 수정 신고를 통해 기존의 신고 금액보다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된 경우
- ▷ 납세자의 영업과 활동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 이러한 조정에 대하여 국세청규정 No. KEP-537/PJ/2000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 중 제7항에 납세자가 월선납 법인세 감면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월선납 법인세를 회사의 당해 연도 실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납부하는 경우 연소득세 신고 시 환급 포지션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 당해 연도 실적이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선납 법인세 감면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1) 감면 신청 요건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함.

- 당해 연도 과세기간 중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 당해 연도 납부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간 소득세 납부 예상 금액이 월선납 법인세 납부 예상액의 75% 미만일 것

2) 감면 신청 방법과 절차

- 감면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당해 연도 연간 소득세 납부 예상 금액의 산출 근거를 함께 제출하면 됨. 일반적으로 감면 신청 제출 시점 이전의 중간 손익 계산서(예를 들어, 4월에 제출하는 경우 1분기 손익 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직전 연도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첨부함.
- 감면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만약 1개월 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7 기타 중요한 주제

가. 자산 재평가 차익에 대한 과세

□ 개요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산의 재평가로부터 발생한 자산 재평가 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됨.
 - 자산의 재평가와 승인 및 과세에 대하여는 재무부령 No.79/PMK.03/2008 및 국세청규정 No. PER-12/PJ/2009에서 다루고 있으며, 다음은 이 규정의 주요 내용임.

□ 재평가 대상 및 절차

1) 재평가 대상

- 자산 재평가는 인도네시아에 소재 하는 법인과 고정 사업장에서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 연도까지의 모든 납세 의무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가 허용되며, 세무상 루피아 장부 기장을 하는 납세자 이어야함.

- 따라서 세무상 기능 통화를 US dollar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평가가 허용되지 않음. 재평가는 매 5년마다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모든 고정 자산(단, 토지는 제외 가능)을 대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2) 재평가 절차와 승인

- 재평가는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장가치는 정부가 승인한 평가법인(KJPP)에 의해 산정되어야 함.
- 국세청장은 해당금액이 자산의 시장 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이고 판단되면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재평가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관할 세무서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또한 확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 내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과세 방법 및 납부

- 자산의 재평가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재평가 차액)은 10%의 세율로 최종 분리 과세되며, 납세자가 재무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12개월 분납이 가능함.

□ 재평가 자산에 대한 사후 관리

1) 감가상각

- 재평가된 자산은 신규 자산의 취득과 동일하게 처리함. 따라서 재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가 아닌, 전체 내용연수에 걸쳐 다시 감가상각을 수행함.

2) 처분 제한

- 재평가된 자산은 처분에 제한이 있음 처분 제한 기간은 제3절의 유형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구분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다.

- 카테고리 1,2에 포함되는 고정 자산은 적어도 각각의 내용연수가 종료할때 까지는 처분 또는 양도하지 않아야함(카테고리 1의 경우 4년, 2의 경우 8년). 토지, 건물 및 카테고리3,4에 해당되는 고정 자산은 재평가일로부터 최소한 10년 동안은 처분 또는 양도하지 않아야 함. 해당기간 내에 처분·양도시에는 최초 재평가 차액에 추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분리 과세 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 :

- ▷ 정부의 의사나 정책 또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자산의 이전;
- ▷ 비과세 합병, 결합 또는 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
- ▷ 회복할 수 없는 손상에 의한 고정 자산의 폐기.

나. 조세 혜택 : 투자 인센티브(Tax incentive)와 Tax holiday

□ 개요

-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조세 혜택 제도로 투자 인센티브와 Tax holiday가 있음
 - 투자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31A조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소득세법 상의 혜택이고, Tax holiday는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법(UU25/2007, Investment law)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두 가지 조세 혜택은 서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혜택 수혜 기업은 둘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함.

□ 투자 인센티브

- 투자 인센티브 혜택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제31A조에 명문화 되어 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정부령 GR No.1/2007 및 GR No.52/2011에서 다루고 있음



1) 요건

-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회사로, GR No.52/2011에 따른 77개 산업 중 제품 · 규모 · 지역 및 기타요건(투자 금액 · 종업원 수 등)을 충족하는 회사는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요건은 상기 정부령의 별첨으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정부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 ① 상기 정부령 GR No.52/2011은 신규 투자 규모가 Rp. 1조 이상이고 정부령 시행일까지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함이고 규정하고 있으며,
- ② 신청 시점에 투자 계획의 최소 80% 이상이 실현되어야 함.

2) 신청 절차

- 투자 인센티브의 최종 승인은 인도네시아 국세청(국세청)에 있음
- 그러나 신청 이전에, 반드시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3) 인센티브의 내용

-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은 다음의 총 4가지로 구성됨.
 - a) 투자 금액 공제
 - 총 투자 금액의 30%를, 6년 간 5%씩 매년 소득에서 공제
 - b) 가속상각
 - 유무형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가속상각 내용연수 인정

<가속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률>

구 분	내용연수	정액법 상각률	정률법 상각률
Group 1	2년	50%	100%
Group 2	4년	25%	50%
Group 3	8년	12.5%	25%
Group 4	10년	6.25%	20%
상설 건물	10년	10%	-
비상설 건물	5년	20%	-

c) 이월 결손금 공제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조건 충족 시 이월 결손금 공제 기간을 1년 연장 적용할 수 있음 총 5가지 조건으로 모두 충족할 경우 최장 10년의 이월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됨.

- ▷ 투자가 경제 개발 지구나 보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 최소 500인 이상의 인도네시아인 종업원을 연속하여 5년간 고용하는 경우
- ▷ 투자지역에 Rp. 1백억 이상의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나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 ▷ 5년간 총 투자액의 5% 이상이 연구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 ▷ 투자 4년차 이후, 내국 생산 원자재 사용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d) 배당 소득에 대한 조세 혜택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지급 시, 10%의 원천징수 세율 적용(단, 조세 협약 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 협약이 우선함)

4) 사후 관리

- 투자 인센티브 승인을 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 인센티브 승인이 취소됨은 물론 조세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후 투자 인센티브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됨.
 -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유형 자산을 혜택을 받은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유형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신규 투자로 대체되는 경우는 제외 함.

□ Tax Holiday

- Tax Holiday는 재무부령 No.130/PMK.011/2011과 투자청(BKPM) 규정 No.12/2011 및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령 No.93/M-IND/PER/11/2011에서 각각 요건과 혜택 및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아래는 이를 정리 한 것임.

1) 신청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인도네시아 납세자인 기업은 산업부 또는 투자청에 Tax holiday를 신청할 수 있음

- 선도 산업(Pioneer Industries)에 속할 것 :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고 가치 창출 및 외부 효과가 높고 신기술에 해당하며 국가 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최근에는 기초 금속·정유·기초 유기화학·신재생 에너지·기계 산업 및 통신 산업에 주로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 최소 Rp. 1조 이상의 신규 자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 투자 계획 금액의 최소 10%를 인도네시아 소재 은행에 예치하고, 투자 계획 실현 이전에 예치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
- 2010년 8월 14일 이후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을 것

2) 신청 및 승인 절차와 기한

- 신청서는 산업부 장관 또는 투자청장에게 제출함.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검토한 후 재무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됨.
 - 재무부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과 협의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재무부 장관령 또는 별도의 공문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함.
 - 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기존 2014년 8월 15일 까지였으나, 최근 재무부령 No.192/PMK.011/2014을 통해 2015년 8월 15일 까지로 1년 연장 됨.

3) 재무부가 제출하는 제안서의 내용

- 재무부가 제출하는 제안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투자지의 인프라 가용성
- 지역 근로자 고용방안
- 선도 산업 투자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 투자 후 구체적인 기술 이전 방안
- 투자 국가의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Tax Sparing System) 적용 여부

4) Tax Holiday의 내용

- Tax Holiday 승인을 받은 기업은 상업 생산을 시작한 시점으로 부터 5년~10년 간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 또한 면제 기간 종료 후에도 2년 간 추가로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됨.
 - 상업 생산 시점에 대하여는 국세청규정 No.PER-45/PJ/201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른 상업 생산 시점이란 ‘투자가 모두 실현되고·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 임.

5) 투자 예치금의 사용과 투자 실현에 대한 보고

- 승인을 받은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예치한 자금의 사용과 투자 실현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를 국세청(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재무부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됨.
 - 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규정 No.PER-44/PJ/2011에서 규정하고 있음
 - 투자 예치금 사용에 대한 보고는 매 분기 이루어져야 하며, 은행 명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투자 실현 보고서는 매 분기별로 제출하며,
 - 연말에 제출하는 연간 투자 실현 보고서는 반드시 공인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적정한 보고서야 함
 - 분기별로 제출하는 보고서는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투자 실현 보고서는 과세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8

개인 소득세



가. 개요

- 개인 소득세는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법인 소득세와 다른 세율 체계를 갖음
본 절에서는 기업 업무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지급시의 월 개인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계산 구조와 연말 정산의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함.

나. 개인 근로 소득세의 계산

- 개인 근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수취하는 과세 대상 총 급여액을 우선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공제를 고려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됨.

□ 과세 대상 총 급여액

- 과세 대상 총 급여액은 기본급·수당 등 명분을 불구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는 복리후생비(회사 부담 개인 소득세액 포함)와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 보장 부담금(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BPJS')을 포함함.
 - 과세 대상 총 급여액 = 지급 급여 + 개인 소득 간주 복리후생비(회사 부담 소득세액 포함) + 회사 부담 사회 보장 부담금(노후 저축 제외)
 - 사회 보장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UU No.24/2011을 통해 포괄적인 사회 보장을 갖추고 그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건강보험을 일원화하고 각종 사회 보험 체계를 도입 하였으며,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건강보험은 BPJS Kesehatan으로, 산재보험·사망 보험·노후저축은 BPJS Ketenagakerjaan으로 관할 기관을 일원화 함.

○ 사회 보장 부담금에 대한 현행 요율은 다음과 같음.

<사회 보장 부담금 2014년 현행 요율>

구 분	통상 임금 대비 요율	
	고용주 부담	종업원 부담
산재보험	0.24~1.74%	-
사망보험	0.3%	-
노후저축	3.7%	2%
건강보험	3% 또는 6%*	-

- 최대 Rp 283,500/월(기혼자), 최대 Rp 141,750/월(미혼자)
- 사회 보장 부담금은 고정 급여(한국의 통상 임금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일정율로 산출되며, 고정 급여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당(직책 수당·직급 수당 등)을 포함함. 다만 산출된 사회 보장 부담금 중, 노후저축(JHT)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과세 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 표준은 과세 대상 총 급여액에서 연간 소득 공제(Penghasilan Tidak Kena Pajak, 'PTKP')를 차감하여 산출함. 연간 소득 공제 금액은 매년 변경 되는데, 현행 소득 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비과세 소득(PTKP)>

구 분	공제 금액(Rp.)
납세자 본인	24,300,000
배우자	2,025,000
부양자(최대 3인)	2,025,000



구 분	공제 금액(Rp.)
의무 비용 공제(총 소득의 5% 한도, 최대 Rp. 500,000/월)	6,000,000
BPJS상 노후연금 저축 본인 부담분(총 소득의 2%)	총액
연금 납부액(총 소득의 5% 한도, 최대 Rp 200,000/월)	2,400,000

-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개인 소득에 대한 일반 세율은 다음과 같음.

<개인 소득세율>

과세 표준	세 율	산출세액
최초 Rp. 50,000,000까지	5%	2,500,000
이후 Rp. 200,000,000까지	15%	30,000,000
이후 Rp. 250,000,000까지	25%	62,500,000
Rp.500,000,000초과	30%	계산식*

- 산출세액 = (2,500,000+30,000,000+62,500,000) + (과세표준 - 500,000,000) x 30%

□ 신고와 납부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신고 기한은 익월 20일이며 납부 기한은 익월 10일로 이는 법인 소득세와 동일함.

- 매월 신고납부 시, 정확한 연간 과세 대상 총 급여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를 개산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12월 개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 시에는 연간 과세 대상 총 급여가 확정 되므로, 한국의 연말 정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됨.
- 급여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개인은 익년 3월말까지 개인 소득세의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는 개인 소득세 신고 서식 Form 1770을 사용함.

- 인도네시아 개인 소득세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해 가장의 납세자 번호(NPWP)를 단일 신고 대상으로 간주하여 사용하며,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소득을 포함하여 함께 신고함은 점임. 가족의 소득이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에 따라 가장의 소득에 합산될 지 여부가 결정됨.

□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과세 여부

- 일반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주택, 교육 등의 복리후생 성격의 금액은 종업원의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음.
 - 다만 관련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소득세법 제9조 제1항). 그러나 일부 특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복리후생비를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 ▶ 1984년 이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광산 회사 및 오일 가스 산업의 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ors)
- ▶ 외국 기업의 대표 사무소로서, 법인세 납세자가 아닌 경우
- ▶ 최종 분리 과세(소득세법 제4조 제2항)를 적용 받는 회사
- ▶ 인정 이윤 과세 대상 회사

- 인정이윤(Deemed Profit Margins)으로 과세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조에 근거하며 해당 산업 과세율은 다음과 같음.

<인정 이윤 과세 대상 과세율>

구 분	매출액 대비 인정 이익율	유효 법인세율*
국내 해운업	4%	1.20%
국내 항공업	6%	1.80%
외국 해운/항공업	6%	2.64%
외국 석유 가스 시추업	15%	3.75%
특정 대표 사무소	1%	0.25%



- 국내 해운업과 국내 항공업 및 외국 해운/항공업에 대하여는 해당 재무 부령이 개정되지 않아 과거 법인세율인 3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외국 석유 가스 시추업과 특정 대표 사무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인 세율인 25%를 적용하여 산출함

다. 퇴직 소득과 간주급여

- 개인의 소득중 특정 퇴직 소득과 연금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 소득세율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특정 회사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된 급여가 아닌 간주 소득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퇴직 소득과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 퇴직금으로 2년 내에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 분리 과세 됨.

<최종 분리 과세 퇴직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

과세 표준	세 율	산출세액
최초 Rp. 50,000,000까지	0%	0
이후 Rp. 200,000,000까지	5%	2,500,000
이후 Rp. 250,000,000까지	15%	60,000,000
Rp.500,000,000초과	25%	계산식*

- 산출세액 =(2,500,000+60,000,000) +(과세 표준 - 500,000,000) x 25%
- 연금소득 중 정부 승인을 득한 연금 펀드에서 지급하는 정액 연금과 정부의 사회 보장 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노후 저축으로 2년내 지급분 (3년차 지급분 부터는 일반 소득세율 적용)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 분리 과세됨.

<최종 분리 과세 연금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

과세 표준	세 율	산출세액
최초 Rp. 50,000,000까지	0%	0
Rp.50,000,000초과	5%	계산식*

- 산출세액 =(과세표준 - 50,000,000) x 5%



□ 특정 회사에 대한 간주 급여

- 석유 및 가스의 드릴링 회사(Oil and Gas Drilling Companies)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는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간주 과세 소득은 복리후생을 포함한 모든 대가를 고려한 것으로 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특정 산업에 대한 간주 급여>

직 급	간주 급여액/월(US \$)
General Manager	11,275
Manager	9,350
Supervisor and tool pusher	5,830
Assistant tool pusher	4,510
Other crew	3,245

VIII

부가가치세법

1. 개요	156
2. 과세 대상 거래와 면세 및 공급 시기	162
3. 과세 표준과 세율	174
4. 매입세액 공제	180
5.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	188
6. 신고와 납부 및 환급	197
7.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205
8.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212



1 개요



가.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의 연혁과 특징

- 인도네시아 의부가가치세는 1983년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사치품 판매세에 대한 법률 제8호]로 도입됨.
 - 현행 법률은 동 법률의 3차에 거친 개정을 거쳐 [2009년 법률 제42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이하 ‘부가가치세법’] 로 공포되었으며,
 - 2010년 4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음 법률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은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PPN’)와 더불어 사치품 판매세(Pajak Penjualan Barang Mewah, ‘PPnBM’)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점임.
-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일반 소비세 :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 간접세 :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며, 따라서 조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 전단계 세액공제법 :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며,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산출
- 소비지국 과세 원칙 : 재화와 용역의 원산지국이 아닌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원칙으로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에 대하여는 국내 물품 공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 다단계 거래세 :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이 도달하기까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과세



- 다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영세율 적용의 범위가 한국 부가가치세법과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대하여는 제3절에 후술함.

나. 납세 의무자

□ 사업자와 일반 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항은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사업자(Pengusaha)란, 재화의 생산·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출·교역 활동·과세 지역 외부로부터 무채 재화의 반입 및 이용·과세 지역 외부로부터 용역의 반입 및 이용 또는 용역의 수출을 포함한 여러 용역을 행하는 영리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다양한 형태의 법인임.
 - 한국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괄적 사업자의 정의에서는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와 유사함.
 - 그러나 한국 부가가치세법은 제3조에서 ‘사업자’와 ‘수입자’를 납세 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직접 정의하지 않고 ‘일반 과세자(Pengusaha Kena Pajak, PKP)’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5항은 일반 과세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일반 과세자(Pengusaha Kena Pajak, PKP)란, 법률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함.

□ 일반 과세자 (Pengusaha Kena Pajak, PKP) : 부가가치세법 제3A조

1) 일반 과세자의 범위

- 일반 과세자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수출 포함)하는 자로, 연간 매출액이 Rp. 48억 이상인 자임. 매출액이 Rp. 48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Pengusaha Kecil)는 일반 과세자로서의 의무가 없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음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선택한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 소규모 사업자중 연간 매출액이Rp. 48억 이상이 되어 일반 과세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는 충족한 달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일반 과세자 변경을 위한 사업 내역 신고를 해야 함. 사업 내역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 당국은 직원으로 해당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로 지정하여 과세할 수 있음

2) 일반 과세자의 의무

-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 과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사업 내역 신고 의무 : 일반 과세자로 확정 받기 위한 신고이며, 신고서 접수 후 과세 당국의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함.

-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 부가가치세와 사치품 소비세의 거래 징수 및 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와 사치품 소비세의 신고 의무
- 사업 내역 신고 의무는 한국의 사업자 등록과 유사하며, 납세자 번호 (Nomor Pokok Wajib Pajak, 'NPWP')와는 별개로 납세자 번호를 부여 받은 이후 개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3) 소규모 사업자로의 전환(재무부령No.20/PMK.03/2008)

- 일반 과세자가 연간 매출액이Rp. 48억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 당국에 소규모 사업자 전환 신청(Permohonan Pencabut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을 제출할 수 있음 소규모 사업자 전환 신청이 있는 경우,



- 과세 당국은 신청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함.
- 6개월 이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소규모 사업자 전환 결정문은 상기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 수입자

- 일반 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의 국내 공급 및 수출에 대한 납세 의무자라면, 수입자는 재화와 용역의 수입에 대한 납세 의무자임.
 - 그러나 인도네시아 세법은 수입자에게는 일반 과세자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며,
 - 따라서 일반 과세자에게 부여되는 세금 계산서의 발행 의무가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수입자는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다른 문서를 갖추어야 함.

<수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에 따른 세금 계산서 간주 문서>

수입하는 재화와 용역	세금 계산서로 간주하는 문서
유체 재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서 Surat Setoran Pajak, Surat Pabean, Cukai dan Pajak, 'SSPCP'), 또는 세관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첨부된 수입 신고서 (Pemberitahuan Impor Barang, 'PIB')
무체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 납부서(Surat Setoran Pajak)

- 부가세 과세 대상인 유체 재화의 경우, 세관 통과시 해당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해당 수입자에게 별도의 거래 징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과세 대상 무체 재화와 용역은 이와 같은 세관을 통한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A조 제3항은 해당 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 및 납부 의무와 신고 의무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음

다.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1개월임. 따라서 납세자에게 각 월 단위의 신고와 납부 의무가 부여됨.
 -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일반 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인 것에 비하여 매우 짧다.
 - 세무조사 역시 각 개별 과세 기간 별로 이루어지며 미신고와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 또한 각 과세 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신고와 납부 기한 준수뿐 아니라 세금 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에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라. 납세지

1) 일반 과세자의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거래별·납세자 구분별 납세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납세지>

구 분		납세지
재화와 용역의 국내 공급과 수출	개인 사업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법인 사업자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유체 재화의 수입		세관을 통하여 과세 대상 물건이 수입되어 거래 징수되는 장소
무체 재화와 용역의 수입	개인 사업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법인 사업자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일반 과세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주소지나 소재지 이외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한 각각의 납세지가 되며,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일반 과세자 확정을 위한 사업 내역 신고 의무가 있음

□ 총괄 납부 (국세청규정 PER-19/PJ/2010)

- 하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일반 과세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납세지(주된 납세지)에서 다른 납세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총괄 납부가 가능함.

1) 주된 납세지의 요건

- 주된 납세지로 선정된 장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활동(Administrasi Penjualan)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보세구역(Kawasan Berikat, 'KB')이나 특별 경제구역(Kawasan Ekonomi Khusus) 또는 수출입 편의지구(Fasilitas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에 있는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납세지가 될 수 없음.

2) 신청 및 승인 절차

- 일반 과세자는 서면으로 주된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며, 지방 국세청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지방 국세청장은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국세청장 명의로 주된 납세지 선정 결정문 또는 선정 거부의 통지를 발행하여야 함.

3) 효력

- 주된 납세지 선정 결정문이 발행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 유효함.

4) 변경 및 포기

- 주된 납세지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상기 선정 결정문에 따라 주된 납세가 시작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 변경 신청서를 서면으로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주된 납세지가 영구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음은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변경 신청이 가능함.
- 주된 납세지 선정 결정문을 받아 총괄 납부를 시행중이었으나 더이상 총괄 납부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총괄 납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과세 기간이 시작하기 2개월 전까지 총괄 납부 포기에 관한 서면 신고서를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장은 당해 신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총괄 납부 포기에 대한 결정문을 발행하여야 함.

2 과세 대상 거래와 면세 및 공급 시기

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 과세 대상

-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대상 거래를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 3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을 국내 공급(과세 지역 내에서의 공급)과 수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유형의 재화 이외에 무형의 재화(무체 재화)의 수입과 수출을 별도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8가지 과세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구 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과세 지역 내에서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일반 과세자가 유체 재화의 수출
	일반 과세자가 무체 재화의 수출
용역의 공급	사업자가 과세 지역 내에서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
	일반 과세자가 용역의 수출
재화의 수입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
	과세 대상 무체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	과세 대상 용역의 수입

1) 과세 대상 무체 재화의 수입

- 과세 지역 외로부터 과세 대상 무체 재화를 반입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회사 A가 외국에 소재한 회사B로부터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고 B의 상표권을 인도네시아 과세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됨.

2) 과세 대상 용역의 수입

- 과세 지역 외로부터 과세 대상 용역을 과세 지역 내로 반입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회사 C가 외국에 소재한 회사 D로부터 기술 지원 용역 계약을 맺고 인도네시아 과세 지역 내에서 기술 지원 용역을 받는다면, 당해 기술 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됨.
- 위의 과세 대상 무체 재화의 수입과 과세 대상 용역의 수입은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나, 인도네시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실무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의 정의는 과세 대상 재화 공급의 각 단계를 모두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A조는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의 예시와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는 예시 규정으로 1A조에 해당하는 공급만이 과세 대상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은 포괄적으로 적용됨.

1) 부가가치세법 제1A조 제1항 :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거래

- 특정 계약에 따른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한 권리의 양도
- 할부 구매 또는 리스 계약에 따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 상사 중개인(Pedagang Perantara)에게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또는 경매사 (Juru Lelang)를 통한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 과세 대상 재화의 개인적 공급(Pemakaian Sendiri) 또는 사업상 증여(Pemberian Cuma-Cuma)
- 회사 청산시 판매되지 않은 잔존 과세 대상 재고과 기타 자산
- 과세 대상 재화의 내부 거래(예를 들어, 지점 간 또는 본 · 지점 간)
- 위탁에 의한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 샤리아(Syriah) 원칙에 따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 해설 : 샤리아(Syriah)

샤리아는 이슬람교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를 의미함. 위의 샤리아 원칙에 따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은 무라바하 (Murabahah) 거래로, 이슬람 금융권 (Bank Syriah)의 대표적인 거래 방식임. 무라바하 거래란, 은행 이자금 대여자로서 고객을 위해 과세 대상 재화를 대신 매입하고 이에 약정 이윤을 덧붙여 고객에게 과세 대상 재화를 재판매하는 방식임.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재화는 원래 공급자 (판매자)에게서 고객에게 공급되며, 은행은 고객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미래에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할부 금융 역할을 하게 됨.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무라바하 거래시 재화가 공급자에게서 고객에게 직접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은행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음.



2) 부가가치세법 제1A조 제2항 :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

- 상법(Kitab Undang-Undang Hukum Dagang) 상 특정 중개인(Makelar)에게 공급되는 과세 대상 재화
- 채무 보증 목적으로 이전되는 재화
- 상기 제1항의 ‘과세 대상 재화의 내부 거래’ 중, 총괄 납부 승인을 받은 일반 과세자의 내부거래
- 합병·결합·사업 확장·분할·사업 양수도 또는 사업형태 변경 목적의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일반 과세자인 경우
- 회사의 청산시 잔존 재화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8항 b호·c호에 따라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자산의 공급 - b호 :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c호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 역시 재화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 용역이 전달되는 모든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의 공급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법령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용역의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서 과세 대상 용역의 종류와 내용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재무부령(No. 70/PMK.03/2010과 No. 30/PMK.03/2011)에 따른 과세대상(영세율 적용) 수출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세율 적용)수출 용역>

구 분	요 건
사급용역 (Jasa Maklon)	주문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하, '주문자등')가 과세 지역외에 소재하며, 외국 납세자로 인도네시아에 고정 사업장이 없을 것 제품의 사양과 재료는 주문자 등이 제공할 것 재료는 과세 대상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반제품·부재료 일 것 완제품의 소유권은 주문자 등에게 있을 것 용역 제공자는 주문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외로 공급할 것
국외 이용 동산 (Barang Bergerak) 관련 용역	수리 또는 수선 용역
국외 소재 부동산 (Barang Tidak Bergerak) 관련 용역	건설 용역으로 건설 설계 용역, 건설 실행 용역 및 건설 감리 용역 포함

- 상기 용역의 수출은 일반 과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3절에 후술함.

□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C조와 16D조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특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가가치세법 제16C조 : 자가 건설 건물

- 개인이나 법인이 직업이나 사업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자가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령 No.163/PMK.03/2012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의 주요 원재료가 나무·콘크리트·석물 또는 유사 종류와 철근일 것
-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것
- 전체 면적이 200m²을 초과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6D조 : 최초 목적과 다른 자산의 양도

- 최초 목적과 다르게 매매되는 자산의 양도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당해 자산 매입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8항 b호(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와 c호(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매와 유지 관련 매입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함.

나. 면세 재화와 용역

- 면세는 한국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어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음. 또한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신고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실무적으로 면세 사업자도 일반 과세자의 지위(PKP)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부여됨.
 - 또한 면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일반 과세자의 지위(PKP)를 먼저 부여받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면세 대상 재화만을 공급하던 사업자가 사업상 보유하고 있던 과세 대상 재화(예를 들어, 건물이나 기계 장치)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먼저 부여 받은 후 세금 계산서의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면세 대상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A조에 열거되어 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면세 재화

1) 직접 채굴된 광물

- 원유, 천연 가스 (LPG 형태로 직접 소비 가능한 것은 제외), 지열, 석면, 슬레이트, 보석류, 석회석, 경석, 벤토아니트, 백운석, 암염, 석묵, 석탄 원석, 철광석, 금, 니켈, 은 등

2) 생활 필수품

- 일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함이고 인정되는 중요한 재화로 다음을 포함함 : 쌀, 벼, 옥수수, 사구야자, 콩, 소금, 미가공육(절단, 냉장, 냉동 포장 수준의 가공육 포함), 미가공 신선란(세척, 염장, 포장 수준의 가공란 포함), 우유, 과일류(세척, 껍질 제거, 절단 수준의 가공을 포함하며 포장 여부는 불문함), 채소류(세척, 침전, 저온 보관 수준의 가공 포함).

3) 호텔·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및 케이터링 서비스 (현장에서 소비되는지 여부 불문)

4) 화폐, 금괴, 유가 증권

□ 면세 용역

1) 보건 의료 용역

- 일반 의사·전문 의사·치과 의사·수의사의 의료 용역, 영양사·보철사(Ahli Gigi)·침술사·물리 치료사 등 보건 기술자의 보건 용역, 조산원의 보건 용역, 간호사·준 의료 종사자(Paramedis)의 보건 용역, 병원·조산소·건강 클리닉·임상 병리 등의 보건 용역, 심리 치료 용역, 대체 의료 용역



- 2) 사회 서비스 용역
 - 고아원·양로원 등의 서비스 용역, 소방 용역, 사고 긴급 구조 용역, 갱생 조직 용역, 장례식장 제공 또 능장례 서비스 제공 용역, 상업적 목적이 아닌 체육 분야 용역
- 3) 우표를 사용한 우편 서비스
- 4) 금융 서비스
 - 지로·적금·예금 등과 같은 자금 모집 용역, 대부 용역, 샤리아(Syria) 원칙에 근거한 여신 금융 용역을 포함한 모든 여신 금융 용역(리스, 신용 카드, 소비자 금융 등), 저당법에 근거한 대부 중개 용역, 보증 용역
- 5) 보험 서비스
- 6) 종교 서비스
- 7) 교육 서비스
 - 모든 종류의 학교 교육 관련 용역, 특수 교육·학원 등의 교육 관련 용역, 방과 후 교육 운영 용역
- 8) 문화 예술 관련 용역
- 9) 광고를 제외한 방송 용역
- 10) 육상 및 해상대중 교통, 항공의 경우 국외 항공 용역에서 분리 되지 않는 국내선에 한함
- 11) 인적 용역(Jasa Tenaga Kerja) 상공부(Ministry of Trade, 'MoT')령No. 83/PMK.03/2012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 용역>

구 분	요 건
개인이 제공하는 근로 용역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급하는 경우로, 1) 근로자가 보상을 제공받아야 하며,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해야 할 직접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인력 공급 용역	1) 오직 ‘인력’ 만을 제공하고 여타 과세 대상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이 없어야 하며, 2) 서비스 제공자가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 서비스 제공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4)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직에 포함되어야 함
인력 훈련 용역	관련 기관에 등록하였거나 관련 자격증(license)이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한함

- 12) 호텔 서비스
- 13) 정부가 제공하는 용역
- 14) 주차장 서비스
- 15) 동전을 이용한 공중 전화
- 16) 우편환·전신환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
- 17) 급식 용역

다. 공급 시기

-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때로, 과세 기간 및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와도 연관된 중요한 개념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열거한 8가지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제11조 제1항에서 공급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사업자가 과세 지역 내에서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공급 시
일반 과세자가 유체 재화의 수출	수출 시
일반 과세자가 무체 재화의 수출	수출 시
사업자가 과세 지역 내에서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	공급 시
일반 과세자가 용역의 수출	수출 시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	수입 시
과세 대상 무체 재화의 수입	반입하여 이용 시
과세 대상 용역의 수입	반입하여 이용 시

- 또한 법 제11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이전에 대가가 선지급된 경우, 지급된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함이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 부가가치세법에는 없는 내용으로, 동 규정에 따라 선급금이 지급 되는 경우 공급 시기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지급된 때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고 해당 부가가치세가 신고 납부되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부가가치세법은 공급 시기에 대해 위와 같이 매우 개략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법 제11조 제4항에서 과세 당국에 거래 시기를 달리 볼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훈령(Circular Letter) No.SE-50/PJ/2011은 공급 시기에 대하여 회계적 개념을 수용하고 있음 훈령은 재화의 공급 시기를 ‘위험과 소유권이 이전된 때’ 로, 용역의 공급 시기를 ‘용역으로부터 받을 대가를 신뢰성 있게 예측 또는 측정 가능한 때’ 로 정의하고 있음
- 2012년 공표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Government Regulation) No.1/2012(GR-1)은 위의 훈령의 취지를 수용하여 제정 되었으며, 제17조에서 공급 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과세지역 내)

1) 유형의 이동이 필요한 재화

- 구매자나 구매자를 대신한 제3자에게 직접 인도된 때;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내부 거래(본 · 지점 또는 지점 간)의 경우, 수령인에게 직접 인도된 때;
 - 배달원 또는 운송 용역 회사에 인도된 때; 또는
 - 재화의 공급가액이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매출 채권 또는 수익으로 인식 되거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때

2) 유형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 재화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때

3) 무형의 재화(무체 재화)

- 재화의 공급가액이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매출 채권 또는 수익으로 인식 되거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때
 - 또는 상기 공급 시기가 없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때 또는 재화의 부분이나 전체가 사용 가능해진 때

4) 회사 청산 시 판매 되지 않은 잔존 과세 대상 재고과 기타 자산

- 공증인이 청산 증명서에 서명한 때
 - 정관에 따른 회사의 존속 기간이 종료한 때
 - 회사의 청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 세무조사 결과나 근거 자료를 통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해산되었음이 판명된 때



5) 합병·결합·사업 확장·분할·사업 양수도 또는 사업 형태 변경목적의 재화의 공급

- 합병 등 해당 목적 행위에 대한 계약에 따라 승인 권한이 있는 주주 총회의 의결로 합의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때; 또는
- 공증인이 합병 등 해당 목적 행위의 증명서에 서명한 때

□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의 수출

1) 유체 재화의 수출

- 재화가 과세 지역 외부로 반출된 때

2) 무체 재화의 수출과 용역의 수출

- 수출된 무체 재화의 대가가 장부상 매출채권 또는 수익으로 인식된 때

□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과세 지역 내)

- 용역의 공급가액이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매출채권 또는 수익으로 인식되거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
 - 상기 공급 시기가 없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때; 또는
 - 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내부 거래(본·지점 또는 지점 간)의 경우, 용역의 전체 또는 부분이 사용 가능해진 때

□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

- 재화가 과세 구역내로 반입된 때

□ 과세 대상 무체 재화와 용역의 수입

- 무체 재화나 용역을 사용한 주체가 그 취득가액을 세관에 신고한 때
- 무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주체가 대가를 수령한 때

- 무체 재화나 용역을 사용한 주체가 그 취득가액을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지급한 때 또는
- 상기 3가지 공급 시기가 모두 없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한 날

3 과세 표준과 세율

가.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세 표준(Dasar Pengenaan Pajak, ‘DPP’)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한국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과세 표준을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여 공급가액(공급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의 개념을 사용하나, 인도네시아는 공급가액의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음.

□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 표준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거래 가격임. 부가가치세법 제8A조 제1항 역시 이러한 취지의 과세 표준을 정의하고 있음

<일반적인 과세표준>

거래의 종류	과세 표준
재화의 공급	판매 가격(Harga Jual)
용역의 공급 · 용역의 수출 · 무체 재화의 수출 무체 재화의 수입 · 용역의 수입	제공 가격(Penggantian)
재화의 수출	수출 가격(Nilai Ekspor)
재화의 수입	수입 가격(Nilai Impor)

- 1) 판매 가격이란, 재화의 공급으로 인하여 청구하였거나 청구해야 할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가치(Nilai Berupa Uang)를 의미함. 판매 가격은 부가가치세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할인액(Potongan Harga)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운송료·보험료·기술 지원료·설치 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함.
- 2) 제공 가격이란, 용역의 공급·용역의 수출 또는 무체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이로 인하여 청구하였거나 청구해야 할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며, 무체 재화의 수입과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용역의 이용자가 지불하거나 지불하여야 할 모든 금전적 가치를 의미함. 판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할인액은 제공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함.
- 3) 수입 가격이란, 관세의 과세 가격에 기타 비용과 관세법에 따른 징수 금액(관세 등)을 포함한 금액임. 한국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이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개별 소비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임.

□ 특정한 경우의 과세 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8A조 제2항은 제1항의 과세 표준 이외의 기타가액(Nilai Lain)을 과세 표준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재무부령No.38/PMK.011/2013(재무부령No. 75/PMK.03/2010의 개정 규정)은 기타가액이 적용되는 거래와 기타가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특정한 경우의 과세 표준>

거래의 종류	과세 표준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과세 대상 재화의 내부 거래	판매 가격에서 매출 총이익을 차감한 금액(Harga Pokok)
회사 청산시 판매되지 않은 잔존 과세 대상 재고와 기타 자산	시장 가치(Harga Pasar Wajar)
상사 중개인에게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합의된 가격
경매사를 통한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낙찰 가격
영상이나 음향 기록물의 공급	평균 예상 판매 가격
영화의 공급	편당 예상 평균 수입
수입 영화	편당 Rp 12 million
담배 제품의 수입과 공급	소매 판매 가격
자가 건설 건물*	토지 취득가를 제외한 총 건설 원가의 20%
귀금속(귀금속 관련 공장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포함) 공급*	판매 가격의 20%
포장 선적 서비스, 여행 및 여행 대행 서비스*	실제 청구 금액의 10%
운송료와 함께 청구되는 운송 주선 용역*	실제 청구 금액의 10%

*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따라서 부가가치세 유효 세율은 과세 표준에 세율인 10%를 곱한율이 됨.

1) 운송 주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운송 주선 용역에는 다양한 활동(temporary storage of goods, documents handling, freight cost)이 포함되며, 이를 여러개의 세금 계산서를 통해 화주에게 청구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통합 서비스로 간주하여, 총 청구 금액의 10%를 과세 표준으로 함.

- 다만, 운송 주선 업자가 화주(서비스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부분 중 실제 발생 비용 청구(reimbursement)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정한 경우의 과세 표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조건은 국세청훈령(Circular Letter) No. SE-33/PJ/201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 해당 비용이 제 3자의 청구서(Third Party Billin)상 운송 주선 업자가 아닌 화주에게 청구되어야 함.
- ▷ 운송 주선 업자는 수입 관세와 관련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지급 서류에 화주의 이름·주소·납세자 번호(NPWP)를 사용하여야 함.
- ▷ 운송 주선 업자와 화주 간의 운송 위탁 계약서상, 제 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reimbursement)은 운송 주선 업자를 통하거나 의해 정산되나 지급 의무는 화주에게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 ▷ 운송 주선 업자는 실제 발생 비용의 청구(reimbursement)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이나 비용도 인식하지 않음.

- 실제 발생 비용은 수입 부가가치세, Article 22 조에 따른 수입 원천세, 수입 관세, 수출세, 운송 비용 등을 포함함.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송 주선 업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과세 표준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 표준을 적용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자가 건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 자가 건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재무부령No.163/PMK.03/2012(No.39/PMK.03/2010의 개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개정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건물의 면적을 최소 300m²에서 200m²으로 낮추었으며, 과세 표준을 건설 원가의 40%에서 20%로 낮추었다.
 - 자가 건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이 자기 자신이므로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 거래는 아니며, 해당 납세자는 익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서(Surat Setoran Pajak)을 통해 건물이 위치하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함.
 - 국세청규정No.PER-25/PJ/2012과No.PER-23/PJ/2012은 건설 원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납세자가 신고한 건설 원가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거나 Minister of Public Works Decision No.45/PRT/M/2007규정에 따라 발표되는 최저 건물 가치(Harga Satuan Bangunan Gedung Negara/HSBGN)보다 낮은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최저 건물 가치를 건설 원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 관계자 거래와 부당 행위 계산 부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과세 표준과 특수 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상 가격의 원칙’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동 조 제1항은 특수 관계자간 거래에서 재화의 판매 가격과 용역의 제공 가격은 ‘합리적인 시장 가격’ 에 따른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특수 관계자간 거래 가격이 ‘합리적인 시장 가격’에 비추어 부당함이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 가격과 제공 가격(과세 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동 조 제2항은 특수 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자의 범위와 동일함.

나. 세율과 영세율의 적용

□ 세율

- 재화와 용역의 수출을 제외한 모든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10% 단일세율]이 적용됨. 또한 동 법 제3항은 정부가 세율을 최저 5%에서 최고 15%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율을 10%로 유지하고 있음



□ 영세율

-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실현을 위해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은 ‘수출 하는 유체 재화’·‘수출 하는 무체 재화’·‘수출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은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의 수출에 대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Consumption Principle)이 아닌 수행지국 과세원칙(Performance Principle)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함.

1) 용역의 수출에 대한 세율 적용

- 국세청훈령(Circular Letter) No. SE-49/PJ/2011 은 용역의 수출에 대하여, 용역이 인도네시아 과세 지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 이와 반대로 용역이 인도네시아 과세 지역 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컨설팅 법인 A가 한국에 소재한 법인 B에 세무 컨설팅 용역을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하여 제공한 경우,

- 이러한 용역의 수출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A는 B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B는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에 A를 통해 납부한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한국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 이러한 훈령의 내용은 정부령 GR No. 1/2012(GR-1) 제6조의 신설로 보다 명확해졌는데,

- 법률과 하위 규정에서 서로 다른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해당 수입 국가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매우 불합리한 규정으로 평가받고 있음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수출

- 그러나 위의 훈령과 정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재무부령No. 30/PMK.03/2011에 위임한 사급 용역(Jasa Maklon)등의 3가지 용역의 수출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여전히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 이러한 사급 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을 수출하는 일반 과세자는 수출하는 때에 ‘용역 수출 신고서(Pemberitahuan Ekspor Jasa Kena Pajak)’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재무부령No. 30/PMK.03/2011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된 수출 신고서는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4 매입세액 공제



가. 매입세액 공제 개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함.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 매입세액 공제 기본 요건

- 1) 공제 시기 : 동일 과세 기간
- 매입세액은 동일한 과세 기간 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동일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과세 기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9항). 다만, 매입세액이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거나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못함.



2) 공제요건 :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공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세금 계산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b항). 매입세액은 반드시 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 적법한 세금 계산서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5절에서 후술함.

□ 상업 생산 시작 전의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대응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상업 생산 시작 전의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a항은 이와 같이 상업 생산 시작 전의 일반 과세자 에게는 구입 또는 수입한 자본재(Barang Model)에 대하여 매출 세액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본재’ 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자본재 이외의 거래 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자본재의 개념은 정부령 GR No. 1/2012(GR-1)제16조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 유형의 재화일 것
- ▷ 내용연수 1년 이상일 것
- ▷ 최초 취득 목적이 판매가 아닐 것
- ▷ 해당 재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비용이나 건설 비용·설치 비용 등)을 포함

- 기존의 재무부령 No.81/PMK.03/2010는 ‘자본재 ’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유형의 재화’ 로만 정의하여 취득 부대비용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 허용 여부가 불명확 하였으나, 정부령 GR-1은 이를 명확히 공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경영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1) 경영 사업자의 정의

- 경영 사업이란,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5항은 경영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 기간 중에 ‘납부세액이 있는 공급’과 ‘납부세액이 없는 공급’이 모두 있는 일반 과세자로 정의하고 있음

2) 매입세액 공제

- 경영 사업자는 과세 사업 부분과 면세 사업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 기장하여야 하며, 과세 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과세와 면세 사업 모두에 이용되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무부령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산출함(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6항).

3) 통합사업(Integrated Business)을 영위하는 경우의 예외

- 재무부령No.21/PMK.011/2014은 상기 No.78/PMK.03/2010의 내용중 일부를 개정하며, 통합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에게 면세 사업에 공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함.
- 통합 사업이란, 사업자가 생산한 면세 재화를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과세 재화 생산을 위해 자가 생산 설비를 활용하는 것과 외주 가공을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함.
- 통합 사업자가 면세 대상 재화를 과세 대상 재화 생산에만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공급하여 ‘납부세액 이없는’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무부령 No.78/PMK.03/2010가 규정한 경영 사업자의 공제 가능 매입세액 산출 방식에 따라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나.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8항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 과세자의 지위가 확정되기 전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A조에 규정한 사업 내역 신고를 통해,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함. 한국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 등록 20일전 매입분까지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일반 과세자 지위 획득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매입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 세단이나 왜건형 차량의 구매와 유지에 관한 비용 지출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판매용 상품 또는 임대용 상품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함.

□ 적법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이 불분명한 세금 계산서

- 세금 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필요적 기재사항) 또 는제9항(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또한 이름·주소·납세자 번호·구매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음.

- 과세 대상 무체 재화와 용역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문서인 부가가치세 납부서(Surat Setoran Pajak)를 정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세무조사로 세액 확정 결정서(Ketetapan Pajak)가 발급된 경우

- 세무조사의 결과로 해당 과세 기간의 세액이 과세 당국에 의해 확정되어 결정서(Ketetapan Pajak)가 발부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해당 과세 기간에 속하는 매입세액을 지급하거나 기지급한 매입세액이 확인되더라도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세액 확정 결정서의 종류와 발부에 대하여는 **법 제*장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 세무조사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확인된 경우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세무조사 중 확인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상업 생산 시작 이전에 자본재 이외의 매입세액

-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a항 규정에 따라 상업 생산 이전에 취득한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함. 그러나 자본재 이외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 발생한 매입세액은 상업 생산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공제되지 않음.

다. 특정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7항과 제7a항은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일정 비율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이 정하는 특정 사업자는 다음과 같음

- (1) 1년간 총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일반 과세자와
- (2)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별도의 재무부령을 두고 있음
-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2)의 재무부령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 또한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재무부령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특정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재무부령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만 간략히 소개함.

□ 1년간 총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일반 과세자 (재무부령 No.74/PMK.03/2010)

1) 적용 요건

- 일반 과세자로, 직전 2개 과세연도(1역년) 중매 1년의 매출액이 Rp. 18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신규로 확정받은 경우

2) 매입세액 공제액

- 용역의 공급 : 매출세액의 60%
- 제화의 공급 : 매출세액의 70%

3) 행정 절차

- 해당 재무부령의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확정 받은 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 총 매출액이 Rp. 18억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동 재무부령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특정 사업을 영위 하는 일반 과세자

(재무부령 No.79/PMK.03/2010)

1) 적용 사업

- 중고차 소매업 및 장식용 금 소매업

2) 매입세액 공제액

- 중고차 소매업 : 매출세액의 90%
- 장식용 금소매업 : 매출세액의 80%

3) 유의 사항

- 해당 재무부령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 시 수령한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소득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라. 생산 실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6a항)

- 전술한 바와 같이, 상업 생산 시작 전 자본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a항에 따라 공제가 가능함. 그러나 일정기간 이내에 사업자가 생산에 실패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고 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은 법 제9조 제6b항에 따라 재무부령에 위임되며, 재무부령 No.81/PMK.03/2010과 동 재무부령에 대한 개정 규정 No.31/PMK.03.2014에 따른다.



□ 생산 실패의 정의

1) 제조업인 경우

- 최초 매입세액 공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직접 제조한 결과물을 통해, 판매 활동(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나 수출 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실패로 간주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최초 매입세액 공제시점 으로부터 1년간 직접 제조한 결과물을 통해, 판매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실패로 간주함.

□ 납부 의무와 가산세

- 생산에 실패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 공제되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이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납부 세액의 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대 24개월까지 부과되므로 생산 실패의 경우에는 48%의 가산세가 부과됨.
 - 다만, 생산에 실패한 원인이 자연재해 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재납부 하여야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생산 실패 이후의 후속 조치

- 제조업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 생산에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2년간은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추가적인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판매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환급 매입세액의 납부 의무와 가산세가 부과됨. 또한 이에 더하여 일반 과세자의 지위가 자동 취소 됨.

5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

가. 거래징수

- 일반 과세자인 공급자는 공급 받는자(매입자)로부터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함.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조세 부담의 주체와 납부 주체가 달라 납부 주체가 조세 부담 주체로부터 거래 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개념임.
- 부가가치세법은 법 제31조를 통해 거래징수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러한 개념 조항은 없음. 다만 일반 과세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3A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와 사치품 소비세의 거래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임.
 - 일반 과세자는 거래 상대방인 매입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거래징수 의무를 짐. 다만,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영('0')으로 산출되므로 거래징수할 세액이 없음.

나. 거래징수의 예외 : 부가세 징수자와 자가징수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은 위에서 설명한 거래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부가세 징수자(VAT collector)와 자가징수(Self Assessed VAT)가 그것임.
- 부가세 징수자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거래징수 당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임.
 - 예를 들어, 부가세 징수자인 국영기업 PT. PERTAMINA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A는 건설 용역 대가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PT. PERTAMINA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 PT. PERTAMINA가 해당 용역의 대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 납부함.
- 자가징수는 거래 상대방이 인도네시아 과세 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아,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임.
 - 예를 들어, 한국에 소재하는 회사 B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회사 C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한국에 소재하는 회사 B가 C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인도네시아에 납부할 수 없으므로 C가 해당 용역의 대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 납부함.

□ 부가세 징수자 (Pemungut PPN/VAT collector)

1) 부가세 징수자의 정의와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7항은 부가세 징수자는 재무부령이 지정하는 정부, 법인 또는 정부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한 재무부령 No.73/PMK03.2010과 No.83/PMK.03/2012에 따른 부가세 징수자는 다음과 같음.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출납 기관(Bendahara)
- 석유·가스분야의 Profit Sharing Contractor(‘PSC’)
- 국영 기업(Badan Usaha Milik Negara, ‘BUMN’) 중 부가세 징수자로 지정된 자

2) 부가세 징수자의 의무

- 부가세 징수자는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매출세액을 스스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음 특히 국영 기업은 재무부령 No.83/PMK.03/2012에 따라, 과세 기간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신고하여야 함.

3)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

- 재무부령에 따라 PSC나 국영 기업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 과세자는 늦어도 다음의 시기까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의 일반 규정과 동일함.

-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
-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때
- 진행 기준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때

- 정부 출납 기관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훈령 No. SE-50에 따라, 일반 과세자가 청구서를 출납 기관에 송부한 때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4) 부가세 징수자가 직접 징수하지 아니하는 예외

- 다음의 거래인 경우에는 부가세 징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거래징수처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를 신고 납부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와 사치품 판매세를 포함한 총 공급 대가가 Rp. 10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거나 거래징수 되지 않는 경우
- PT. PERTAMINA가 공급한 유류 또는 연료 공급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 전화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항공 회사에 의한 항공 운송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나 사치품 판매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 경우



□ 자가징수 부가세 (Self-assessed VAT)

-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됨. 재화의 수입이나 용역의 수입과 같이 공급자가 인도네시아 비거주자인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따라서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수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자가징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함.
- 다만, 수입자는 제1절 2. 납세 의무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 과세자로서의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세금 계산서로 간주하는 문서로서 신고를 대신함.

다. 세금 계산서 (Faktur Pajak)

- 부가가치세법의 정의에 따른 세금 계산서란,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거나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과세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세금 징수 증명(Bukti Pungutan Pajak)임”.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증빙으로, 반드시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여야 세무 상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음

□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자와 교부 대상 거래

1)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자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일반 과세자만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확정받지 아니한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음.

2)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과세 대상 거래중 ‘수입’ 을 제외한 모든 거래는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임.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과세 대상 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 여부
사업자가 과세 지역 내에서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
일반 과세자가 유체 재화의 수출	○
일반 과세자가 무체 재화의 수출	○
사업자가 과세 지역 내에서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	○
일반 과세자가 용역의 수출	○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	X
과세 대상 무체 재화의 수입	X
과세 대상 용역의 수입	X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D조의 최초목적과 다른 자산의 매매거래 역시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 거래임.

□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

1) 일반적인 교부 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a항은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교부 시기는 다음과 같음.

-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
-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때
- 진행 기준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때
- 재무부령에 의해 다른 정함이 있는 때



-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의 제1원칙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한 때, 즉 공급 시기이며, 공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제2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음. 만일 공급 시기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진행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한 때에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
- 그 외에 재무부령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로, 위에서 설명한 부가세 징수자 (VAT Collector)에 대한 재무부령 No.73/PMK03.2010과 No.83/PMK.03/2012에서는 부가세 징수자에게 공급할 때의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를 특정하고 있음
- 또한 재무부령 No.238/PMK.011/2012 는 내국 또는 국제 시세에 따라 판매 가격이 늦게 확정되고 재화의 품질과 가치·수량 등이 운송 도중 변경될 수 있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는,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때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광물 관련 재화가 보통 이에 해당되며, 이때에도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때, 이전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때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월합 세금 계산서

-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유사한 ‘월합 세금 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일반 과세자는 공급 받는자에게 1개월간의 모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장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월합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달의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함.



□ 적법한 세금 계산서

1) 필요적 기재사항

-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 계산서가 적법한 효력을 갖기 위한 형식적 요건임.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 나오기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함.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이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임.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이름·주소·납세자 번호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이름·주소·납세자 번호
- 재화나 용역의 종류와 판매 가격 또는 제공가액과 할인액
- 거래징수 되는 부가가치세액
- 거래징수 되는 사치품 판매세액
- 세금 계산서 코드, 일련 번호와 세금 계산서 작성 및 교부 일자
- 세금 계산서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

2) 서명권자에 의한 서명 (국세청규정 PER-13/PJ/2010 및 PER-65/PJ/2010)

- 적법한 세금 계산서가 되기 위하여는 서명권자에 의한 서명이 반드시 필요함.
 - 서명권자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 되어야 하며 1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함.
 - 서명권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자가 세금 계산서에 서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일정 서식을 사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일시적으로 서명권자가 공석인 경우 서명권을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도 실질적인 위임이 있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일정 서식을 통해 통지하여야 서명이 유효함.
- 총괄 납부 승인을 득한 사업자가 각 사업장 별로 별도의 인쇄된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책임자를 서명권자로 할 수 있음

3) 실질적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9항은 세금 계산서가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것을 규정하고 있음 세금 계산서의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내용은 실제 거래와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
 - 이러한 취지에서 보통 세무조사 시, 세금 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계약서나 견적서의 내용이 세금 계산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동일한지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계약서 등의 관련 문서의 내용과 세금 계산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 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세금 계산서의 재발행과 취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8항은 세금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과 세금 계산서의 수정 및 교환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며, 국세청규정 PER-13/PJ/2010 및 PER-65/PJ/2010는 이를 규정하고 있음.
- 다음은 세금 계산서의 재발행과 취소에 대한 상기 규정의 주요 내용임.

1) 세금 계산서의 재발행

- 세금 계산서의 내용이 손상·훼손 되거나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금 계산서를 재발행 할 수 있음.
 - 그러나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재발행 되어야 함.
 - 재발행된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음
- 세금 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행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 계산서 사본에 인증 날인을 받아 사용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세금 계산서를 분실한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세금 계산서 사본을 요청
-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자신의 관할 세무서와 분실한 당사자의 관할 세무서 두 곳 모두에 해당 세금 계산서 사본을 제출
- 분실한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금 계산서에 인증 날인 해줄 것을 요청

2) 세금 계산서의 취소

- 해당 거래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에 의해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취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음 취소의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된 세금 계산서를 통해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여야 함.

□ 간주 세금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6항은 과세 당국이 특정한 문서를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세금 계산서로 간주할 수 있는 문서는 다음과 같음.

- 세관의 수출 승인을 득하고 송장이 반드시 첨부된 수출 신고서 (Pemberitahuan Ekspor Barang, 'PEB')
- 밀가루 공급에 대하여 Bulog(Badan Urusan Logistik의 약자로, 한국의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유사)/Dolog에 의하여 발행된 공급 지시서(Surat Perintah Penyerahan Barang)
- PT. PERTAMINA에 의하여 발행된 공급 영수증(Paktur Nota Bon Penyerahan, 'PNBP')
- 전화 요금 영수증
- 국내 항공 용역에 대하여 발급된 티켓과 항공료 영수증
- 항만 용역에 대하여 발급된 용역 제공 영수증 등

6

신고와 납부 및 환급

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 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납부세액을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함소비형 부가가치세 제도 하에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기본 구조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산출된 납부세액은 과세 기간 종료 후 익월 말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고서 제출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제15A조 제1항).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과세 기간 종료 후 익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제15A조 제2항).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구성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Form 1111/Formulir 1111” 로, 다음과 같음.
부가세 신고서 양식 첨부 및 설명

<신고서 해설>

구	분	해	설
			재화와 용역의 공급 내역*
I.	A.		부가세(PPN) 과세 대상
		1.	수출, 영(0)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매출 부가세는 산출되지 않음
		2.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 대상 공급
		3.	부가세 징수자(Pemungut PPN/VAT collector)에 대한 공급
		4.	
	5.		
	B.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
C.		A.와 B.의 합계	



구분	해설
	부가세 납부/환급 금액의 산출
A.	매출세액(I.A.2.와 동일한 금액)
B.	동일 과세 기간에 선납된 부가세
C.	매입세액
D.	A.에서 B.와 C.를 차감한 금액
E.	기존 신고서의 납부/환급금액(수정신고 시)
F.	D.에서 E.를 차감한 금액
II.	G. F가 납부 포지션(+인 경우, 납부 일자와 납부서 일련번호 기재**
	F가 환급 포지션(-인 경우
	1.
	2. 일반과세자(PKP) 여부 체크
H.	3. 차기 이월 공제(Dikompensasikan ke Masa Pajak berikutnya) 또는 환급(Dikembalikan) 중 선택
	환급선택시, 모범납세자(Pasal 17C KUP)/특정납세자(Pasal 17D KUP)/저위험납세자(Pasal 9 ayat 4C PPN) 에 해당되는 경우 선택
	환급 선택 시, 일반 환급 절차(Prosedure biasa) 또는 조기 환급 절차(Pengembalian Pendahuluan) 중 선택
III.	부가가치세법 제16C조에 따른 자가 건설의 경우 기재
IV.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6b항에 따른 생산 실패의 경우 기재
V.	사치품 소비세 기재
VI.	해당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체크

* DPP : 공급가액

** NTPP : 납부서(Surat Setoran Pajak, 'SSP') 상에 부여되는 일련번호

나. 부가가치세의 환급

□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매입세액 초과분')은 이후 과세 기간에서 차감 가능한 이월 공제 세액을 구성함이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과세 기간(월) 말에 매입세액 초과분이 있는 경우,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 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이월 공제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가 초과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거나 소득세법 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이면 계속하여 이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과세연도 말에 계속하여 매입세액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a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물론 계속 다음 과세연도와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함.

□ 환급절차 (재무부령 No.72/PMK.03/2010)

- 환급 신청 절차와 계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3항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과 해당 재무부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임.

1) 환급 신청 시기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입세액 초과분에 대한 일반적인 환급신청의 시기는 매 과세연도 말임.
 -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 과세 기간(월) 말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b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유체 물건을 수출하는 일반 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16A조에 따른 부가세 징수자(VAT collector)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B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면제되는 경우 (제7절 참조)
- 과세 대상 무체 재화를 수출하는 일반 과세자
- 용역을 수출하는 일반 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a항에서 설명한 상업 생산 시작 전의 일반 과세자

2) 환급 신청 방법

○ 환급 신청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Dikembalikan(Restitusi)'란(환급 신청)에 체크하고 환급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
- 위의 환급 신청란을 공란으로 하고, 별도의 환급 신청서를 제출

3) 환급 절차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환급 신청 이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임. 그러나 특정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조기 환급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다음은 일반 환급 절차와 조기 환급 절차에 대하여 비교한 표임.

<일반 환급 절차와 조기 환급 절차의 비교>

구 분	일반 환급 절차	조기 환급 절차
신청 대상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닌 모든 일반 과세자	국세기본법 제17C조의 모범 납세자(WP Patuh) 국세기본법 제17D조의 특정 납세자(WP Tertentu)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c항의 저위험 납세자
조사 방법	세무조사(Pemeriksaan) 실시	서면 분석(Penelitian) 실시
조사 결과 통지	세무조사 실시 후, 세액 확정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발급*	서면 분석 실시 후, 조기 환급 결정서(Surat Keputusan Pendahuluan kelebihan Pajak) 발급
환급금 지급	환급 신청 후 12개월 이내*	환급 신청 후 1개월 이내

* 환급을 위해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환급 세무조사가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 범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한이 적용되지 아니함.



-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세무관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가량이 소요되어,
 - 세무조사를 수반하는 일반 환급 절차보다 유리함. 따라서 부가세 환급이 빈번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청 대상으로 지정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하여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당국은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저위험 납세자

- 위에서 설명한 조기 환급 제도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국세기본법 제17C조와 17D조에서 정하는 모범 납세자(WP Patuh)와 특정 납세자(WP Tertuntu)는 본서의 국세기본법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c항은 저위험 납세자(Pengusaha Kena Pajak Berisiko Rendah)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위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령 No.71/PMK.03/2010에서 규정하고 있음

1) 저위험 납세자 신청 요건

- 저위험 납세자는 일반 과세자로 다음의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함.
 - 유체 물건을 수출하는 일반 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16A조에 따른 부가세 징수자(VAT collector)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B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면제되는 경우 (제7절 참조)

- 과세 대상 무체 재화를 수출하는 일반 과세자
 - 용역을 수출하는 일반 과세자
- 상기 일반 과세자 중 다음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저위험 납세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을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에 상장한 회사
 -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 그외의 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24개월 이내에 조세 범칙 사실에 대한 실지 조사나 수사를 받은적이 없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위의 세 번째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최근 12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지연 제출 사실이 없을 것
 - 직전 년도에 판매한 과세 대상 재화 총액의 75% 이상을 자기 제조장에서 제조 하였을 것
 - 직전 2개년 공인 회계사에 의한 감사 보고서(Laporan Keuangan)의 의견이 적정(Wajar Tanpa Pengecualian) 또는 한정(Wajar Dengan Pengecualian)일 것

2) 저위험 납세자 신청

- 상기 요건을 충족한 일반 과세자는 저위험 납세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은 국세청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의 제출은 관할 세무서에 함.
- 신청서는 국세청규정 No. PER-31/PJ/2010에서 규정한 ‘Lampiran 1’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저위험도 납세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과세 기간이 시작하기 15영업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이때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을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에 상장한 회사 또는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 직전 2년간 감사 보고서
- 국세청규정 No. PER-31/PJ/2010에서 규정한 기타 첨부서류로, 직전 년도에 판매한 과세 대상 재화 총액의 75% 이상을 자기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서

3) 저위험 납세자 지정 또는 반려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국세청은 15영업일 이내에 다음의 통지를 하여야 함.

- 저위험 납세자 확정 통지; 또는
- 신청이 반려된 사유가 기재된 통지서

□ 조기 환급 제도의 고려사항

1) 저위험 납세자와 모범 납세자의 비교

- 모범 납세자는 일선 세무관서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 후보자로 선정하여 지방 국세청에 통보하면, 지방 국세청에서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고 국세청장 명의의 선정 통지서를 발송함.
 - 따라서 선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청이 없고 지위의 획득·유지가 용의치 않음.
 - 그러나 저위험 납세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될 수 있고,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저위험 납세자의 과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승인을 해주므로 모범 납세자에 비하여 지위의 획득·유지가 수월한 편임.
- 다음은 이해를 위해 저위험 과세자와 모범 납세자를 비교한 표임.

<저위험도 납세자와 모범 납세자의 비교>

구 분	저위험도 납세자	모범 납세자
관련 근거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c항 및 재무부령 No.71/PMK.03/2010	국세기본법 제17C조 및 재무부령 No.192/PMK.03/2007
적용 세목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선정 방법	납세자의 신청에 따름	해당 세무관서의 요청에 따라 지방 국세청에서 선정
선정 시기	납세자가 신청한 때	매년 1월 20일까지연 1회
환급 기간	부가가치세 1개월 내	부가가치세 1개월 내 소득세 3개월 내
세무조사 적발 시 가산세	과다 환급 금액의 월 2%, 최대 24개월	과다 환급 금액의 100%

2) 조기 환급에 대한 세무조사

- 전술한 바와 같이 조기 환급에 대하여도 재무부령 No.71/PMK.03/2010 제9조에 따라 국세청은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만일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한 조기 환급이 이루어졌음이 발견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모범 납세자와 특정 납세자의 경우에는 과다 환급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저위험도 납세자의 경우에는 미납 기간에 대해 과다 환급 금액의 월2%에 해당하는 가산세(최대 24개월까지 부과되므로, 최고 48%)가 부과됨.

7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면제와 과세 적용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6B조는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부가 거래징수 되는 것을 면제하거나(‘거래징수 면제’), 또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과세 적용에서 제외(‘과세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래징수 면제와 과세 적용 제외 모두 당해 거래 자체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거래징수 면제는 매출에 대하여만 거래징수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함.
 - 과세 적용 제외는 해당 재화와 용역을 과세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둘 모두 국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 혜택이나, 실무적으로는 거래징수 면제는 영세율 제도와 과세 적용 제외는 면세 제도와 유사함.
- 다음은 법 제16B조 제1항이 규정하는 거래징수 면제나 과세 적용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래에 대한 각 호의 내용임.

- 과세 지역의 특정지역(Kawasan Tertentu) 또는 특정 장소(Tempat Tertentu)에서의 활동
-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
- 특정 재화의 수입
- 과세 지역 외로부터 특정 무체 재화를 반입하여 이용
- 정부 규정에 의한 과세 지역 외부로부터 특정 용역을 반입하여 이용

- 이러한 징수 면제와 과세 적용 제외의 혜택은 아래와 같은 특정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주어짐.

- 보세 구역의 수출을 지원하거나 과세 지역내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경우
- 외국과의 교역, 투자, 국제 전시 등의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 보건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경우
- 군·경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경우
- 군의 보안 정보나 항공 촬영 장비 보급을 위한 경우
- 교육을 위한 일반 교과서, 코란, 일반 종교 서적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종교 시설의 건축을 위한 경우
- 자가 주택 또는 단순 증축 주택의 보급을 위한 경우
- 군의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
- 전략적 재화의 공급을 지원하는 경우
- 외국 원조 등으로 시행되는 국가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 재화의 수입에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는 경우
- 국가 재해로 선정된 재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 별도의 운송 수단이 없는 특정 지역에 대한 승객·화물 운송 항공 용역의 경우

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면제

-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음.

□ 국제선 항공을 위한 항공유의 공급

- 정부령 No.26/2005 및 재무부령 No.76/PMK.03/2005에 따라 국제선 항공을 위한 항공유의 공급에 대하여는 거래징수가 면제됨. 국제선 항공이란 외국에서 출발하여 인도네시아 소재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도네시아 소재 공항에서 출발하여 외국 소재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을 의미함.
 - 다만, 상호주의에 따라 계약 상대방 국가에서도 해당 공급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징수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외국의 차관 또는 원조를 통해 시행되는 정부 사업

- 정부령 No.25/2001 및 재무부결정 No.486/KMK.04/2000에 따라 외국의 차관 또는 원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정부 사업에 대하여는 거래징수가 면제됨.
 - 제 대상이 되는 사업은 Project Table of Contents(Daftar Isian Proyek, ‘DIP’) 또는 유사한 문서를 통해 발표됨.
 - 면제 혜택은 해당 사업의 주계약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2차 계약자(second-level)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거래징수가 면제되기 위하여, 주계약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시 ‘PPN/PPnBM Tidak Dipungut PP Nomor 42 Tahun 1995’ 를 날인하여야 함.
 - 해당 국가 사업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차관 또는 원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중 차관 또는 원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면제됨.
- 상기 규정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면제 이외에도, 사치품 소비세 거래징수 면제·수입 관세 면제·수입 선납 법인세(PPh 22) 면제의 혜택을 함께 부여하고 있음

□ 특정 물품의 수입

- 재무부령 No.616/PMK.03/2004에 따라 특정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 되지 않음.
 - 해당 규정은 수입 관세 면제에 대한 정부령 No.3/2000 및 No.24/2001의 세부 규정으로, 거래징수 면제 대상 수입 품목은 아래와 같음.

-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외국 공직자와 외국 대표부의 물품(상호주의에 따름)
-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승인 및 등록된 국제 기구와 해당 기구의 직원 (인도네시아 여권 소지자 제외)의 물품
- 종교·사회·문화적 요구에 따라 탁송된 선물류

- 박물관·동물원 등 대중에게 공개되는 장소에 필요한 물품
-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품
- 유골 또는 유골분을 위한 관과 유사 용기
- 1년 이상 외국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근로자·유학생·공무원·군인·경찰의 이사 물품(재판매 물품이 아닌것으로 현지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 필요)
- 승객의 개인 물품·승무원 물품 및 세관 규정에 의한 중량제한까지의 탁송 물품
-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하여 공공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군용 물품
- 재무부령 No.140/PMK.04/2007이 임시로 정하는 수입 물품

□ 석유·가스 분야의 Profit Sharing Contractor(‘PSC’)가 수입하는 물품

- 재무부령 No.20/PMK.10/2005에 따라 PSC가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면제됨.

□ 보세 지역

- 보세 지역은 정부령 No.39/2009에 따라온 영되며, 보세 구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면제됨. 해당 정부령에 따른 보세 지역의 구분은 아래와 같음.

1) 보세 구역 (Kawasan Berikat/KB)

- 특정 건물·장소·지역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생산 등 상업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

2) 보세 창고 (Gudang Berikat/GB)

- 특정 조건을 갖춘 건물 또는 나대지로, 보관·포장·상표의 부착 또는 제거 등 물류센터의 기능을 하는 곳



3) 기타 다음의 장소

- 보세 박람회장(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면세점(Toko Bebas Bea), 보세 경매장(Tempat Lelang Berikat), 주기적 보세 구역(Tempat Daur Ulang Berikat)
- 보세 구역과 보세 창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면제 이외에도 다른 조세 편익들이 주어지며, 해당 편익을 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수출 목적 생산품 집하지 (Entrepot Produksi Tujuan Ekspor, 'EPTE')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품 집하지로 이동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과 동일하게 보아, 재무부령 No.43/KMK.01/1996과 국세청훈령No. SE-39/PJ. 52/1993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가 면제됨.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내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가 수출 목적으로 생산품 집하지로 입고되는 경우
 - EPTE에서 다른 EPTE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또는 추가 가공을 위해 보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 EPTE내의 공장에서 DPIL 또는 다른 EPTE내의 공장으로 출하되는 경우, 또는 하청 계약에 따른 가공을 목적으로 보세 구역으로 출하되는 경우
 - 하청 계약에 따른 가공이 완료된 재화가 다시 EPTE의 일반 과세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 Bapeksta Keuangan 이용 기업이 제품의 추가 가공을 위해 EPTE내 회사로 공급하는 경우

다.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제외

○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은 다음과 같음.

□ 특정 재화의 수입 또는 공급

- 1) 무기·탄약·수상 운송 기구·수중 운송 기구·공중 운송 기구·육상 운송 기구·장갑차·순찰차·특수 운송 기구와 국방부·군 사령부·경찰청 또는 국방부가 지정한 자가 수입하는 예비 부품류
 - 2) 국가 질병 예방 프로그램(PIN) 시행을 위한 백신류
 - 3) 재무부령 No.353/PMK.03/2001에 따른 일반 학습용 교재·종교 서적·종교 경전(Kitab Suci)
 - 4) 해상 선박·내륙 운송 선박·어선 등과 그 예비 부품, 상업 운송 회사·수산 활동 연합(Perusahaan Pengkapan Ikan Nasional) 회사·부두 용역 회사(Perusahaan Penyelenggara Jasa Kepelabuhan Nasional)·내륙 운송 회사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 용품과 구멍 용품
 - 5) 항공기·예비 부품·항공 안전 장비·구멍 장비 및 항공 운송 회사가 사용하는 개선·유지 장비와 예비 부품류
 - 6) 기차·예비 부품·유지 보수 장비 및 국영 철도 회사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된 장비
 - 7) 국가 방위력 향상을 위해 국방부와 군 사령부가 사용하는 예비 부품류와 유지 장비
 - 8)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 단순 주택(Rumah Sederhana), 단순 아파트(Rumah Susun Sederhana), 대학 기숙사 및 주택 지역의 주택
- 위의 8항목 중 3)번 항목을 제외한 7가지 항목은 과세 적용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세관에서 발행한 면제 사유서(Surat Keterangan Bebas, 'SKB')가 필요함.



□ 특정 용역의 공급

- 1) 국영 해상 운송 기업·수산 활동 연합 회사·부두 용역 회사 및 내륙 운송 회사가 제공하는 운송 용역, 선박 임차 용역, 도선·체선·용선 등의 항만 용역·선박의 정비와 수리 용역
- 2) 항공 운송 회사가 제공하는 항공기 임차 용역과 항공기의 정비·수리 용역
- 3) 국영 철도 회사(PT. Kereta Api Indonesia)에 의한 철도의 정비·수리 용역
- 4) 단순 주택(Rumah Sederhana), 단순 아파트(Rumah Susun Sederhana), 대학 기숙사 및 주택 지역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건설 용역
- 5)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국방부와 군 사령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항공 사진 용역

□ 공항 용역

□ 전략적 재화(BKP Strategis) - 정부령 GR No. 31

- 1) 기계 장치 및 공장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자본재 : 투자청(BKPM)에서 발급한 면제 사유서(SKB) 필요
- 2) 가축·가금류를 위한 사료, 어류의 양식 사료와 사료 제조를 위한 원재료
- 3) 농업·농장·조립·축산 제품에 필요한 종자 및 씨앗류 농산품
- 4) 농업·농장·조립 제품·축산 제품·수산업 제품
- 5) 상수 공급 회사에 의해 파이프를 공급되는 물
- 6) 전기(단, 6,600 와트를 초과하는 가정 전력 제외)

- 위에서 설명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면제 및 과세 적용 제외 제도 이외에도 별도의 특별 규정에 따라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음

8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가. 연대 납세 의무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므로,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임.
 - 그러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은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의무에 대해 공급받는 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부가가치세법 제16F조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세금이 납부함을 제시할 수 없는 한, 납부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음”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급하는 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됨.
- 이러한 공급받는 자의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해 정부령 No.1/2012(GR-1)는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고 하여, 책임을 다소 완화하고 있음
 -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거나, 또는
 -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지불 함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그러나 완화된 정부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인정하는 데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나. 부가가치세 가산세 : 세금 계산서 관련

- 가산세에 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본장에서는 가산세 중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 세금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특히 공급받는 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의 납부·환급 포지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이 특이함.
-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정당하지 않은(invalid)경우, 공급하는 자는 과세 표준(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함.
- 공급받는 자가 이러한 정당하지 않은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음.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부담>

구 분	환급 포지션인 경우* (Overpayment)	납부 포지션인 경우* (Underpayment)
매입세액 불공제	○	○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불공제 금액의 100%	해당사항 없음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해당사항 없음	미납세액의 월 2%

* 환급 포지션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공제액이 큰 경우이며, 납부 포지션은 그와 반대인 경우임

- 환급 포지션인 경우,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세 당국은 관련 매입세액이 이월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환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고 부당 환급에 적용되는 100%의 가산세를 부과함. 다만 환급 포지션일 때에는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 납부 포지션인 경우에는 부당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100% 가산세는 없으나, 불공제 금액만큼 미납세액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월 2%, 최대 24개월)가 적용됨.

다.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와 사치품 판매 세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16E조는 외국인(외국 여권을 소지한 개인)이 구매하여 과세 지역 외부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사치품 소비세에 대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음

- 법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 최소 Rp. 500,000 이상
- 출국 전 1개월 이내에 구매한 물품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금 계산서 일 것

- 환급 신청은 출국 시 공항에 설치된 국세청 사무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여권·탑승권·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IX

기타세법



가. 사치품소비세

- 사치품 판매세(Pajak Penjualan Barang Mewah, 'PPn BM')의 구조는 부가가치세와 대부분 유사함. 따라서 납세 의무자·거래징수 제도·세금 계산서 제도·신고 납부 기간 등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사치품 판매세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임.

본 절에서는 이러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이외에 사치품 판매세에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함.

□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은 사치품 판매세 과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사업자가 인도네시아 과세 지역 내에서 생산된 사치품으로 분류된 재화를 인도네시아 과세 지역 내에서 공급
 - 사치품으로 분류된 재화의 수입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조건은
 - 1) 주요 생필품이 아닌 재화로,
 - 2) 사회 특정 계층에 의하여 소비되고,
 - 3) 대체적으로 고소득 계층에 의하여 소비되거나 재산 상태를 과시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임.

□ 부과 시기

- 사치품 판매세는 해당 재화가 생산자에 의하여 공급될 때 또는 수입될 때 1회에 한하여 부과됨(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거래 단계 별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다단계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음.



□ 세율

-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치품 판매 세율을 최저 10% 에서 최고 20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영세율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음 부가가치세율은 단일 세율로 정의되나, 사치품 판매세는 물품군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점이 다르다. 차등 세율에 대한 결정과 해당 물품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령과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해당 규정만 소개하도록 함.

- 정부령(Pemerintah Peraturan/Government Regulation) No. 12/2006
- 재무부령 No.355/KMK.03/2003

- 부가가치세에 더해, 특정 과세물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사치품 소비세 (LST)가 부과될 수 있음. 사치품소비세는 재화의 수입 또는 제조업자에 의한 공급에 대해 부과됨.
- 사치품소비세는 매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되어야하며, 해당 재화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함.
- 사치품 소비세 관련 내용 요약표는 아래와 같으며, 요약표상의 특정물품은 용량, 크기 또는 가격등의 요소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특정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및 관련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HS (Harmonized System) Code를 사용하여 Customs Book을 참고해야함.
- 현행부가세 및 사치품소비세법에 따르면, 소비세율은 200%까지 높일 수 있음. 그러나, 현행소비세율은 10%~75%임.

<품목별 소비세율>

분 류 그 림	특별소비세율(%)					
	10	20	30	40	50	75
가정용품, 냉장고, 히터기, TV수신기	○	○				
스포츠기구, 용품	○		○		○	
에어컨, 식기세척기, 건조기, 전자석기기	○	○				
비디오 녹화기 또는 재생기	○					
사진 또는 촬영용품	○					
고급맨션,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				
향 수		○				
선박 또는 기타 해상 운송수단(정부, 공공용 제외)			○	○		
악 기		○				
일정한 알코올 음료				○		○
수입피혁/합성피혁 제품				○		
털, 양모피의 카펫				○		
크리스탈 유리제품(테이블, 부엌용품, 가정/오피스용 장식품 등 목적)				○		
귀금속, 보석, 진주(또는 이의 결합)제품				○		○
별론 등 무동력 기구				○		
탄환과 기타 무기류(정부용은 제외)				○	○	
가 죽 류				○		
가정, 오피스용의 가구, 비품				○		
도기제품				○		
석 제 품				○		
모피, 동물 털 수제의 카펫					○	
항공기(정부, 공공용은 제외)					○	
고급요트(정부, 공공용은 제외)						○



나. 관세와 소비세

□ 수입관세

1) 수입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의 관세가격에 0%~150%를 적용함.

- 다만, 현행 최고세율은 40%임.
- 관세가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level)를 기준으로 계산함.
-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으로, 인도네시아정부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보안이나 사회문화적 이유로 특정산업과 재화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2) ASEAN duty rates

- 부품을 함유한 재화로서 ASEAN 국가간 직접무역에 의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일정한 관세경감이 이루어짐. 인도네시아정부는 ASEAN 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을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음.
- ASEAN 국가간 무역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에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3) Free Trade Area(FTA) Agreement duty rates

-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음

- a. ASEAN - China FTA(ACFTA)
- b. ASEAN - Korea FTA(AKFTA)
- c. ASEAN - India FTA(AIFTA)
- d.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FTA(AANZFTA)
- e. Indonesia -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IJEPA)

4) Duty relief/exemption/deferral 관세경감/면제/유예

- 인도네시아정부는 내수 및 수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과 국내투자자에게 관세경감·면제 및 유예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혜택은 대개 부가세와 소득세와 같은 다른 조세혜택과 함께 부여됨.

□ 수출관세

- 수출관세는 관세가격(ad valorem)에 특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 특정 통화로 관세율/물량을 특정하여 산출함. 관세가격은 가격 벤치마크와 일관되게 관세청장(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이 결정함

다. 증지세

- 증지세는 특정재화의 공급과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로 인해 통제되어야 하는 경우 부과됨. 현재, 증지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에틸알코올, 알코올음료와 담배제품임. 증지세율은 에틸알코올과 알코올음료의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리터당Rp 13,000 에서Rp 139,000), 담배제품에 대하여는 담배제조회사의 구분에 따라 적용됨(개피당 Rp 5에서Rp 100,000).
- 특히 담배제품에 대하여, 관계 제조사 그룹에 적용되는 증지세율은 총생산규모에 따라 결정됨. 관계 제조사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 목적의 일반적인 특수관계자 정의와 다르며, 재무부(MoF)규정에 따라 정해짐.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28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제조사관 윤 영 준

국제조사관 문 상 묵

국제조사관 김 현 응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4-282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